

연구보고서 25-09

FTA 신통상 정책 동향과 원산지 이슈 분석



한국원산지정보원

Korea Institute of Origin Information

연구진

<연구주관> 한국원산지정보원

<연구책임자>

책임연구원 권민경

<참여연구자>

연구원 김민준

연구원 박현혁

연구원 김혜량



1 연구 배경 및 목적

-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활발히 FTA를 활용하는 국가 중 하나로,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변화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선제적 FTA 체결을 통해 지속적인 관세 철폐와 무역 자유화를 확대 및 강화 중
-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미국 우선 무역정책(America First Trade Policy)’ 슬로건 아래 출범 이후 전 세계를 대상으로 기존 관세 체계에 추가로 더해지는 관세를 부과(Tariff Stacking)하며, 보호주의 무역 기조를 강화
 -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자동차·자동차 부품,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 반제품 구리 및 파생상품, 목재 및 파생상품 등에 대한 품목 관세,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상호관세 등의 관세 조치가 시행됨

美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조치(요약)

구분	국가별 관세(상호관세)		품목별 관세
	보편적 기본관세	국가별 추가 관세	
정의	모든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	무역 불균형 조정 관세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관세
대상	전 세계	對미 무역 흑자국 (한국 포함)	특정 품목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구리, 목재 등)
근거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무역확장법 제232조(국가안보)

- (美 관세 조치) 미국은 대통령 포고령(Proclamations)과 행정명령(Executive Orders) 등을 통해 수입 물품에 대한 품목별, 국가별 관세를 추가로 부과
- (비특혜 원산지) 미국은 자체적인 ‘비특혜 원산지 기준’ (Non-preferential Rule of Origin)에 따라 수입 물품의 ‘실질적 변형’ (Substantial Transformation) 여부를 중심으로 원산지를 판정하고 있어, FTA 활용을 위한 특혜 원산지 기준에 익숙한 우리 기업에 수출 애로가 발생함



특혜 원산지와 비특혜 원산지

구분	목적	원산지 판정 기준	비고
특혜 원산지 (FTA)	FTA 활용을 통한 관세 감면 또는 면제	FTA 원산지 기준	FTA 원산지증명
비특혜 원산지 (트럼프 2기)	상품 차별화를 통한 생산·소비자 보호	실질적 변형 기준	원산지표시
	무역구제조치(덤핑관세, 상계관세 등) 정책 목적(301조 적용, 정부조달 물품 등)	(Substantial Transformation)	일반 원산지증명

· 특히, 미국 관세 조치는 수출국이 아닌 물품의 ‘원산지’ (Country of Origin)를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고 있기에, 수출 물품의 원산지 판정이 매우 중요함

- 또한 USMCA 재협상과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적용이 예정됨에 따라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수출 리스크 감소를 위해 新통상 정책에 대한 정보 제공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음
- 따라서, 본 과제는 주요 수출 상대국의 통상정책 동향과 원산지 관련 이슈를 포괄적으로 분석한 정보를 제공하여 기업의 수출전략 수립을 지원하고자 함
 - 다만, 올해는 미국 관세정책 급변에 따른 불확실성 고조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 지원의 필요성이 높아, ‘미국’ 중심의 연구를 우선 진행함
 - (① 신통상 정책 동향 정보제공)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여 품목별, 국가별 관세의 부과 현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무역원산지리포트 및 FTA 브리프 등의 형태로 주요 이슈에 대한 분석정보를 제공
 - (발간물) 기업의 원산지 판정 실무에 직접적인 활용이 가능한 CBP 원산지 사전심사 제도 활용 가이드를 발간 및 배포
 - (설명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상공회의소, 관세청&세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설명회 개최를 통해 기업 대상 교육 및 컨설팅 수행
 - (② 원산지 이슈 분석) USMCA 개정 동향 및 원산지 분쟁 관련 연구를 통해 관세 불확실성 대응에 필요한 중장기 통상전략 기초 연구 수행



2 연구 내용

① 신통상 정책 동향 모니터링 및 정보제공

- [新 통상 정보제공] 미국 관세부와 동향 모니터링
 - (온·오프라인) ①종합현황 및 타임라인, ②무역원산지리포트, ③FTA 브리프 등의 다양한 형태로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조치를 정리 및 요약하여 기업에 제공
- [비특혜 원산지] 美 CBP 원산지 사전심사 제도 활용 가이드 발간
 - (온·오프라인) e-Ruling 가이드 발간을 통해 기업의 비특혜 원산지 판정 실무를 지원하고, 동영상을 통한 상세한 신청 절차로 CBP 판정 접근성 향상을 도모
- [관세 대응 지원]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원산지 특화 대응 지원
 - 비특혜 원산지 기준 및 판정사례를 중심으로 ①설명회 및 간담회 참석을 통한 기업 대상 교육 및 컨설팅 수행과 ②협의회를 통한 원산지 관련 정책 자문

② 원산지 이슈 분석

- [통상정책 수립 지원] 중장기 통상 로드맵 설계를 위한 주요국 동향 분석
 - (USMCA) 트럼프 행정부 1기와 2기의 개정 동향 비교 및 원산지 분쟁사례 등

① 신통상 정책 동향 모니터링 및 정보제공

- [新 통상 정보제공] 미국 관세부와 동향 모니터링
 - (종합현황 및 타임라인) 美 관세 조치를 시간순으로 정리 및 요약하여, 기업 대상 가독성 향상과 제공정보의 정확성을 제고
 - (무역원산지리포트) ‘환경규제’와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新 통상 원산지 이슈를 중심으로 한 전문정보 제공
 - (FTA 브리프) 美 관세 정책추진 근거와 부과 현황, 관세 대응 체크리스트 등 기업의 수출전략 수립 지원을 위한 심층 분석정보 제공

[新통상 정보제공] 관세부과 동향 모니터링 정보제공 형태

종합현황 및 타임라인	무역원산지리포트	FTA 브리프
		

- [비특혜 원산지] 美 CBP 원산지 사전심사 제도 활용 가이드 발간
 - (e-Ruling) 수출 물품에 대한 기업의 원산지 판정지원을 위해 원산지 사전심사 제도 활용 가이드를 제공
 - CBP 원산지 사전심사 신청 단계별 상세 가이드 제공을 통해 기업 원산지 판정 실무에 직접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정보를 제공
- [관세 대응 지원]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원산지 특화 대응 지원
 - (설명회 및 간담회) 기획재정부, 관세청&세관, 무역협회, KOTRA,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비특혜 원산지를 중심의 기업 대상 교육 및 컨설팅 수행
 - (협의회 구축) 美 통상정책 관련 ‘관세 대응 119 플러스’ 와 같은 유관기관 협의회를 구축하여 수출기업의 관세 대응에 필요한 원산지 관련 정책 자문

2 원산지 이슈 분석

- [정책 지원] 중장기 통상전략 수립 지원을 위한 주요국 원산지 이슈 분석
 - (USMCA 개정 동향)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미국 우선 무역정책(AFTP) 등 미국發 보호무역주의가 USMCA 개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중장기 통상 로드맵 설계에 필요한 정책 기초 인프라를 구축
 - USMCA 개정에 대한 미국을 비롯한 북미 3국의 동향을 선제적으로 수집하여 우리나라 중장기 통상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연구 결과 도출
 - (USMCA 원산지 분쟁) 주요 산업인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부품 단계에서 완성차까지의 단계까지의 부가가치(RVC) 계산에 대한 원산지 분쟁 사례 연구
 - (미국측) 부품 RVC와 완성차 RVC를 분리 및 이원화하여 롤업(Roll-up)을 불인정
 - (멕시코&캐나다측) 완성차 제조공정의 단일 및 연속성 전제 롤업(Roll-up)을 주장



3 연구 결과

- ① **신통상 정책 동향 모니터링 및 정보제공**
 - [新 통상 정보제공] 미국 관세부와 동향 모니터링
 - (종합현황 및 타임라인) 美 관세 동향 중심 정보제공 현행화(상시 제공, 총 10회)
 - (무역원산지리포트) 환경규제와 보호무역주의 중심의 전문정보 제공(6회)
 - (FTA 브리프) 시의성 있는 통상 이슈 중심의 심층 정보제공(3회)
 - [비특혜 원산지] 美 CBP 원산지 사전심사 제도 활용 가이드 발간
 - (e-Ruling 가이드북) 기업 원산지 판정지원을 위한 가이드 제공(동영상 포함)
 - [관세 대응 지원]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원산지 특화 대응 지원
 - (설명회 및 간담회) 기업 대상 교육 및 컨설팅 수행(총 22회)
 - (유관기관 협의체) ‘관세 대응 119 플러스’ 통한 원산지 특화 자문 지원
- ② **원산지 이슈 분석**
 - [중장기 통상정책 인프라] USMCA 개정 동향 및 원산지 분쟁사례 연구 수행
 - 美 관세 조치 대응을 넘어 우리나라 FTA 활용과 연계된 중장기 통상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 수행

① 신통상 정책 동향 모니터링 및 정보제공

1-1. [新 통상 정보 제공] 관세부와 동향 모니터링

① 종합현황 및 타임라인

- 美 관세 조치를 중심으로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에 따른 품목별, 국가별 관세부과 현황을 상시 제공
 - 무역확장법 제232조 기반 품목 관세부과 및 IEEPA 기반 상호관세 부과 등 정책 동향을 중심으로 종합적 현황을 시간순으로 정리 및 요약하여 상시 제공



- (총 10회) 2025년 1월 20일 美 트럼프 대통령 취임부터 한-미 무역 협상 팩트시트 발표까지의 관세정책 모니터링을 통한 정보제공

[新 통상 정보제공] 관세부와 동향 모니터링 업데이트 내역

구분	게시일	업데이트 내용
1차	2025.07.17.	트럼프 2기 관세부와 종합현황 및 타임라인 제공 개시
2차	2025.08.01.	가독성 확보를 위한 디자인 변경 및 기업 편의를 위한 설명 추가
3차	2025.09.04.	반가공 구리 및 파생상품 232조 품목 관세 대상 적용
4차	2025.09.05.	미-일 무역 합의에 따른 관련 내용 반영
5차	2025.09.10.	미-일 무역 합의 이행을 위한 행정명령 내용 반영
6차	2025.09.12.	301조 중국산 물품에 대한 관세율 부분 설명 추가
7차	2025.09.16.	일본 자동차에 대한 관세율 조정 반영
8차	2025.09.18.	가독성 확보를 위한 디자인 변경 및 USMCA 일부 내용 수정
9차	2025.10.13.	목재 및 파생상품 232조 품목 관세 대상 적용
10차	2025.11.26.	한-미 무역 합의, 미-중 무역 합의 등 내용 반영

· 기업 편의를 위한 가독성 확보 및 관세 조치 변동사항에 대한 현행화 유지에 노력

□ 품목별, 국가별 관세 조치에 따라 급변하는 통상환경을 종합적으로 작성하여, 기업의 가독성 확보 및 이해도 제고를 실현

종합현황 및 타임라인 구성

구분	설명 및 예시
현황표	<p>품목별, 국가별 추가 관세를 한눈에 알기 쉽게 정리</p>



종합현황 및 타임라인 구성

구분	설명 및 예시																																														
관세부과 구조	<p>가장 복잡한 형태인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의 부과 구조를 예시로 설명</p> <p>시대를 통한 관세부과 구조 이해하기</p> <p><철강 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관세는 '무역확장법, 제232조 품목별 관세에 JEPA 국가별 관세가 더해지면서, 관세 구조가 이종화돼 가장 복잡한 형태로 적용 중 → (구조) 기존 관세 체계에 ① 제232조 품목별 관세와 ② JEPA 상호관세가 더해지는 구조 → (예시) 냉철고는 철강 파생상품 대상에 이어 알루미늄 파생상품 대상으로 확대된 품목(D8.18) ① 제232조 철강 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 = 합당 가치에 대한 관세 50% ② JEPA 국가별 관세 = (한국산) 비합당 가치에 대한 상호관세 15% ∴ 총 관세 = ①+② + 기존 관세(MFN or FTA 등) <p>① 원산지(국가)별 파생상품 관세의 차등 부과</p>																																														
상호관세 현황	<p>69개 경제주체에 대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현황을 제공</p> <p>국가별 상호관세 현황 (개)</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순위</th> <th rowspan="2">국가</th> <th colspan="2">관세율(%)</th> </tr> <tr> <th>중간</th> <th>인원</th> </tr> </thead> <tbody> <tr> <td>1</td> <td>야프가니스탄</td> <td>10</td> <td>15</td> </tr> <tr> <td>2</td> <td>알제리</td> <td>30</td> <td>30</td> </tr> <tr> <td>3</td> <td>말갈라</td> <td>32</td> <td>15</td> </tr> <tr> <td>4</td> <td>방글라데시</td> <td>35</td> <td>20</td> </tr> <tr> <td>5</td> <td>볼리비아</td> <td>10</td> <td>15</td> </tr> <tr> <td>6</td> <td>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td> <td>30</td> <td>30</td> </tr> <tr> <td>7</td> <td>보츠와나</td> <td>37</td> <td>15</td> </tr> <tr> <td>8</td> <td>브라질¹⁾</td> <td>50</td> <td>10</td> </tr> <tr> <td>9</td> <td>브루나이</td> <td>25</td> <td>25</td> </tr> <tr> <td>10</td> <td>캄보디아</td> <td>36</td> <td>19</td> </tr> </tbody> </table>	순위	국가	관세율(%)		중간	인원	1	야프가니스탄	10	15	2	알제리	30	30	3	말갈라	32	15	4	방글라데시	35	20	5	볼리비아	10	15	6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30	30	7	보츠와나	37	15	8	브라질 ¹⁾	50	10	9	브루나이	25	25	10	캄보디아	36	19
순위	국가			관세율(%)																																											
		중간	인원																																												
1	야프가니스탄	10	15																																												
2	알제리	30	30																																												
3	말갈라	32	15																																												
4	방글라데시	35	20																																												
5	볼리비아	10	15																																												
6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30	30																																												
7	보츠와나	37	15																																												
8	브라질 ¹⁾	50	10																																												
9	브루나이	25	25																																												
10	캄보디아	36	19																																												
美 관세 조치 개요 설명	<p>트럼프 2기 행정부 추가 관세 개요</p> <p>1. '트럼프 관세' 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적인 무역적자로 인한 국가 경제 안보의 위협 해소 ②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적자 시정, 중국산 무역 수출 차단, 해외 투자 유치 촉진, 미국 제조 산업 보호를 통한 미국 중심 보호주의 통상질서 확립 ③ 추가 관세 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품목별 관세, '국제비상경제권법(JEPA)에 따른 국가별 관세 																																														



종합현황 및 타임라인 구성

구분	설명 및 예시
<p>최신 조치 주요 내용</p>	<p>최신 美 관세 조치의 내용을 정리 및 요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신 조치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별 상호관세 발표(행정명령 14326호, CBP 지침 CSMS #65829726_108.07) - 총 69개 경제주체 대상 국가별 관세부과(부속서 1 한국, 일본, EU 등 포함) - 부속서 1에 명시되지 않은 국가는 행정명령 14257호에 따른 10% 관세부과 - (MFN) 對EU 관세만 명시(15%, MFN 포함) ✓ 자동차 부품 관세 상해 지침 발표(CBP CSMS #6668412E, 10.31) - (수입자 신청) 상무부의 수입 조절 상해 혜택을 부여받은 수입자만 신청 가능 - (제232조)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관세가 부과된 부분만 상해가능 ✓ 한-미 무역협상 결과 발표(백악관 팩트시트, 11.13) - (자동차부품) EU, 일본과 동일한 수준인 15%로 합의(MFN 포함), 향후 15% 적용 - (의약품) 15% 이하로 적용 - (반도체) 경쟁국인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적용
<p>품목별 관세부과 근거</p>	<p>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구리, 목재 등 품목별 관세부과의 근거 규정 정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 2017년 품목별 추가 관세 부과 규정 및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자동차 부품: 대통령령 제10925에 따른 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CBP 지침 CSMS #64824801_104.02 - (자동차 부품) CBP 지침 CSMS #64916652_105.01 - (USMCA) CBP 지침 CSMS #65649682_107.18
<p>IEEPA 상호관세 추가 여부</p>	<p>품목별 관세와 국가별 관세 중복 여부 종합 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 IEEPA에 따른 상호관세 추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자동차-자동차 부품 관세부과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법(제232조)에 따른 철강 가치에 대한 할당 관세와 상호관세는 모두 제외 - 동 법(제232조)에 따른 알루미늄 가치에 대한 할당 관세와 상호관세는 모두 제외 - 동 법(제232조)에 따른 구리 가치에 대한 할당 관세와 상호관세는 모두 제외 ●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철강-알루미늄 관세부과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강과 알루미늄은 할당 가치에 따른 중복부과 가능하며, 상호관세는 제외 - 단, 파생상품의 경우 비할당 가치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반도체 구리 및 파생상품 관세부과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할당 가치에 따른 품목관세 부과 및 비할당 가치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목재 및 파생상품 관세부과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목, 실내 장식 기구, 주방 캐비닛과 세면대 등 대상 품목은 상호관세 제외 - 그 외 목재 및 파생상품은 상호관세 부과



종합현황 및 타임라인 구성

구분	설명 및 예시
<p>對중국 상호관세 현황</p>	<p>미-중 무역 협상 모니터링 및 결과 요약</p> <p>◎ 對중국 상호관세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명령 제1429호(2015.12)에 따라 국가별 101%+24% 무제한(+10% 미인 관세 20% 부과) - 행정명령 제14334호(2016.11)에 따라 11월 10일까지 관세 제외(총 54% 중, 24% 부여) - 행정명령 제14357호(11.04)에 따라 엔타닐 관세 10%로 인하 - 행정명령 제14358호(11.04)에 따라 관세 인상(+24%) 중단, 기본관세 10%만 부과
<p>美 관세 조치 관련 시사점</p>	<p>IEEPA 상호관세 변동 가능성 검토</p> <p>1. IEEPA에 따른 시사점</p> <p>◎ IEEPA에 따른 추가 관세 변동 가능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헌법상 대외관세 권한은 대통령 권한으로 유한 소송 진행 중 - 8월 29일, 즉 연방순회법원으로부터 IEEPA에 근거한 관세정책은 위법하다고 판결됨 - 10월 13일까지 기존 조치의 효력 유지, 트럼프 행정부 대법원 상고 시사 - 11월 5일, 즉 연방대법원에서 IEEPA에 근거한 관세의 합법성에 대한 구두 변론 진행 - 즉, 연방대법원이 공식 판결 선고일은 불확실히 되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IEEPA를 대체할 법적 근거를 검토하고 있음 <p>◎ 행정명령 제14326호 (07.31)의 제8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EEPA에 따른 관세부과 권한 소송 취소 시의 대안책으로 되어있음 - (신설 포함) Sec 6. Severability(분리 가능성) <p>(참고) If any provision of this order, or the application of any provision of this order to any individual or circumstance, is held to be invalid, the remainder of this order and the application of its provisions to any other individuals or circumstances shall not be affected.</p>
<p>관세부과 현황 타임라인</p>	<p>美 관세 조치 소단계 모니터링 수행</p> <p>1. 트럼프 2기 행정부 미국 관세부과 현황 일지</p> <p>1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월 1일 - 20일 - 트럼프 대통령 취임 - 2월 1일부터 멕시코, 캐나다 대상 25% 관세 부과 - 중국에 대한 관세부과 방안 검토 완료 <p>11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월 - 13일 - 14일 <p>- 환율 변동에 관세 10% 인하(행정명령 제14357호, 11월 10일 적용)</p> <p>- 환율 상호관세 인상 중단 및 기본관세 10% 부과 연립(행정명령 제14358호)</p> <p>- 한-미 무역협상 결과 발표(백악관 팩트시트)</p> <p>① 자동차자동차 부품: 15%(MFN 포함), EU 및 일본과 동등 수준 ② 의약품: 15% 이하로 적용 ③ 항공기부품, 체내직 의약품, 미국내 비생산 천연자원: 0% ④ 반도체: 경쟁국인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적용</p> <p>- 특정 농산물에 대한 상호관세 면제 조치</p> <p>- 기타 김갈리(에트로그), 열대 과일, 콩고유 대추야자 가지와 베이커리, 아시아, 오렌지, 자몽 등 특정 농산물에 대한 상호관세 면제</p>



② 무역원산지리포트(총 6회 기고)

□ 우리 기업을 위한 무역원산지 분야 전문 간행물인 해당 정보지에 ‘환경규제’와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주제로 **新 통상 전문정보 제공(6건)**

- [FTA ANALYSIS] 1분기부터 3분기까지 환경규제와 미국發 보호무역주의를 중심으로 **新 통상 특화 원산지 전문정보 제공**

[무역원산지리포트] 환경규제와 보호무역주의 중심의 전문정보 제공 내역

구분	분기		제목
1회	1분기		APEC Green Customs for MSMEs Workshop (환경규제와 세관의 역할을 중심)
2회	2분기		한국원산지정보원과 함께하는 미국 통상정책 및 원산지 대응 (미국 CBP 비특혜 원산지 판정 정보제공 중심)
3회			신통상 환경속 수입 규제 현황과 기업의 대응 전략 실태 (기업의 애로와 대응을 중심)
4회			트럼프 2기 관세부과 종합현황 및 타임라인
5회	3분기		2025년 미국의 최신 관세부과 현황
6회			미국 관세정책 대전환 시대, 수출기업의 원산지 인식과 관리 역량 진단



KIOI

Korea Institute of International and Economic Studies

- (2분기) 원산지정보원과 함께하는 미국 통상정책 및 원산지 대응(CBP 판정 중심)

[FTA ANALYSIS] 2분기 기고문



- 미국과 미국 기업이 동등한 권에 대해 권리를 지닌 "원산지" 문제를 위해
-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및 인증을 위해 주요 법적 자료 집간
- CBP 심사 사례를 통해 최신 적용의 원산지 시스템, 사전 점검이거나 승인사 신청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1. 들어가며

2025년 유엔의 '대통령 재선으로 출범한 제2기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지지 기반으로 내세우며, 통상 정책 전반에 걸쳐 급격한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특정 국가에의 무역차지 해소, 자국 산업 보호, 국가 안보 등을 명분으로 관세 조처 강화 및 무역 협상 재검토 등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한국원산지정보원은 2025년 전통상 규격임을 신중히 미국 비특혜원산지

한국원산지정보원



- (2분기) 신통상 환경속 수입규제 현황과 기업 대응전략 실태(기업 애로, 대응 중심)

[FTA ANALYSIS] 2분기 기고문



신통상 환경속 수입규제 현황과 기업의 대응전략 실태 - 기업의 애로와 대응을 중심으로 -

1. 조사 배경

최근 글로벌 통상 환경은 보호무역주의의 확산과 함께 WTO 체제하에 전통적 수입규제 뿐만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관세 및 비관세 조치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2018년 2기 출범 이후 미국·중국 등 주요 교역국에서 통상정책의 급변함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들은 다양한 수입규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 파악과 대응 전략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한국생산직정보연구원(이하 '통상 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실제로 겪는 애로 사항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일련의사를 기획하였다.



통상환경정보연구원



- (2분기) 트럼프 2기 관세부와 종합현황 및 타임라인

[FTA ANALYSIS] 2분기 기고문





- (3분기) 2025년 미국의 최신 관세부과 현황

[FTA ANALYSIS] 3분기 기고문

2025년 미국의 최신 관세부과 현황표*

구분	품목명	관세율		비고	시행일	2025년 9월 1일 기준		
		현재	최신			관세율	관세율	관세율
2025년 9월 1일	자동차	25%	25%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9월 1일	25%	25%	25%
	자동차 부품	25%	25%	미국산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9월 1일	25%	25%	25%
2025년 10월 1일	자동차	25%	25%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10월 1일	25%	25%	25%
	자동차 부품	25%	25%	미국산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10월 1일	25%	25%	25%
2025년 11월 1일	자동차	25%	25%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11월 1일	25%	25%	25%
	자동차 부품	25%	25%	미국산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11월 1일	25%	25%	25%
2025년 12월 1일	자동차	25%	25%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12월 1일	25%	25%	25%
	자동차 부품	25%	25%	미국산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12월 1일	25%	25%	25%

*본 표는 2025년 9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관세부과 현황을 나타내며, 2025년 12월 31일 이후의 관세부과 현황은 미확정입니다. 관세부과 현황은 미국 관세청(CBP)의 최신 발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3분기) 미국 관세정책 대전환 시대, 수출기업의 원산지 인식과 관리 역량 진단

[FTA ANALYSIS] 3분기 기고문

2023



미국 관세정책 대전환 시대, 수출기업의 원산지 인식과 관리 역량 진단

1. 들어가며

2023년 미국의 관세정책은 전혀 다른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초기 출범과 함께 중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국에 대한 관세 부과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면서, 미국의 관세수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관세 부과가 원산지(기원산지)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원산지 기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세계적 대물망 그늘에 휩쓸려 줄곧 많은 어려움 부담했다.

본고는 최근 미국의 관세수입 변화 동향과 시장 대응요령을 분석하고, FTA 활용 수출기업 60%에 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현황과 향후 대응 과제를 진단해보고자 한다.

www.kioi.or.kr



KIOI

Korea Institute of Foreign Education

③ FTA 브리프

□ 시의성 있는 통상 이슈를 중심으로 기업 실무 지원을 위한 심층 정보제공

- [FTA BRIFF] 美 관세 정책추진의 근거와 부과 현황, 수출기업의 원산지 대응 체크리스트 및 원산지 판정지원 안내 등 실무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다양한 심층 정보를 제공

- (BRIFF 3호) 미국 통상정책과 원산지 대응

[FTA BRIFF] 3호 기고문

한국원산지정보원과 함께하는 미국 통상 정책 및 원산지 대응

- 원산지 및 관세 관련 최신 정책추진 동향 소개 및 연구자료
- 미국 수출업체의 원산지 및 관세 관련 실무 지원 방안
- CTR 및 기타 세관 관련 자료 개발과 원산지 표시를 위한 실무지원
- 원산지 신청 시 접근 가능 정보 제공 (수입업체 지원)

[본, 제정적 한국원산지정보원 관세상규제팀 현안연구팀]

1. 들어가며

2025년 보궐의 대통령 재선으로 출범한 제2기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제1차 관건에 내세우며, 통상 정책 전반에 걸쳐 급격한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특정 국가와의 무역협정 해소, 자국 산업 보호, 국가 안보 등을 명분으로 관세 조치 강화 및 무역 협상 재협박 등 역외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한국원산지정보원(이하 우리 원)은 2025년 선동상 규제팀을 신설하고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기준 분석, CTR 사전심사 가이드 작성, 선동상 관련 이슈 대응 등 다각적인 연구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2025년 상반기 동안 추진된 주요 성과를 중심으로 우리 원의 활동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 2025년 상반기 KIOI 미국 통상 정책 및 비특혜원산지 대응 주요 성과

구분	주요성과
1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사례집 발간
2	미국 CTR 사전심사 제도 활용 가이드북 및 통관심사 계약 세로
3	표 관세부와 관할 정보 제공 및 기업 지원 설명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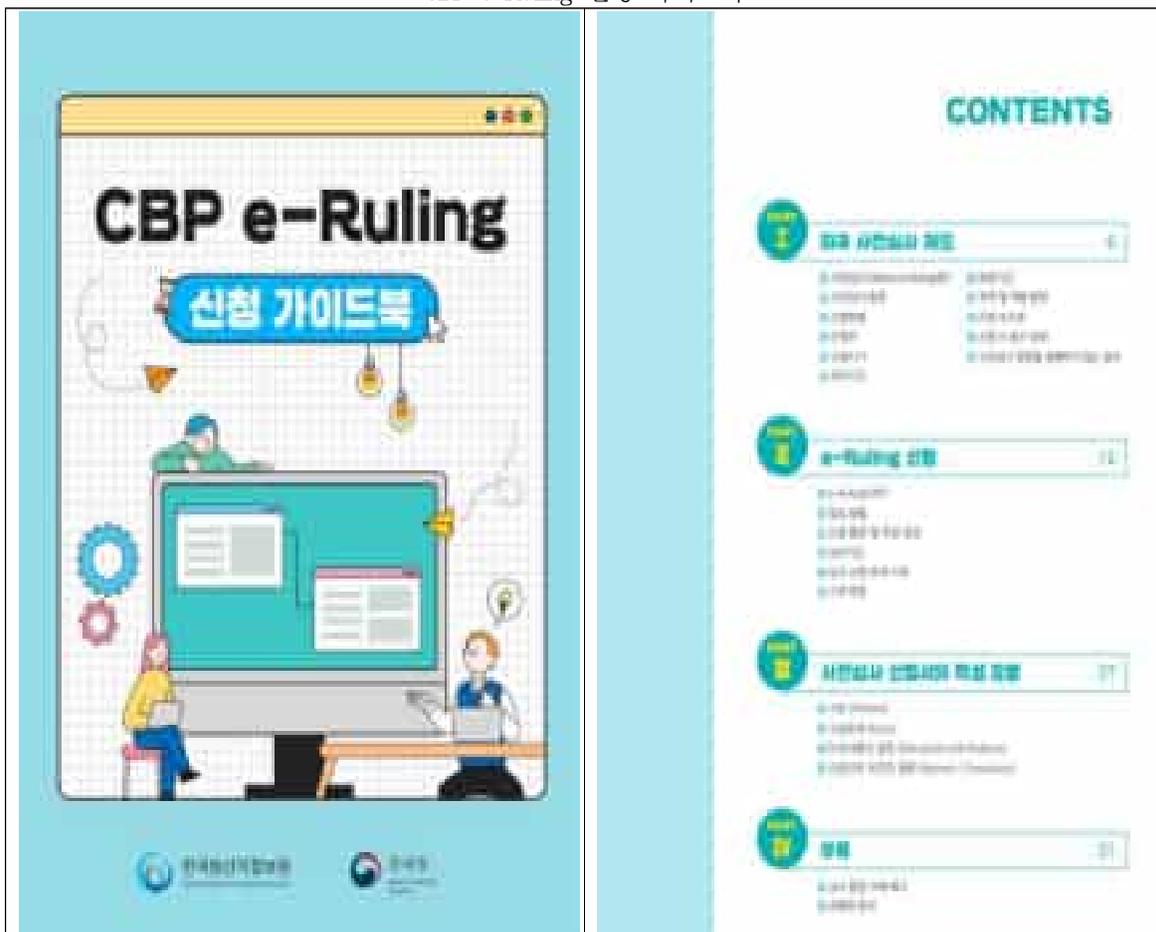


1-2. [비특혜 원산지] 美 CBP 원산지 사전심사 제도 활용 가이드 발간

□ e-Ruling 가이드북(온라인 동영상 포함)

- 수출국이 아닌 원산지(Country of Origin) 중심의 관세 조치에 따라 기업의 원산지 판정지원을 위한 원산지 사전심사제도 활용 가이드 제공
- (온·오프라인 제공) 설명회 및 간담회 시, 발간물 배포(총 1,700부)

CBP e-Ruling 신청 가이드북





KIOI

Korea Institute of Outer Information

- (동영상) 온라인 링크를 통한 신청 방법 동영상 배포

CBP e-Ruling 신청 가이드북 동영상

미국 CBP 전자 사전심사 신청 방법 <e-Ruling>

한국원산지정보원
Korea Institute of Origin Information

사전심사 제도란?
CBP로부터 품목분류, 원산지표시, 원산지판정 등에 대해 구속력이 있는 사전 판단을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
* CBP 미국 조세국(Customs and Trade Protection)

신청시기
최종 수출물품이 미국에 수입되기 전

신청인
해당 물품의 미국 수입자, 해외 수출자, 기타 심사 신청 사항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및 권한 있는 대리인으로서 개인, 법인, 조합, 협회, 기타 단체 등이 신청 가능

수입자, 수출자, 관세사 등 해당 거래와 관련된



★[정보제공 현황] 기업의 효과적인 관세 대응과 수출전략 수립 지원에 노력

新 통상 정보제공 현황

구분		내용	제공	비고
관세부과 동향 모니터링	부과 현황 및 타임라인	①현황표, ②관세부과 사례, ③상호관세 현황, ④관세 조치 배경 및 시사점, ⑤타임라인	-	전자 제공
	무역원산지 리포트	①APEC Green Customs for MSMEs Workshop - 환경규제와 세관의 역할을 중심으로 ②한국원산지정보원과 함께하는 미국 통상 정책 및 원산지 대응 - 미국 CBP 비특혜원산지 판정 정보 제공을 중심으로 ③신통상 환경속 수입규제현황과 기업의 대응전략 실태 - 기업의 애로와 대응을 중심으로 ④트럼프 2기 관세부과 종합현황 및 타임라인 ⑤2025년 미국의 최신 관세부과 현황 ⑥미국 관세정책 대전환 시대, 수출기업의 원산지 인식과 관리 역량 진단	-	
	FTA 브리프	①美 트럼프 관세정책 추진 근거 및 부과 현황(vol.5) ②'트럼프 관세' 현황과 수출기업 대응 체크리스트(vol.6)	-	
발간물 배포현황	e-Ruling 가이드북 (동영상 포함)	관세청 해외통관 설명회	700부	전자 병행
		KOTRA 관세 실무 설명회	300부	
		대구세관 통상 대응 설명회	100부	
		창원시청 미국 관세정책 대응 방안 설명회	150부	
		엑스포트클럽 식품·의약품 2차 교류회	100부	
		대구세관 관세·통상 플랫폼 간담회	100부	
		한국무역협회 수출기업 통상환경 세미나	100부	
		서울 본부세관 수출기업 우수사례 세미나	150부	
		총 1,700부 제공		



KIOI

Korea Institute of Foreign-Laborers

1-3. [설명회 및 간담회]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기업 대상 교육 및 컨설팅

① 설명회 및 간담회

□ 비특혜 원산지 기준 및 판정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회 및 간담회 참석을 통한 기업 대상 교육 및 컨설팅 수행

○ (설명회) 관세청&세관, 한국무역협회, KOTRA 등 유관기관과의 설명회/세미나 참여를 통한 기업 대상 교육 및 컨설팅 수행(총 22회)

- 3월 13일 한국무역협회와 대구세관이 주관한 ‘25년 美 통상 관련 기업 포럼’ 을 시작으로 ‘비특혜 원산지 기준 및 판정사례’ 중심의 교육 및 컨설팅 수행

2025년 미국 통상 관련 지역 기업 포럼(3월 13일)





KIOI

Center Institute of Foreign Education

CJ 미래경영연구원과의 간담회(8월 5일)



- 총 22회의 설명회 및 간담회 참여

설명회 및 간담회 내역

No.	일자	설명회 및 간담회 명칭	주관	대상
1	03.13.	2025년 미국통상관련 지역기업포럼	대구세관 및 무역협회	120개사
2	04.09.	미국 관세부과 관련 기업지원 대응방안 회의	관세청 본청	20인
3	04.30.	미 관세정책 변화 대응 수출기업 설명회	무역협회	250인
4	05.22.	미국 관세정책 변화에 따른 기업 간담회 (부산)	기획재정부 및 관세청	8개사
5	05.30	美트럼프 2.0 관세정책에 따른 우리의 대응방안과 과제	한국관세학회	-
6	06.11.	자동차 부품 수출기업 대미 통상대응 설명회	대구세관	60인
7	06.18.	2025년 찾아가는 FTA 통상데스크	청주상공회의소	50개사
8	06.19.	코트라 지방지원본부 실무자 통상대응 워크샵	KOTRA	20명



설명회 및 간담회 내역

No.	일자	설명회 및 간담회 명칭	주관	대상
9	07.16.	코트라 美 통상정책 대응 관세설명회 및 컨설팅 지원	KOTRA	260개사
10	07.23	미국 관세정책 대응 수출기업 지원 대책 회의	관세청	-
11	08.05	미국 비특혜원산지 관정 관련 기업 간담회 참석	CJ 미래경영연구원	4인
12	08.13.	미 통상정책 대응 관세 실무 설명회 및 상담회 발표	KOTRA	200인
13	08.29.	미국 관세대응 원산지결정기준 교육 지원	기획재정부 (브라운백 미팅)	30인
14	09.04.	평택 수출기업 현장 간담회	기재부 및 관세청	7개사
15	09.17.	미국 관세정책 대응 방안 설명회(창원)	창원시청	150인
16	09.17.	22025 수출기업을 위한 통상환경 대응 전략 설명회(수원)	KOTRA	80개사
17	09.23.	2025 엑스포트클럽 식품·의약품 2차 교류회	한국원산지정보원 (서울중기청)	20개사
18	09.23.	찾아가는 관세·통상 플랫폼 간담회	대구세관	60인
19	09.26.	2025 수출기업을 위한 통상환경 대응 전략 설명회(일산)	KOTRA	50개사
20	10.29.	포항상공회의소 찾아가는 FTA 통상 데스크 설명회	포항상공회의소	30개사
21	11.06.	2025 수출바우처 활용 및 대응전략 세미나	KOTRA	120개사
22	11.10.	베트남 대미 최근 관세행정 동향 및 원산지 관리 방안 세미나	KOTRA (호치민무역관)	40인

② 美 통상정책 관련 ‘관세 대응 119 플러스’ 유관기관 협의체 구축

- 美 통상정책 관련 ‘관세 대응 119 플러스’와 같은 유관기관 협의회를 구축하여 수출기업의 관세 대응에 필요한 원산지 관련 정책 자문 지원



② 원산지 이슈 분석

★[중장기 통상전략 수립] USMCA 개정 동향 및 자동차 원산지 분쟁사례 연구

USMCA 개정 동향과 자동차 원산지 분쟁사례 연구(요약)

구분	USMCA 개정 동향	자동차 원산지 분쟁사례
수행 목적	우리나라 통상환경에 미치는 영향 예측	자동차 사례를 통한 정책 시사점 도출
관련 사안	USMCA 개정, 한-미 FTA 개정 등	산업별 통상 로드맵 구축, 수출 지원 정책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AFTA→USMCA 전환으로 공동 논의 체제 · 한국은 한-미 FTA 재개정을 앞둔 만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USMCA 개정 동향을 통해 정책적 대응요소 발굴이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미 역내 생산 투자 유도가 목표 ①RVC 75%로 상향 ②핵심부품 요건 강화 ③철강·알루미늄 역내 조달 ④LVC 도입
쟁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노동 환경, 환율 투명성 등 · 자동차, 철강, 섬유 등의 원산지 규정 강화 · 북미 3국 입장 ①미국: 공동 논의를 재협상의 압박 수단으로 활용 ②멕시코: 투자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신속 합의 주장 ③캐나다: 협정 유지 전제하, 디지털, 기후, 핵심 광물 등 이슈 논의 희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 지위가 인정된 핵심부품을 완성차 RVC 계산 시, 역내산으로 간주하는 롤업(Roll-up) 조항 인정 여부 · 판정 결과 롤업(Roll-up) 조항 인정 (인정사유) ①완성차와 부품의 불가분성 ②롤업(Roll-up) 조항 광범위 해석 가능 ③RVC 계산의 연속성·체계성 인정 ④원산지 정의의 일관된 해석(USMCA 제 1.5조 Originating) 필요 · 그러나 미국측 판정 불이행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 규제, 통상, 안보가 결합된 대미 전략 필요 · NTE 지적사항에 대한 선제적 점검 필요 · 원·부자재의 탈(脫) 중국을 위한 전략 필요 · CPTPP 등 중장기 공급망 다변화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의 판정 불이행으로 USMCA의 분쟁 해결제도 실효성 상실될 가능성 · 한-미 FTA 개정 시 부분품과 완성품의 불가분성 및 롤업 조항 주장 필요 · 개정된 사항에 대한 해석상이에 대비하여 명시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음 (미국측의 자의적 해석 방지 장치 필요)



2-1. USMCA 개정논의 동향(요약)

① NAFTA 및 USMCA 개정논의

1)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의 NAFTA 개정논의

- 무역적자를 줄이고 제조업, 농업, 서비스업에 대한 멕시코와 캐나다 시장 접근성을 개선하여 모든 미국인에게 공평한 협정 추구
 - NAFTA 기본 틀과 원칙을 계승하면서도 일부 핵심 분야의 구조 및 내용을 수정하고 대상을 확대하여 USMCA 체결

2)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의 USMCA 개정논의

- USMCA 제34.7조에 따라 공동 검토키 예정되어 있고, 3개국 합의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는바 각국의 논의 동향 확인할 필요 있음
 - 미국은 불공정하고 불균형한 무역 해결 과제 중 하나로 USMCA를 언급함. 캐나다와 멕시코산 수입품에 추가 관세부과를 명령하여 2026년 7월에 예정된 공동 검토 시점보다 빠르게 재협상을 유도한다고 보는 의견 있음
 - 멕시코는 공동 검토키 재검토키에 그치지 않고 재협상으로 단행될 것으로 전망. 다만 멕시코 경제에 USMCA가 필수적이므로 오히려 신속하게 진행하여 관세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입장
 - 캐나다는 USMCA 보호 및 갱신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면서도 협정 검토키 앞서 무역관련 문제 해결을 촉구함. IEEPA 관세에서도 USMCA 협정이 존중되는 것이 확인되므로 공동검토키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



②쟁점별 및 산업별 논의 동향

1) USMCA 기존 쟁점

- 자동차 원산지 규정에 대해 미국 공급업체는 이익을 보았으나 자동차 제조업체의 수익은 소폭 감소함
 - 미국 철강 업계는 강력한 역내 원산지 규정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자동차 제조 업계는 유연한 단계적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
- 캐나다 유제품 시장접근에 대해 USMCA 이후 캐나다에 대한 수출은 증가했으나 캐나다의 시장보호 전략으로 수출량이 쿼터에 미치지 못함.
 - 미국은 캐나다에서의 시장접근 약속 이행방식에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전망
 - 캐나다는 무역협정으로 관세율 할당량 확대나 유제품 등 관세 인하 약속 금지 법안을 채택하였고 미국 낙농업계는 이에 우려를 표명

2) 신규 쟁점

- 펜타닐과 이민자 유입에 대응하기 위하여 캐나다와 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한바, USMCA에 국경안보 협력 규정을 삽입해도 별도의 관세조치 가능성 있음
- AI 관련 구체적 조항이 부재하여 데이터 프라이버시 표준 수립 가능성 있음

3) 한미 FTA 재개정 논의

- 쟁점별 분리 협상 방식에서 벗어나 cross-issue 패키지 형태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산업, 외교, 안보를 통합한 다층적 전략 마련 필요



2-2. USMCA 원산지 규정 분쟁사례 관련 동향(요약)

① USMCA 자동차 원산지 규정의 주요 개정 내용

- NAFTA의 허점을 보완하고 북미 역내 조달을 촉진하기 위해 USMCA 자동차 원산지 규정은 대폭 강화됨
 - 역내가치비율(RVC) 요건 상향, 핵심부품 요건 도입, USMCA 역내산 철강 및 알루미늄 구매 요건 도입, 노동가치비율(LVC) 요건 도입 등

1) United States-Automotive Rules of Origin 사건

- 원산지(또는 역내산) 인정을 받은 핵심부품을 완성차의 역내가치비율(RVC) 산정 시 역내산으로 반영하는 롤업 조항의 적용 여부에 대하여 입장이 나뉨
 - 미국은 USMCA 부록 제3조의 구조가 완성차와 핵심부품으로 이원화되어 있음을 근거로 핵심부품에 대해 롤업 조항이 적용받지 않는다고 주장
 - 멕시코와 캐나다는 USMCA 부록 제3조 7항, 제4.5조 4항 문언을 근거로 핵심부품에 관한 롤업 조항이 적용된다고 주장
 - 패넬은 USMCA 부록 제3.1조-제3.6조는 핵심부품을 포함한 RVC 요건 및 계산법에 관한 조항이고, 제3.7조-제3.9조는 특정 품목을 제외시킨다는 문언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핵심부품에도 롤업 조항이 적용된다고 판단
- 자동차와 핵심부품의 불가분성, 롤업 조항의 광범위한 적용, RVC 계산의 연속성 및 체계성 강화 등의 측면에서 유의미함



2) USMCA 자동차 원산지 규정 관련 미국측 연구동향

- 패널 판정에 대하여 미국 정부는 역내산 제품 또는 부품의 사용률을 높이려는 USMCA 체결 목표를 저해한다며 판정을 불이행하고 있음
 - 이에 대해 자동차 업계는 불확실성을 초래한다며 이행을 촉구하는 반면 노동계는 USMCA 비당사국이 특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판정 불이행을 지지
- CSIS는 패널의 구성이 사실상 방해되었던 NAFTA 체제와 달리 패널 판정이 도출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판정을 불이행하고 있어 USMCA 분쟁 해결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
- Brookings는 USMCA 공급망에서의 역내산 자동차 부품 활용을 강화하는 것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명
 - 공동 재검토에서 주요 무역분쟁의 해소하거나 USMCA 역내에서 중국산 제품이 환적을 통해 역내산으로 둔갑하는 문제를 다루기 위한 광범위한 주제에 관해 협상할 것으로 전망

- 붙임. 1. 종합현황 및 타임라인 업데이트 내역 취합본(총 10회)
2. 무역원산지리포트 기고문 취합본(총 6건)
3. FTA 브리프 기고문 취합본(총 3건)
4. CBP e-Ruling 신청 가이드북
5-1. USMCA 개정논의 동향
5-2. USMCA 원산지 규정 분쟁사례 관련 동향. 끝.

1 종합현황 및 타임라인 업데이트 내역 취합본 / 1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부와 종합현황 및 타임라인 업데이트 내역	1
1차 미국 관세조치 종합표 작성(2025.07.17.)	1
2차 미국 관세조치 변동 내역 모니터링(2025.08.01.)	5
3차 제232조 반제품 구리 및 구리 파생상품 반영(2025.09.04.)	6
4차 미-일 무역합의 반영(2025.09.05.)	17
5차 일본산 수입 물품 관련 미국 행정명령 반영(2025.09.10.)	28
6차 제301조 대중 무역제재 관세율 설명 및 가독성 제고(2025.09.12.)	38
7차 일본산 자동차 수입 관세율 15% 반영(2025.09.16.)	48
8차 USMCA 내용 가독성 제고(2025.09.18.)	58
9차 제232조 목재 및 가구 관련 품목 관세 반영(2025.10.13.)	68
10차 한-미 무역협상 타결 및 미-중 협상 결과 반영(2025.11.26.)	78

2 무역원산지리포트 기고문 취합본 / 90

무역원산지리포트 기고문	90
1분기 APEC Green Customs for MSMEs Workshop(환경규제와 세관의 역할)	90
2분기 한국원산지정보원과 함께하는 미국 통상정책 및 원산지 대응	97
2분기 신통상 환경속 수입규제 현황과 기업 대응전략 실태(기업애로, 대응 중심)	109
2분기 트럼프 2기 관세부와 종합현황 및 타임라인	117
3분기 2025년 미국의 최신 관계부와 현황	122
3분기 미국 관세정책 대전환 시대, 수출기업의 원산지 인식과 역량 진단	135

3 FTA 브리프 기고문 기고문 취합본 / 145

FTA 브리프 기고문	145
1. [BRIFF 3호] 미국 통상정책과 원산지 대응	145
2. [BRIFF 5호] 美 트럼프 관세정책 추진 근거 및 부과 현황	151
3. [BRIFF 6호] ‘트럼프 관세’ 현황과 수출기업 대응 체크리스트	160

4 CBP e-Ruling 신청 가이드북 / 169

CBP e-Ruling 신청 가이드북	169
1. 미국 사전심사 제도	172
2. e-Ruling 신청	178
3. 사전심사 신청서 작성 요령	193
4. 부록(심사 결정 사례 예시)	198

5 USMCA 개정논의 동향 및 원산지 이슈 분석 / 199

5-1. USMCA 개정 논의 동향(완료 시기 : 2025년 8월)	199
제1절 서론	201
1. 연구 배경	201
2. 연구 목적 및 구성	202
제2절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의 NAFTA 개정 논의	204
1. 개정 논의 배경	204
2. 미국의 NAFTA 재협상 목표	206
3. USMCA 주요 내용	209



제3절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의 NAFTA 개정 논의	204
1. 개관	216
2. 국가별 논의 동향	217
3. 쟁점별 및 산업별 논의 동향	224
제4절 한-미 FTA 재개정 논의	231
1. 트럼프 1기 행정부의 한-미 FTA 개정 논의	231
2.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한-미 FTA 개정 논의	233
제5절 결론 및 시사점	239
5-2. USMCA 원산지 규정 분쟁사례 관련 동향(완료 시기 : 2025년 8월)	242
제1절 서론	242
제2절 USMCA 자동차 원산지 규정의 주요 개정 내용	243
제3절 United States-Automotive Rules of Origin 사건	249
1. 분쟁 개요	249
2. 쟁점 품목의 범위	251
3. 쟁점 조항	252
4. 법적 쟁점 검토	254
제1절 시사점 및 결론	261



붙임. 1 종합현황 및 타임라인 업데이트 내역(총 10차)

(1차)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부와 종합현황 및 타임라인_07.17.

2025년 미국의 최신 관세부와 현황표 ¹⁾							2025년 7월 17일 기준		
구분	세율	관세부		관세부		비고	2025년 7월 17일 기준	2025년 7월 17일 기준	2025년 7월 17일 기준
		관세부	관세부	관세부	관세부				
2025년 7월 17일 기준	관세부	25%				25%			
	관세부	25%				25%			
	관세부	25%				25%			
	관세부	25%				25%			
2025년 7월 17일 기준	관세부					25%			
	관세부					25%			
	관세부					25%			
	관세부					25%			
2025년 7월 17일 기준	관세부					25%			
	관세부					25%			
	관세부					25%			
	관세부					25%			
2025년 7월 17일 기준	관세부					25%			
	관세부					25%			
	관세부					25%			
	관세부					25%			

1) 본 현황표는 2025년 7월 17일 기준이며, 2025년 7월 17일 이후에 발표된 관세부 관련 내용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관세부 관련 내용은 관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2) 관세부 관련 내용은 관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관세부 관련 내용은 관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3) 관세부 관련 내용은 관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관세부 관련 내용은 관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KIOI

Korea Institute of International Trade Negotiation

1. 트럼프 2기 추가 관세에 종류 (발효일 기준)

관세 품목	관세규정 및 유효일
IEEPA [멕시코, 멕시코 아약이민 관세]	행정명령 14193호(개) 및 14194호(개) (2025년 2월 1일)
IEEPA [중국 아약이민 관세]	행정명령 14195호 (2025년 2월 1일)
무역확장법 제232조 [철강 및 철강 파생제품 관세]	포고령 10896호 (2025년 2월 10일), 포고령 11012호 (2025년 6월 3일)
무역확장법 제232조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파생제품 관세]	포고령 10895호 (2025년 2월 10일), 포고령 11012호 (2025년 6월 3일)
무역확장법 제232조 [자동차, 자동차 부품 관세]	포고령 10908호 (2025년 3월 26일), 행정명령 14289호 (2025년 4월 29일)
IEEPA [상호관세]	행정명령 14257호 (2025년 4월 2일) *2025년 7월 8일까지 90일간 유효 유예

2. 추가관세 대상품목의 종류

-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 대통령 포고령 10908에 따른 품목
- 철강, 알루미늄 및 파생제품 : 대통령 포고령 9704, 9705, 9980, 10895, 10896에 따른 품목
- 에너지 자원 : CISM(CBP 고시) #65054354에 열거된 품목
- 포타시(potash) : 행정명령 14197호에 따른 관세를 조정 품목
- 영국 : 아-영 무역협정(EU, 25.5.8.)으로 영국산 자동차 관세 완화,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0%(6.4.부터 25%), 항공기 부품 관세 0%
- 러시아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200% 추가 관세 부과

3. IEEPA에 따른 상호관세 10% 제외 품목

- 캐나다, 멕시코산 상품(USMCA 포함)
- 50 USC 1702(b) - IEEPA 이 대통령령의 권한에 대한 제외조항 - 에 포함되는 모든 품목
- Executive order 14257 Annex B에 제시된 상호관세 적용 제외 품목
 -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철강 및 철강 파생제품 관세,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파생제품 관세) 적용 품목
 -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 적용 품목
 - 미국 관세율표(HTSUS) 2권에 명시된 세율이 적용되는 무역 상대국의 모든 제품 (i.e, 벨라루스, 우크, 북한, 러시아)
 - 기타 명시된 품목(구리, 의약품, 반도체, 석재 제품, 특정 핵심 광물, 에너지 및 에너지 제품)
 -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양부 관세 조치 대상이 될 수 있는 모든 품목 (* 반도체 및 의약품-의약품 원료에 대한 조사 진행 중(2025.4.1.-))
 - 50 U.S.C. § 1702(b)에 명시된 품목(개인 통신, 인도적 기부, 정보 및 정보 자료의 수출입, 여행과 관련된 거래 등)

4) 관세율에서 추가 관세부과 대상 :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미국산(HTSUS) - 중국산(HTS) 간에 관세율 차로 적용하고 있는
 5) 관세율에서 추가 관세부과 대상 : 철강, 알루미늄 및 파생제품 미국산(HTSUS) - 중국산(HTS) 간에 관세율 차로 적용하고 있는



트럼프 2기 미국 관세부와 현황 일지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27), 2월 1일부터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 예고,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방안 검토 언급
2월 1일	트럼프 대통령, 행정 이민자와 한타일 등 비약 유입을 이유로 캐나다-멕시코에 25%, 중국에 추가 10% 관세부과 결정연설 서명
2월 3일	미국,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관세 30일간 유예
2월 4일	미국, 중국에 추가 10% 관세(타이완 이민 EEPA) 발표
2월 10일	트럼프 대통령, 철강 알루미늄 수입품에 25% 관세 부과 예고
2월 13일	트럼프 대통령, 4월 2일부터 선운관세 부과 예고
2월 26일	트럼프 대통령, 유럽연합(EU)에 대한 25% 관세 발표 예고
3월 4일	미국,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 발표. 대 중국 관세 10% 추가(대 중 20% 관세(타이완 이민 EEPA) 적용)
3월 5일	트럼프 대통령, 멕시코와 캐나다산 자동차에 관세 1개월 면제 발표
3월 7일	트럼프 대통령, 멕시코와 캐나다 수입품 중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이 적용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4월 2일까지 관세 면제 (단, 캐나다 에너지 및 광물 제품 10%)
3월 9일	중국, 미국산 농축산물 대상 2차 보복관세 부과
3월 12일	미국, 전 세계 철강-알루미늄 수입품에 25% 관세(제232호) 발표
3월 14일	캐나다, 25%의 캐나다산의 규모 미국산 철강-알루미늄 등에 보복관세 부과 세계무역기구(WTO)에 분쟁 합의 요청
3월 24일	트럼프 대통령, 4월 2일부터 에타수출러산 석유-가스 수입하는 국가에 25% 관세 부과 발표
3월 26일	트럼프 대통령, 미국산 자동차에 4월 3일부터 25% 관세(제232호) 부과 발표
4월 1일	미국, 제232호 근거하여 반도체 제조 장비 및 미약용-광학에 대한 수입 안보 영향 조사 개시(4월 16일부터 27일간 의견 수렴, 270일 내 조사보고서 제출)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오는 수입품에 10%의 기본관세를 4월 5일부터 부과하고, 대미 관세율과 비관세 장벽을 감안해 역방향 국기별 관세율 4월 9일부터 추가로 부과하는 '상호관세' 계획 발표(해방의 날) 발표. 주요국 관세율은 한국 25%, 중국 34%, 유럽연합(EU) 20%, 베트남 46%, 대만 32%, 일본 24% 등
4월 3일	제232호 근거에 미국산 자동차에 25% 관세 부과



KIOI

Global Economic & Market Information



4월 4일	중국, 4월 10일부터 미국산 수입품에 34%의 맞불 추가 보복관세 부과 예고
4월 5일	美, 전세계 상대 10% '기본관세' 발표
4월 8일	미국, 중국의 보복 관세 대응으로 중국에 대해 누적 104% 관세 부과 예고
4월 9일	중국,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맞불 관세 84%로 인상, 트럼프 대통령, 중국 재외 국가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90일간 유예 관계 발표, 중국에 대한 관세는 누적 145%로 인상
4월 12일	미국, 스타트업-컴퓨터-에너지-제조업 등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
4월 22일	미국, 무역협정 232조를 근거로 가동 책임관할 및 중 대응 도려, 부품 수입의 연부 관련 영향 조사 착수
5월 2일	중국-중국 소액 연세 기준 제시
5월 4일	트럼프 대통령, 해외제작 영화에 100% 관세 부과 발표 발표
5월 9일	미국 영국 무역협정 발표, 미국은 영국산 자동차 관세 연간 10만대에 관세 기준 25%에서 10%로 인하하고 영국산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제시, 영국에 대한 10% 상호관세는 유지, 영국은 농산물 등 시장 개방기로
5월 10-11일	미국-중국, 스위스 제네바에서 고위급 무역 회담
5월 12일	미국-중국, 상대국에 대한 관세 각각 115%포인트 인하 발표 (대중 관세 145%→30%, 대미 관세 125%→10%, 8월 12일까지 90일간 유예)
5월 14일	미국, 중국발 800달러(약 114만 원) 미만 소액 소포 관세 120%에서 54%로 인하
5월 23일	트럼프 대통령, 6월 1일부터 EU에 50% 관세 부과 경고, 대중에 최소 25% 관세 경고하며 이어온 미국 내 생산 촉구
5월 25일	트럼프 대통령, EU에 부과 경고한 50% 관세 7월 9일까지 유예 발표
5월 28일	미 연방 국제통상법원, 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EEPA) 시행 금지
5월 29일	미 연방 연소법원, 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에 일시 복원 명령
5월 30일	트럼프 대통령, 펜실베이니아주 US-스틸 공장 연장에서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 25%에서 50%로 인상 발표
6월 3일	트럼프 대통령, 철강-알루미늄 제품 관세 25%에서 50%로 인상하는 후고문 시행
6월 4일	철강-알루미늄 제품 50% 관세 발표
7월 2일	미국, 베트남과 무역협정 발표, 베트남산 수입품 20% 단량관세(기준48%), 관세율 40% 고율관세 부과
7월 7일	트럼프 대통령, 상호관세 유예 종료 시장 연기 및 한국, 일본에 관세 서한 공개, 8월 1일부터 모든 한국산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 통보



KIOI

Korea Institute of Foreign Trade Studies

(2차) 트럼프 2기 관세부과 현황표 업데이트_08.01.

국가		2025년 미국의 최신 관세부과 현황표 ¹⁾					2025년 7월 현재			
		관세부과 대상 품목	관세율	관세부과 대상 품목	관세율	관세부과 대상 품목	관세율	관세부과 대상 품목	관세율	관세부과 대상 품목
1차 관세부과	중국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월 1일부터	-	-	10% (2017-)	-	-	-	-	
	한국	2025년 1월 1일부터	20%	-	10% (2017-)	-	-	-	-	
	미국산 원재료	USMCA 품목 USMCA 외 품목	0% 20%	-	10% 10%	+	-	기존 관세 또는 FTA 협정 관세	관세 또는 관세면제	
2차 관세부과	중국		20%	-	10% (2017-)	-	-	-	-	
	한국		20%	-	10% (2017-)	-	-	-	-	
	미국산 원재료	USMCA 품목 USMCA 외 품목	0% 20%	-	10% 10%	+	-	기존 관세 또는 FTA 협정 관세	관세 또는 관세면제	
3차 관세부과	중국		20%	-	10% (2017-)	-	-	-	-	
	한국		20%	-	10% (2017-)	-	-	-	-	
	미국산 원재료	USMCA 품목 USMCA 외 품목	0% 20%	-	10% 10%	+	-	기존 관세 또는 FTA 협정 관세	관세 또는 관세면제	
4차 관세부과	중국		20%	-	10% (2017-)	-	-	-	-	
	한국		20%	-	10% (2017-)	-	-	-	-	
	미국산 원재료	USMCA 품목 USMCA 외 품목	0% 20%	-	10% 10%	+	-	기존 관세 또는 FTA 협정 관세	관세 또는 관세면제	

1) 본 현황표는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2025년 7월 15일 기준으로 업데이트한 관세율이며, 2025년 7월 15일 이후 변경된 관세율도 2025년 7월 15일 기준으로 업데이트된 관세율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관세율의 변경은 2025년 7월 15일 이후에 발생합니다. 관세율의 변경은 2025년 7월 15일 이후에 발생합니다. 관세율의 변경은 2025년 7월 15일 이후에 발생합니다. 관세율의 변경은 2025년 7월 15일 이후에 발생합니다.



KIOI

Center Research Institute for Higher Education

(3차) 232조 반제품 구리 및 구리 파생상품 반영_09.04.

2025년 미국의 최신 관세부와 현황표*										
구분	품목명	관세율 및 기타 조치						2025년 관세		
		제조업에 관해			서비스에 관해			관세율	관세부담	관세부담
		제조업에 관해	제조업에 관해	제조업에 관해	서비스에 관해	서비스에 관해	관세부담	관세부담	관세부담	관세부담
232조 반제품 구리	구리	10%					10%			
	구리	25%			20%		25%			
	구리	25%					25%			
	구리	25%					25%			
232조 구리 파생상품	구리	25%					25%			
	구리	25%					25%			
	구리	25%					25%			
	구리	25%					25%			
232조 구리 파생상품	구리	25%					25%			
	구리	25%					25%			
	구리	25%					25%			
	구리	25%					25%			
232조 구리 파생상품	구리	25%					25%			
	구리	25%					25%			
	구리	25%					25%			
	구리	25%					25%			
232조 구리 파생상품	구리	25%					25%			
	구리	25%					25%			
	구리	25%					25%			
	구리	25%					25%			

* 가맹점 148명, 가맹점 평균인, 향후관세부담 반영(2025.09.04)



사례를 통한 관세부과 구조 이해하기

<철강 및 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

- 해당 관세는 '무역확장법' 제232조 품목별 관세에 IEEPA 국가별 관세가 더해지면서, 관세 구조가 이중화돼 가장 복잡한 형태로 적용 중
 - (구조) 기존 관세 체계에 ① 제232조 품목별 관세와 ② IEEPA 상호관세가 더해지는 구조
 - (예시) 냉장고는 철강 파생상품 대상에 이어 알루미늄 파생상품 대상으로 확대된 품목(08.18.)
 - ① 제232조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 = 합량 가치에 대한 관세 50%
 - ② IEEPA 국가별 관세 = (한국산) 비합량 가치에 대한 상호관세 15%
 - ∴ 총 관세 = ①+② + 기존 관세(MFN or FTA 등)

① 원산지(국가)별 파생상품 관세의 차등 부과

- 이중 구조를 지닌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는 원산지(국가)별로 차등 적용 중이며, 한국산은 USMCA를 충족한 물품 외에 가장 낮은 관세를 적용받고 있음

원산지	관세부과율		
1 USMCA 기준 충족	합량 가치에 대한 관세 50%만 부과		
2 한국산	합량 가치에 대한 관세 50% + 비합량 가치에 대한 상호관세 15%		
3 USMCA 기준 미충족	합량 가치에 대한 관세 50% + <table border="1" style="display: inline-table; vertical-align: middle;"> <tr> <td>[예] 비합량 가치에 대한 상호관세 35%</td> </tr> <tr> <td>[예] 비합량 가치에 대한 상호관세 25%</td> </tr> </table>	[예] 비합량 가치에 대한 상호관세 35%	[예] 비합량 가치에 대한 상호관세 25%
[예] 비합량 가치에 대한 상호관세 35%			
[예] 비합량 가치에 대한 상호관세 25%			
4 중국산	합량 관세 50% + 비합량 관세 10% + 미역 관세 20%		

② 철강 파생상품에 이어 알루미늄 파생상품 대상으로 확대된 품목의 관세부과 예시

<한국산 냉장고의 해외 수출 체크리스트(예시)>

No	항목	확인 내용(예시)												
1	관세부과 동향	철강 파생상품에 이어 알루미늄 파생상품에 적용 확대(08.18) - 대상 물품의 부과 항목 확인(합량 관세, 비합량 관세) <table border="1" style="display: inline-table; vertical-align: middle;"> <thead> <tr> <th>제232조 철강 파생상품</th> <th>제232조 알루미늄 파생상품</th> <th>상호관세</th> </tr> </thead> <tbody> <tr> <td>대상</td> <td>대상</td> <td>대상</td> </tr> <tr> <td>합량 가치에 50%</td> <td>합량 가치에 50%</td> <td>비합량 가치에 15%</td> </tr> </tbody> </table>	제232조 철강 파생상품	제232조 알루미늄 파생상품	상호관세	대상	대상	대상	합량 가치에 50%	합량 가치에 50%	비합량 가치에 15%			
제232조 철강 파생상품	제232조 알루미늄 파생상품	상호관세												
대상	대상	대상												
합량 가치에 50%	합량 가치에 50%	비합량 가치에 15%												
2	품목분류	일체형 냉장고의 품목분류는 HTSUS 8418.10.00												
3	원산지 함유량과 제조지 확인	자사 제품의 철강 함유량은 40%, 알루미늄 함유량은 20%, 기타 40%												
4	원산지 확인	美 CBP 원산지사실조사 체도를 통한 원산지(한국) 확인												
5	관세를 확인과 총 관세 계산	상품 총가치: 1,000\$ <table border="1" style="display: inline-table; vertical-align: middle;"> <thead> <tr> <th>구분</th> <th>관세부과(과제가액)</th> </tr> </thead> <tbody> <tr> <td>합량 원양</td> <td>400\$ + 50% = 200\$</td> </tr> <tr> <td>알루미늄 합량</td> <td>200\$ + 50% = 100\$</td> </tr> <tr> <td>비합량</td> <td>400\$ + 15% = 60\$</td> </tr> <tr> <td>기존 관세</td> <td>MFN or FTA 등</td> </tr> <tr> <td>총 관세</td> <td>360\$ + 기존 관세액</td> </tr> </tbody> </table>	구분	관세부과(과제가액)	합량 원양	400\$ + 50% = 200\$	알루미늄 합량	200\$ + 50% = 100\$	비합량	400\$ + 15% = 60\$	기존 관세	MFN or FTA 등	총 관세	360\$ + 기존 관세액
구분	관세부과(과제가액)													
합량 원양	400\$ + 50% = 200\$													
알루미늄 합량	200\$ + 50% = 100\$													
비합량	400\$ + 15% = 60\$													
기존 관세	MFN or FTA 등													
총 관세	360\$ + 기존 관세액													

자료: 한국관세청, WTA-IEEPA, 1990년 이후의 제701



KIOI

Korea Institute of Outer Trade Research

국가별 상호관세 및료 현황*

(2025.06.07)

연번	국기	관세율(%)	
		평균 ¹⁾	최저
1	아프가니스탄	10	15
2	알제리	30	30
3	앙골라	32	15
4	앙골라대사	25	20
5	볼리비아	10	15
6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30	30
7	보츠와나	37	15
8	브라질 ²⁾	50	10
9	브루나이	25	25
10	캄보디아	38	19
11	캐메룬	11	15
12	차드	13	15
13	코스타리카	10	15
14	코네티쿠트	21	15
15	중고민주공화국	11	15
16	에콰도르	10	15
17	에도기니	13	15
18	EU	30	MFN 15% 이상 품목 MFN 15% 미만 품목
19	포클랜드 제도	41	MFN 적용 15%(MFN 포함)
20	피지	22	15
21	기니	10	15
22	기니야	38	15
23	아이슬란드	10	15
24	인도 ³⁾	28	25
25	인도네시아	19	19
26	이라크	30	35
27	이스라엘	17	15
28	일본	25	15
29	요르단	20	15
30	카자흐스탄	25	25
31	케냐	40	40
32	레소토	50	15
33	러시아	30	30
34	리히텐슈타인	37	15
35	마다가스카르	47	15



KIOI

Global Institute of Higher Education

36	말리위	17	15
37	말레이시아	24	19
38	모리셔스	40	15
39	몰도바	25	25
40	모잠비크	16	15
41	미얀마	40	40
42	나미비아	21	15
43	나우루	30	15
44	뉴질랜드	10	15
45	니카라과	18	18
46	나이지리아	14	15
47	북마케도니아	33	15
48	노르웨이	15	15
49	파키스탄	29	19
50	파푸아뉴기니	10	15
51	필리핀	20	19
52	세르비아	35	35
53	남아프리카공화국	30	30
54	대한민국	25	15
55	스리랑카	30	20
56	스위스	31	39
57	시리아	41	41
58	태وان	32	20
59	태국	36	19
60	트리니다드 토바고	10	15
61	튀니지	25	25
62	튀르키예	10	15
63	우간다	10	15
64	영국	10	10
65	바누아투	22	15
66	베네수엘라	15	15
67	베트남	40	20
68	잠비아	17	15
69	잠비아	18	15

1) 본 장표에는 주교과 국가명칭만 실기(영문명칭 제외)한데 반하여 세계 무역 센터가 작성하였을
 2) 주교과 국가 명칭만 실기 시에는 지번 순서(001-07-09)
 3) 국가명칭은 영문순서 지번 순서(영문명칭 제외)한데 지번 40%가 국가명칭 중 50%가 지
 4) 지번순서 25%의 영문 명칭명칭 제외(지번순서 25%가 국가명칭 중 50%가 지



KIOI

Center for Korea's International Trade

1. '트럼프 관세' 개요

○ 배경

- 지속적인 무역적자로 인한 국가 경제 안보의 위협 해소

○ 목적

- 무역적자 시정, 중국산 무역 수출 자당, 해외 투자 유입 촉진, 미국 제조 산업 보호를 통한 미국 중심 보호주의 통상질서 확립

○ 추가 관세 종류

-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품목별 관세, '국제비상경제조약'(IEEPA)에 따른 국가별 관세

협약/조약	대상	발효일자	일시	비고	
IEEPA	북미-이반	캐나다	행정명령 제14193호	02.01	대역 수입 차단, 환캐나다 25%, 에너지 10%
			행정명령 제14231호	03.06	감률 10%
			행정명령 제14325호	07.31	USMCA 미준족 35%
	멕시코	행정명령 제14194호	02.01	대역 수입 차단, 환멕시코 25%	
		행정명령 제14232호	03.06	감률 10%	
	중국	행정명령 제14195호	02.01	대역 수입 차단, 환중국 10%	
		행정명령 제14228호	03.03	미역(헨타닐) 관세 20%	
	국가별 관세 (상호관세)		행정명령 제14257호	04.02	환세계 10%, 환중국 34%, 국가별 관세 양분 (한국 25%, EU 20% 등)
			행정명령 제14259호(중국)	04.06	환중국 34% → 84%
			행정명령 제14268호(중국)	04.09	환중국 84% → 125%
			행정명령 제14298호(중국)	05.12	환중국 125% → 10% (+24% 유지)
			행정명령 제14326호	07.31	상호관세를 최종 수정 (환중국 25% → 15%)
			행정명령 제14334호(중국)	08.11	환중국 관세 유예 기준 10%(+24%) 유지
무역확장법 제232조	자동차 자동차 부품	포고령 제10908호	03.26	환세계 25%, (USMCA 준족, 비미국산 25%)	
		포고령 제10896호	02.10	환세계 25%	
	철강-철강 파생상품	포고령 제10947호	06.03	환세계 25% → 50%	
		포고령 제10895호	02.10	환세계 25%	
	알루미늄-알루미늄 파생상품	포고령 제10947호	06.03	환세계 25% → 50%	
		포고령 제10962호	07.30	환세계 50%	



④ 최신 조치 주요내용(행정명령 14326호, CBP 지침 CSMS #65829726_(08.07))

- ✓ 국가별 상호관세 확장
- 총 69개 경제주체 대상 국가별 관세부과(부속서), 한국, 일본, EU 등 포함
- 부속서 1에 명시되지 않은 국가는 행정명령 14257호에 따른 10% 관세부과
- (MFN) 對EU 관세면 면시(15%, MFN 포함)
- ✓ 환적(Transshipment) 차단 포함 신설
- 환적을 통한 관세 회피 행위 적발 시, 기본관세에 40% 추가 관세부과
- 그 외 법에 따른 징벌적 벌금, 세금 및 기타 부과금 모두 적용(감경 또는 면제 불가)
- 6개월마다 우회수출 의심 국가 및 상품 리스트 발표(정부 조달, 안보 및 산업 심사 등 반영)
- 현재 환적(Transshipment)의 정의와 적용기준에 대한 공식 발표 전(미국측 지리적 해석 가능)

환적(Transshipment)_CBP 플래이지

- 원산지 상품은 NAFTA 역외에서 하여, 재적재, 보존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 또는 캐나다-멕시코-미국으로 운송하는데 필요한 작업 외의 공정 수행 시 원산지 지위를 상실한다.

④ 비료용 세트 공품

- 미국산 소재를 사용하여 만든 수술 도구와 멕시코산 연 기구와 플러그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운송되어 삼근 및 포장 공정을 수행
- CBP는 해당 품종의 원산지를 '열린 및 포장' 공정이 수행된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판단

④ 변동 가능성

- 국가별 개별 협상에 따른 관세 조정 가능

2. 제232조 품목별 추가 관세 근거 규정 및 지침

④ 자동차-자동차 부품: 대통령 포고령 10926에 따른 품목

- (자동차) CBP 지침 CSMS #64624801_(04.02)
- (자동차 부품) CBP 지침 CSMS #64916652_(05.01)
- (USMCA) CBP 지침 CSMS #65649652_(07.16)

④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 대통령 포고령 10947호에 따른 품목

- (철강 및 철강 파생상품) CBP 지침 CSMS #65236374_(06.03)
- (철강 파생상품) 품목 확대 적용 CBP 지침 CSMS #65936570_(08.15)
-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파생상품) CBP 지침 CSMS #65236645_(08.03)
- (알루미늄 파생상품) 품목 확대 적용 CBP 지침 CSMS #65936615_(08.15)

④ 반제품 구리 및 파생상품: 대통령 포고령 10962호에 따른 품목

- (구리 및 구리 파생상품) CBP 지침 CSMS #65794272_(07.31)

④ 그 외 제품

- (캐나다) 에너지 자원, CBP 지침 CSMS #64297449_(03.03)
- (캐나다) 칼륨(Potash), CBP 지침 CSMS #64336037_(03.06)
- (멕시코) 칼륨(Potash), CBP 지침 CSMS #64335789_(03.06)



3. IEPA에 따른 상호관세 추가 여부

①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자동차·자동차 부품 관세부과 시**

- 동 법(제232조)에 따른 철강 가치에 대한 할당 관세와 상호관세는 모두 제외
- 동 법(제232조)에 따른 알루미늄 가치에 대한 할당 관세와 상호관세는 모두 제외
- 동 법(제232조)에 따른 구리 가치에 대한 할당 관세와 상호관세는 모두 제외

②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철강·알루미늄 관세부과 시**

- 철강과 알루미늄은 할당 가치에 따른 품목부과 가능하며, 상호관세는 제외
- 단, 파생상품의 경우 비할당 가치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③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반도체·구리 및 파생상품 관세부과 시**

- 할당 가치에 따른 품목관세 부과 및 비할당 가치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④ 그 외 제품

- (TPP) 보세 임시 수입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신고된 상품은 제외
- (USMCA) USMCA 기준 충족 시 제외, 미충족 시 부과
- (캐나다) USMCA 기준 미충족 에너지 자원(10%), 철물(10%) 부과
- (멕시코) USMCA 기준 미충족 철물(10%) 부과

⑤ 환중국 상호관세 현황

- 행정명령 제14334호(08.11)에 따라 11월 10일까지 현행 유지(총 54% 중, 24% 유예)
- 행정명령 제14298호(05.12)에 따라 국가별 10%(+24% 유예중)+미약·이민 관세 20% 유지

4. '트럼프 관세' 시사점

① IEPA에 따른 추가 관세 변동 가능성

- 미국 헌법상과 대통령 권한 논란으로 위헌 소송 진행 중
- 8월 29일, 美 연방순회합소법원은 IEPA에 근거한 관세정책은 위법하다고 판결함
- 10월 13일까지 기존 조치의 효력 유지, 트럼프 행정부 대법원 상고

② 행정명령 제14326호 (07.31)의 제6조

- IEPA에 따른 관세부과 관련 소송 패소 시의 대비책으로 보여짐
- (산설 조항) Sec 6. Severability(분리 가능성)

(원문) If any provision of this order, or the application of any provision of this order to any individual or circumstance, is held to be invalid, the remainder of this order and the application of its provisions to any other individuals or circumstances shall not be affected.

- (국문) 본 명령의 특정 조항이나 그 적용이 어떤 개인이나 상황에 대해 **무효로 판단되더라도, 본 명령의 다른 조항이나 그 적용은 여전히 효력을 유지합니다.**
- 해당 조항(Severability)은 어떤 상호관세 관련 발표(07.07)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정책에 대한 안정성 제고를 위해 삽입한 것으로 해석 가능



KIOI

Center for International Trade & Investment

> 2018년 3기 행정부 > 미국 관세부 > 전망 정리

1월

20일	- 트럼프 대통령 취임 - 2월 1일부터 멕시코-캐나다 대상 25% 관세 예고 - 중국에 대한 관세부과 방안 검토 언급
------------	--

2월

1일	- 불법 이민자-선타날 등 자택 무입을 이유로 캐나다-멕시코 대상 25% 관세부과 행정명령 시행 - 중국 대상 30% 추가 관세 부과 결정
3일	- 멕시코-캐나다 대상 관세 30일간 무효 발표
4일	- 중국에 대한 IEEPA 무역-제한 관세 30% 추가 발표
10일	- 3월 12일부터 철강-알루미늄 수입품에 25% 관세 예고
13일	- 상호관세 부과 예고
28일	- EU에 대한 25% 관세 발표 예고

3월

4일	- 캐나다-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발표(캐나다 에너지 관련 품목 50%) - 중국 대상 20% 관세 적용(기본 10% + 무역-제한 IEEPA 10%)
8일	- 멕시코-캐나다산 자동차 관세 1개월 연기 발표
9일	- USMCA 기존-종속 품목에 대해 멕시코-캐나다산 수입품 관세 연기 - USMCA 기존 미종속 캐나다산 에너지 10%, 항공 10% 관세부과 - USMCA 기존 미종속 멕시코산 자동차 10% 관세
9일	- 중국, 미국산 농-축산물 대상 '2차 보복관세' 부과
12일	- 전 세계 철강-알루미늄 수입품에 25% 관세(제232조) 발표
14일	- 캐나다, 미국산 철강-알루미늄 등에 29% 캐나다달러 규모 보복관세 부과 - WTO 분쟁 합의 요청
24일	- 4월 2일부터 테레오메틸산 석유 수입품에 25% 관세부과 발표
28일	- 4월 3일부터 제232조 자동차 관세 25% 부과 예고

4월

1일	- 제232조 근거로 반도체-세포장비 및 석유를 원료 수입에 안보 영향 조사 개시
2일	- 전 세계 수입품에 10% 기본관세(4월 5일부터) 발표 - 국가별 추가관세(4월 9일부터) '상호관세' 계획 발표, '핵심적 날' 명명 - 국가별 관세 발표: 한국 25%, 중국 34%, EU 20%, 베트남 46%, 대만 32%, 일본 24% - 미국산 부품 함량이 20% 이상인 경우 미미국산 부품(Contents)인 25% 적용, 미국산 부품 함량이 20% 미만인 경우 전체 가치에 대해 관세부과



KIOI

Center for Korea's International Trade

3일	- 제232조 근거로 한국산 자동차에 25% 관세 부과
4일	- 제232조 근거로 알루미늄 파생상품 25% 관세 부과 - 러시아산 알루미늄 제품에 200% 고율관세 적용 - 중국, 4월 10일부터 미국산 수입품에 34% 보복관세 부과 예고
8일	- 전 세계 대상 10% 관세 발표
8일	- 중국 보복관세 대상 차원에서 대중국 관세 84%로 인상, 미역 관세 포함 누락 104% 관세 부과
9일	- 중국, 대미 관세 84%로 인상 - 트럼프 대통령, 중국 제1차 국가 대상 상호관세 90일 유예 발표(7월 9일까지) - 대중국 관세 125%로 인상, 미역 관세 포함 누락 관세 145%
12일	- 스티리온-김류라-반도체 제조장비 등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
18일	- 제232조 근거로 중요 광물 및 파생상품 수입의 연보 영향 조사 착수
29일	- 제232조 근거로 자동차 및 부품 수입 조정 제도 도입 - 관세상해금 및 중책부과 조정

5월

2일	- 중국-홍콩 소액 연세 기준 폐지
4일	- 해외 제작 영화에 100% 관세부과 방침 발표
8일	- 미-영 무역협약의 발표 - 미국: 영국산 자동차 10만 대까지 25% → 10%로 인하,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폐지 - 영국: 미국산 농산물 등 시장 개방 수용
10-11일	- 미-중 제1차 고위급 회담 개최
12일	- 미-중, 상호관세 대폭 인하 합의(90일간 유효) - 대미 관세: 145% → 30% - 대미 관세: 125% → 10%
14일	- 중국발 800알터 미만 소포 관세 120% → 54%로 인하
23일	- 트럼프 대통령, 6월 15일부터 EU 대상 50% 관세부과 예고 - 대중에 최소 25% 관세부과 예고, 미미한 미국 내 생산 촉구
26일	- EU 대상 50% 관세 7월 9일까지 유예 발표
28일	- 미-영 무역협약, 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IEEPA) 시행 금지 반발
29일	- 미-영 무역협약, 상호관세 일시 폐지 선언
30일	- 트럼프 대통령, 철강-알루미늄 제품 관세 25% → 50% 인상 발표

6월

3일	- 트럼프 대통령, 철강-알루미늄 관세 인상 예고문 서명
4일	- 철강-알루미늄 제품 50% 관세 발표 - 중국 대상 대미-영인 IEEPA 적용



KIOI

Center for Korea's International Trade

7월

2일	- 미-캐프닐 무역협약 발표 - 베트남산 수입품 관세 46% → 20% 단일관세 - 관직 품목에 40% 고율 관세부과
7일	- 트럼프 대통령 공식서한 발송, 상호관세 유예 종료 시점 연기 - 한국-일본에 관세 서한 공개, 8월 1일부터 한국산 제품 전면 25% 관세 통보
30일	- 번가공 구리-베를-구리 파생상품에 8월 1일부터 50% 관세부과 발표 - 브라질 제품에 8월 6일부터 40% 관세부과 발표 - 8월 29일부터 모든 국가 대상 소액 면세 제도 중단
31일	- 캐나다 제품에 8월 1일부터 25% 관세부과 발표 - 상호관세를 수감한 발표(8월 7일 발표) - 중국은 IPEA에 따른 무역이민 관세 20% + 국가별 관세 10% 적용 유지

8월

6일	- 트럼프 대통령 인도적 관세부과 가능성 시사 - 인도산 제품에 관세 25% 인상 발표(러시아 석유 제외)
7일	- 한국산 품목 상호관세 15% 발표
11일	- 중국 상호관세 유예 발표(11월 10일까지)
13일	- 트럼프 대통령 전략적 핵심 의약품 비축량 확보 명령
15일	- 철강-알루미늄 관세 적용 범위 확대(407개 품목, 8월 18일부터 적용) - 철강-알루미늄 합형 기자에 대한 관세 50%, 비합형 부분은 국가별 관세부과 - 미국에서 제한 및 조조된 경우 0%, 영국산 25%, 러시아산 200%
18일	-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 적용 범위 확대(407개 품목) 시행
21일	- 미국-EU 무역협정에 관한 공동성명문 발표 - 인도적, 의약품, 목재에 대한 관세를 15% 이하 포함 - 제232조 자동차-자동차 부품 관세 관련 공동성명 발표 ① (조건) EU의 미국산 물품에 대한 관세 인하 시행을 위한 입법안 공식 제출 ② MFN 15%이상인 품목은 MFN 적용 ③ MFN 15% 미만인 품목은 15% 상호관세 부과(MFN 포함)
29일	- 불 연합준회원국, IPEA에 근거한 상호관세 위협 판결 ① 관할 대상은 상호관세 및 무역 관세(중국, 멕시코, 캐나다) ②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구리 등 제232조 품목관세는 무역확장법에 근거하므로, 이번 판결의 대상이 아님 ③ 2025년 10월 13일까지 기존 조치의 효력 유지 ④ 트럼프 행정부, 대법원 상고 시사



New Tariff Requirements for 2025 (국문번역본)

미국은 대통령 행정명령 및 회고장을 통해 '무역확장법, 제232조 및 '국제비상경제안정법(EPA)에 근거하여 기존 관세 책정에 새로운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하고 있음. (이하 '관세'로 지칭) 많은 다수의 현재 규정 및 기타 조항이 적용될 수 있으며, 세부 규정은 CBP.gov에서 확인)

자몽차, 자몽차부품 유효 3월 기준: 25% 제232조: 자몽차 및 자몽차 부품에 25% 관세부과 대상: 모든 국가(예: UK, USMCA) 기타 '당해 적용 제외' 규정 없음	구리 유효 1월 기준: 50% 제232조: 연극용 구리를 및 구리 제품 관세율 50% 관세부과. 대상: 모든 국가 기타 '당해 적용 제외' 규정 없음	철강 유효 4월 기준: 50% 제232조: 철강 및 철강 제품(선용) 50% 부과 대상: 모든 국가(예: 영국) 20% 기타 '당해 적용 제외' 규정 없음	알루미늄 유효 4월 기준: 50% 제232조: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제품(선용) 50% 관세부과 대상: 모든 국가 (예: 2024-2025년 200%, 2026년 25%) 기타 '당해 적용 제외' 규정 없음
브라질 유효 1월 기준: 40% 제232조: 모든 비연극 용도에 40% 관세부과 상호관세(110%) 추가 적용	멕시코산 직물(면도) 유효 27일 기준: 25% 제232조: 모든 면도산 비연극 용도에 25% 관세부과 상호관세 추가 적용	캐나다 유효 1월 기준: 25%, 알루미늄: 10% 제232조: 모든 용도에 25% 관세부과 (예: 알루미늄 10%, 철강 10%) USMCA 기준을 충족한 원산지 품목은 제232조 규정에서 면제 USMCA 기준을 충족한 품목은 상호관세 35% 부과 기타 '당해 적용 제외' 규정 없음	멕시코 유효 7월 기준: 25% 철강 10% 제232조: 모든 용도에 25% 관세부과 (예: 철강 10%) USMCA 기준을 충족한 원산지 품목은 제232조 규정에서 면제 USMCA 기준을 충족한 품목은 상호관세 25% 부과 기타 '당해 적용 제외' 규정 없음
중국/홍콩 유효 4월 기준: 25% 제232조: 모든 용도에 25% 관세부과 상호관세 10% 추가 적용	상호관세 유효 7월 기준: 25% 제232조: 모든 국가(예: 미국) 상호관세부과 대상: (HS코드(30-47)) 비연극 용도에 적용 사용 적용	유효 29일부터 모든 국가 대상 'de minimis' 무역세 책정 폐지	

특정 관세에 대해 적용 제외

1. 제232조 자몽차/자몽차 부품 내성은 제232조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상호관세(비연극/면도)에 대한 적용 제외(예: 제232조)의 적용을 받지 않음

2a. 제232조 철강/알루미늄 대상 품목은 상호관세(비연극/면도)에 대한 적용 제외(예: 제232조)의 적용을 받지 않음

2b. 제232조 구리 대상 품목은 상호관세(비연극/면도)에 대한 적용 제외(예: 제232조)의 적용을 받지 않음

철강/알루미늄/구리가 포함된 제품은 제232조 관세를 모두 적용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KIOI

Center Institute of Higher Education

(4차) 미-일 합의 행정명령 반영_09.05.

2025년 미국의 최신 관세부과 현황표												
구분	최신세	주요 품목 추가명세					관세부과율	주요 비고	기타 적용 관세			
		세율의 적용대상품	중국 원산지품	미국 원산지품	자유무역	외국산품			관세협정	관세협정	관세협정	
1차관세 식량기 농산물	면화	0%					0%					
	콩	0%			0%		40%					
	채소류	0%					0%					
	유제품 유제품 유제품	0% 0% 0%					0% 0% 0%	관세협정 관세협정 관세협정				
2차관세 공업제품	면화						0%					
	콩				0%		0%					
	채소류						0%					
	유제품 유제품 유제품						0% 0% 0%	관세협정 관세협정 관세협정				
3차관세 공업제품	면화						0%					
	콩				0%		0%					
	채소류						0%					
	유제품 유제품 유제품						0% 0% 0%	관세협정 관세협정 관세협정				
4차관세 공업제품	면화						0%					
	콩				0%		0%					
	채소류						0%					
	유제품 유제품 유제품						0% 0% 0%	관세협정 관세협정 관세협정				
5차관세 공업제품	면화						0%					
	콩				0%		0%					
	채소류						0%					
	유제품 유제품 유제품						0% 0% 0%	관세협정 관세협정 관세협정				

* 기입된 내용은 기류의 변경된 이후의세율 반영(2025.04.07)



시제품 출산 관세부과 구조 이해하기

<철강 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

- 해당 관세는 '무역확장법, 제232조 품목별 관세에 KEPA 국가별 관세가 더해지면서, 관세 구조가 이중화돼 가장 복잡한 형태로 적용 중
 - (구조) 기존 관세 체계에 ① 제232조 품목별 관세와 ② KEPA 상호관세가 더해지는 구조
 - (예시) 냉장고는 철강 파생상품 대상에 이어 알루미늄 파생상품 대상으로 확대된 품목(08.18.)
 - ① 제232조 철강 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 = 합합 가치에 대한 관세 50%
 - ② KEPA 국가별 관세 = (한국산) 비합합 가치에 대한 상호관세 15%
 - ∴ 총 관세 = ①+② + 기존 관세(MFN or FTA 등)

① 원산지(국가)별 파생상품 관세비 차등 부과

- 이중 구조를 지닌 철강 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는 원산지(국가)별로 차등 적용 중이며, 한국산은 USMCA를 충족한 품목 외에 가장 낮은 관세를 적용받고 있음

원산지	관세부과율		
1 USMCA 기준 충족	합합 가치에 대한 관세 50%만 부과		
2 한국산	합합 가치에 대한 관세 50% + 비합합 가치에 대한 상호관세 15%		
3 USMCA 기준 미충족	합합 가치에 대한 관세 50% + <table border="1" style="display: inline-table; vertical-align: middle;"> <tr> <td>[개] 비합합 가치에 대한 상호관세 35%</td> </tr> <tr> <td>[별] 비합합 가치에 대한 상호관세 25%</td> </tr> </table>	[개] 비합합 가치에 대한 상호관세 35%	[별] 비합합 가치에 대한 상호관세 25%
[개] 비합합 가치에 대한 상호관세 35%			
[별] 비합합 가치에 대한 상호관세 25%			
4 중국산	합합 관세 50% + 비합합 관세 10% + 대약 관세 20%		

② 철강 파생상품에 이어 알루미늄 파생상품 대상으로 확대된 품목의 관세부과 예시

<한국산 냉장고의 품미 수출 체크리스트(예시)>

No.	항목	확인 내용 (예시)												
1	관세부과 품항	철강 파생상품에 이어 알루미늄 파생상품에 적용 확대(08.18) - 대상 품목의 부과 항목 확인(합합 관세, 비합합 관세)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제232조 철강 파생상품</th> <th>제232조 알루미늄 파생상품</th> <th>상호관세</th> </tr> </thead> <tbody> <tr> <td>대상</td> <td>대상</td> <td>대상</td> </tr> <tr> <td>합합 가치의 50%</td> <td>합합 가치의 50%</td> <td>비합합 가치의 15%</td> </tr> </tbody> </table>	제232조 철강 파생상품	제232조 알루미늄 파생상품	상호관세	대상	대상	대상	합합 가치의 50%	합합 가치의 50%	비합합 가치의 15%			
제232조 철강 파생상품	제232조 알루미늄 파생상품	상호관세												
대상	대상	대상												
합합 가치의 50%	합합 가치의 50%	비합합 가치의 15%												
2	품목분류	일체형 냉장고의 품목분류는 HTSUS 8418.30.00												
3	원자재 함유량과 제조지 확인	자사 품목의 철강 함유량은 40%, 알루미늄 함유량은 30%, 기타 40%												
4	원산지 확인	美 CBIP 원산지조사신청서 제도를 통한 원산지(한국) 확인												
5	관세를 확인과 총 관세 계산	상품 총가치 1,000\$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구분</th> <th>관세비율(과제기준)</th> </tr> </thead> <tbody> <tr> <td>합합 합합</td> <td>400\$ × 50% = 200\$</td> </tr> <tr> <td>알루미늄 합합</td> <td>200\$ × 50% = 100\$</td> </tr> <tr> <td>비합합</td> <td>400\$ × 15% = 60\$</td> </tr> <tr> <td>기존 관세</td> <td>MFN or FTA 등</td> </tr> <tr> <td>총 관세</td> <td>360\$ + 기존 관세액</td> </tr> </tbody> </table>	구분	관세비율(과제기준)	합합 합합	400\$ × 50% = 200\$	알루미늄 합합	200\$ × 50% = 100\$	비합합	400\$ × 15% = 60\$	기존 관세	MFN or FTA 등	총 관세	360\$ + 기존 관세액
구분	관세비율(과제기준)													
합합 합합	400\$ × 50% = 200\$													
알루미늄 합합	200\$ × 50% = 100\$													
비합합	400\$ × 15% = 60\$													
기존 관세	MFN or FTA 등													
총 관세	360\$ + 기존 관세액													

자료: 한국관세(미국관세), *FTA-SHEF, 제조요율 참조하여 계산



KIOI

Center for Research in Organic Chemistry

40개 대학의 순위

2014년 10월

순위	대학	KIOI 순위		
		2014년	2013년	
1	연세대학교	90	15	
2	고려대	20	20	
3	경희대	12	15	
4	한양대	25	20	
5	동국대	90	15	
6	포스텍	20	20	
7	고려대	27	15	
8	서강대	60	40	
9	한양대	25	20	
10	한양대	25	20	
11	한양대	11	15	
12	한양대	11	15	
13	고려대	10	15	
14	고려대	21	15	
15	고려대	11	15	
16	고려대	10	15	
17	고려대	15	15	
18	한양대	20	20	
			MIN 10% 미만 순위	MIN 10% 미만 순위
			MIN 10% 미만 순위	MIN 10% 미만 순위
19	고려대	41	10	
20	한양대	10	15	
21	한양대	10	15	
22	고려대	18	15	
23	한양대	10	15	
24	한양대	26	20	
25	고려대	16	15	
26	한양대	20	20	
27	한양대	17	15	
28	한양대	28	15	
29	고려대	20	15	
30	한양대	25	20	
31	한양대	40	40	
32	고려대	10	15	
33	한양대	20	20	
34	고려대	27	15	
35	고려대	47	15	
36	한양대	17	15	
37	한양대	24	15	
38	한양대	40	15	
39	한양대	25	20	
40	고려대	10	15	
41	한양대	40	40	
42	한양대	21	15	
43	한양대	10	15	
44	고려대	10	15	
45	한양대	16	15	
46	한양대	14	15	



KIOI

Center Institute of Foreign Information

연번	국가	관세율(%)	
		추진도	현황
47	북마케도니아	33	15
48	노르웨이	15	15
49	파키스탄	29	19
50	파푸아뉴기니	10	15
61	필리핀	20	19
62	세르비아	35	35
63	남태평양공화국	30	30
64	대한민국	25	15
65	스리랑카	30	20
66	스위스	31	39
67	시리아	41	41
68	대만	32	20
69	태국	36	19
70	토지니드 토바고	10	15
71	튀니지	25	25
72	튀르키예	10	15
73	우간다	10	15
74	영국	10	10
75	바누아투	22	15
76	베네수엘라	15	15
77	베트남	40	20
78	잠비아	17	15
79	짐바브웨	18	15

1) 본 원동구는 위첨자 국가 별관세 부과/영양영양 제142300038 71만쪽 한 내세 부과 관세지정품
 2) 조일크 국가 별첨부 공디 시연에 따른 관세율(07.07~07.08)
 3) 신이일근 상로관세 11% 의 별도 영양영양 제14233004 제의 40%가 조기10이 총 30% 부과
 4) 인도스 관세관세 28% 의 별도 영양영양 제14229004 제의 25%가 조기10이 총 10% 부과



KIOI

Center for International Trade & Investment

1. '무역보장관세' 개요

○ 배경

- 지속적인 무역위기로 인한 국가 경제 안보의 위협 해소

○ 목적

- 무역위자 시정, 중국산 우회 수출 차단, 해외 투자 유입 촉진, 미국 제조 산업 보호를 통한 미국 중심 보호주의 통상질서 확립

○ 추가 관세 종류

- '무역차관법, 제232조에 따른 품목별 관세, '국제비상경제관법, (IEEPA)에 따른 국가별 관세

법률구분	대상	발령일자	일부	비고	
IEEPA	아메리칸 멕시코	멕시코	행정명령 제14193호	02.01	마약 유입 차단, 환태.니.다 25%, 쿠나치 10%
		멕시코	행정명령 제14231호	03.06	장류 10%
		멕시코	행정명령 제14325호	07.31	USMCA 미준속 35%
		멕시코	행정명령 제14194호	02.01	마약 유입 차단, 환멕시코 25%
		멕시코	행정명령 제14232호	03.06	장류 10%
		중국	행정명령 제14195호	02.01	마약 유입 차단, 환중국 10%
	중국	행정명령 제14228호	03.03	마약(벤다닐) 관세 20%	
	국가별 관세 (상호관세)		행정명령 제14257호	04.02	환세계 10%, 환중국 34%, 국가별 관세 발표 (한국 25%, EU 20% 등)
			행정명령 제14259호(중국)	04.08	환중국 34% → 84%
			행정명령 제14266호(동아)	04.09	환중국 84% → 125%
			행정명령 제14298호(중국)	05.12	환중국 125% → 10% (+24% 부여)
			행정명령 제14326호	07.31	상호관세를 최종 수정 (환한국 25% → 15%)
			행정명령 제14334호(중국)	08.11	환중국 관세 유예 기준 10%(+24%) 유지
	무역차관법 제232조	자동차.자동차 부품	포고령 제10908호	03.26	환세계 25%, (USMCA 준속, 비미국산 25%)
		철강.철강 파생상품	포고령 제10896호	02.10	환세계 25%
포고령 제10847호			06.03	환세계 25% → 50%	
일부미용 일부미용 파생상품		포고령 제10895호	02.10	환세계 25%	
		포고령 제10847호	06.03	환세계 25% → 50%	
반제품 구리 및 파생상품		포고령 제10962호	07.30	환세계 50%	



❶ 화산 조치 주요내용(행정명령 14326호, CBP 지침 CSMS #65829726_(08.07))

- ✓ 국가별 상호관세 확정
- 총 69개 경제주체 대상 국가별 관세부과(부속서 I 한국, 일본, EU 등 포함)
- 부속서 II에 명시되지 않은 국가는 행정명령 14257호에 따른 10% 관세부과
- (MFN) 원EU 관세만 명시(16%, MFN 포함)
- ✓ 환적(Transshipment) 차단 조항 신설
- 환적을 통한 관세 회피 행위 적발 시, 기본관세에 40% 추가 관세부과
- 그 외 법에 따른 징벌적 벌금, 세금 및 기타 부과금 모두 적용(감경 또는 면제 불가)
- 6개월마다 무취 수출 의심 국가 및 시설 리스트 발표(정부 조달, 안보 및 상업 심사 등 반영)
- 현재 환적(Transshipment)의 정의와 적용기준에 대한 공식 발표 전(미국측 자의적 해석 가능)

환적(Transshipment)_CBP 홈페이지

- 환산지 상품은 NAFTA 역외에서 하역, 재적재, 보존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 또는 캐나다-멕시코-미국으로 운송하는데 필요한 작업 외의 공정 수출 시 환산지 지위를 상실한다.

❷ 의류물 세트 분류

- 미국산 소재를 사용하여 만든 수출 도구와 멕시코산 면 가운과 봉대가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운송되어 삼군 및 포장 공정을 수행
- CBP는 해당 물품의 환산지를 '영국 및 프랑스' 공정이 수행된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판단

❷ 변동 가능성

- 국가별 개별 협상에 따른 관세 조정 가능

2. 제232조 품목별 추가 관세 근거 규정 및 지침

❶ 자동차-자동차 부품: 대통령 포고령 10925에 따른 품목

- (자동차) CBP 지침 CSMS #64624801_(04.02)
- (자동차 부품) CBP 지침 CSMS #64918652_(05.01)
- (USMCA) CBP 지침 CSMS #65649652_(07.16)

❷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 대통령 포고령 10947호에 따른 품목

- (철강 및 철강 파생상품) CBP 지침 CSMS #65236374_(06.03)
- (철강 파생상품) 품목 확대 적용 CBP 지침 CSMS #65936570_(08.15)
-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파생상품) CBP 지침 CSMS #65236645_(06.03)
- (알루미늄 파생상품) 품목 확대 적용 CBP 지침 CSMS #65936615_(08.15)

❸ 반제품 구리 및 파생상품: 대통령 포고령 10962호에 따른 품목

- (구리 및 구리 파생상품) CBP 지침 CSMS #65794272_(07.31)

❹ 그 외 제품

- (캐나다) 에너지 자원, CBP 지침 CSMS #64297449_(03.03)
- (캐나다) 칼륨(Potash), CBP 지침 CSMS #64336037_(03.06)
- (멕시코) 칼륨(Potash), CBP 지침 CSMS #64335789_(03.06)



3. IEPA에 따른 상호관세 추가 여부

●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자동차·자동차 부품 관세부과 시**

- 동 법(제232조)에 따른 철강 가치에 대한 할당 관세와 상호관세는 모두 제외
- 동 법(제232조)에 따른 알루미늄 가치에 대한 할당 관세와 상호관세는 모두 제외
- 동 법(제232조)에 따른 구리 가치에 대한 할당 관세와 상호관세는 모두 제외

●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철강·알루미늄 관세부과 시**

- 철강과 알루미늄은 할당 가치에 따른 중역부과 가능하며, 상호관세는 제외
- 단, 피생상품의 경우 비할당 가치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반도체를 구리 및 피생상품 관세부과 시**

- 할당 가치에 따른 품목관세 부과 및 비할당 가치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 그 외 제품

- (TIP) 보세 임시 수입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신고된 상품은 제외
- (USMCA) USMCA 기준 충족 시 제외, 미충족 시 부과
- (캐나다) USMCA 기준 미충족 에너지 자원(10%), 합류(10%) 부과
- (멕시코) USMCA 기준 미충족 합류(10%) 부과

● 한중국 상호관세 현황

- 행정명령 제14334호(08.11)에 따라 11월 10일까지 현행 유지(총 54% 중, 24% 유예)
- 행정명령 제14298호(05.12)에 따라 국가별 10%(+24% 유예종)+마약이전 관세 20% 유지

4. '트럼프 관세' 시사점

● IEPA에 따른 추가 관세 변동 가능성

- 미국 헌법상의 대통령 권한 논란으로 위헌 소송 진행 중
- 8월 29일, 美 연방순회형소법원은 IEPA에 근거한 관세정책은 위법하다고 판결함
- 10월 13일까지 기존 조치의 효력 유지, 트럼프 행정부 대법원 상고 시사

● 행정명령 제14326호 (07.31)의 제6조

- IEPA에 따른 관세부과 관련 소송 패소 시의 대비책으로 보여짐
- (산실 포함) Sec 6. Severability(분리 가능성)

(원문) If any provision of this order, or the application of any provision of this order to any individual or circumstance, is held to be invalid, the remainder of this order and the application of its provisions to any other individuals or circumstances shall not be affected.

- (국문) 본 명령의 특정 조항이나 그 적용이 어떤 개인이나 상황에 대해 무효로 판단되더라도, **본 명령의 다른 조항이나 그 적용은 여전히 효력을 유지합니다.**
- 해당 조항(Severability)은 이전 상호관세 관련 발표(07.07)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정책에 대한 안정성 재고를 위해 삽입한 것으로 해석 가능



<트럼프 2기 행정부> 미국 관세부과 현황 일자

1월

- 20일**
- 트럼프 대통령 취임
 - 2월 1일부터 멕시코-캐나다 대상 25% 관세 예고
 - 중국에 대한 관세부과 방안 검토 언급

2월

- 1일**
- 불법 이민자-펜타닐 등 마약 유입을 이유로 캐나다-멕시코 대상 25% 관세부과 행정명령 서명
 - 중국 대상 10% 추가 관세 부과 명명
- 3일**
- 멕시코-캐나다 대상 관세 30일간 유예 발표
- 4일**
- 중국에 대한 IEEPA 미약 이민 관세 10% 추가 발표
- 10일**
- 3월 12일부터 철강-알루미늄 수입물에 25% 관세 예고
- 13일**
- 상호관세 부과 예고
- 26일**
- EU에 대한 25% 관세 발표 예고

3월

- 4일**
- 캐나다-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발표(캐나다 에너지 관련 품목 10%)
 - 중국 대상 20% 관세 적용(기존 10% + 하라리언 IEEPA 10%)
- 5일**
- 멕시코-캐나다산 자동차 관세 1개월 연기 발표
- 8일**
- USMCA 기준 중국 품목에 대해 멕시코-캐나다산 수입품 관세 면제
 - USMCA 기준 미중국 캐나다산 에너지 10%, 철강 10% 관세부과
 - USMCA 기준 미중국 멕시코산 철강 10% 관세
- 9일**
- 중국, 미국산 농·축산물 대상 '2차 보복관세' 부과
- 12일**
- 전 세계 철강-알루미늄 수입물에 25% 관세(제232조) 발표
- 14일**
- 캐나다, 미국산 철강-알루미늄 등에 29%의 캐나다달러 규모 보복관세 부과
 - WTO 분쟁 협의 요청
- 24일**
- 4월 2일부터 배타수출리산 석유 수입국에 25% 관세부과 발표
- 26일**
- 4월 3일부터 제232조 자동차 관세 25% 부과 예고



KIOI

Korea Institute of International Law & Economics

4월

1일	- 제232조 근거로 인도적 예외 조항 및 지역별-원료 수입에 관한 행정 조서 제사
2일	- 전 세계 수입품에 10% 기준관세(4월 5일부터) 발표 - 국가별 국가수입품에 '상호관세' 제외 발표, '역방의 날' 연방 - 국가별 관세 발표: 한국 25%, 중국 34%, EU 30%, 베트남 40%, 태안 32%, 일본 34% - 미국산 부품 함량% 20% 이상인 경우 미국산 부품(Certified)인 25% 적용, 미국산 부품 함량% 20% 미만인 경우 전체 가치에 대해 관세 부과
3일	- 제232조 근거로 미국산 자동차에 25% 관세 부과
4일	- 제232조 근거로 알루미늄 와전선품 25% 관세 부과 - 아시아산 알루미늄 제품에 200% 고율관세 적용 - 중국, 4월 10일부터 미4산 수입품에 34% 관세에 부과 예고
6일	- 전 세계 대상 10% 관세 발표
8일	- 중국 알루미늄에 대해 관세에서 18%로 관세 84%로 수정, 미산 관세 포함 نرخ 104% 관세 부과
9일	- 중국, 18% 관세 84%로 인상 - 프랑스 대통령, 중국 해외 투자 대상 상품에 90% 부과 발표(7월 9일부터) - 대중국 관세 125%로 수정, 미산 관세 포함 نرخ 관세 145%
12일	- 스페인-영국(브렉시트) 협상에서 한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
18일	- 제232조 근거로 중국 광물 및 파생상품 수입에 관한 행정 조서 제사
29일	- 제232조 근거로 자동차 및 부품 수입 포함 제도 도입 - 관세상대교 및 통관부다 조정

5월

2일	- 중국-일본 수교 관세 기준 제사
4일	- 미산 제철 생산에 100% 관세 부과 방침 발표
9일	- 미산 무역협약 발표 - 미국: 중국산 자동차 10만 대까지 25% → 10%로 인하, 철강 알루미늄 25% 관세 제사 - 영국: 미국산 농산물 및 시장 개방 수락
10-11일	- 미-중 제철에 대해 40% 관세
12일	- 파-중, 상호관세 대폭 인하 합의(90일간 유효) - EU 관세 145% → 30% - 18% 관세 120% → 10%
14일	- 중국산 800달러 미만 소용 관세 100% → 34%로 인하
23일	- 프랑스 대통령, 유럽 12국(미국) 대상 50% 관세 부과 예고 - 에틸렌 가스 25% 관세 부과 예고, 미산품 국내 내 생산 촉구
25일	- EU 대상 10% 관세 7월 8일까지 유예 발표
28일	- 미 연방 국제통상위원회, 무역부 행정부 상호관세(ECEPA) 시행 금지 명령
29일	- 미 연방 통상위원회, 상호관세 일시 적용 명령
30일	- 프랑스 대통령, 철강 알루미늄 제품 관세 25% → 50% 인상 발표

6월

3일	- 프랑스 대통령, 철강 알루미늄 관세 인상 예고(6월 시행)
4일	- 철강-알루미늄 세율 50% 관세 발표 - 중국 대상 무역협약(ECEPA) 적용



KIOI

Korea Institute of International Trade Negotiation

7월

2일	- 미-베트남 무역협정 발표 - 베트남산 수입품 관세 40% → 20% 단일관세 - 향신료 품목에 40% 고율 관세부과
7일	- 트럼프 대통령 공식서한 발송, 상호관세 유예 종료 시점 연기 - 한국-일본 등에 관세 서한 공개, 8월 1일부터 한국산 제품 전면 25% 관세 통보
30일	- 반기공 구리제품-구리 파생상품에 8월 1일부터 50% 관세부과 발표 - 브라질 제품에 8월 6일부터 40% 관세부과 발표 - 8월 29일부터 모든 국가 대상 소액 관세 제도 중단
31일	- 캐나다 제품에 8월 1일부터 35% 관세부과 발표 - 상호관세를 수렴한 발표(8월 7일 발표) - 중국은 JEPA에 따른 미-아미안 관세 20% → 국가별 관세 10% 적용 유지

8월

6일	- 트럼프 대통령 인도제 관세부과 가능성 시사 - 인도산 제품에 관세 25% 인상 발표(러시아 석유 제재)
7일	- 한국산 물품 상호관세 15% 발표
11일	- 중국 상호관세 유예 발표(11월 10일까지)
13일	- 트럼프 대통령 전략적 핵심 이익품 비축량 확보 명령
16일	- 철강-알루미늄 관세 적용 범위 확대(407개 품목, 8월 18일부터 적용) - 철강-알루미늄 할당 가치에 대한 관세 50%, 비할당 부분은 국가별 관세부과 - 미국에서 제련 및 주조된 경우 0%, 중국산 25%, 러시아산 200%
18일	-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 적용 범위 확대(407개 품목) 시행
21일	- 미국-EU 무역협정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 - 반도체, 이익률, 국제화 대한 관세를 15% 이하 보장 - 제232조 자동차-자동차 부품 관세 관련 공동성명 발표 ① (조건) EU가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 시행을 위한 입법안 공식 제출 ② MFN 15% 이상인 품목은 MFN 적용 ③ MFN 15% 미만인 품목은 15% 상호관세 부과(MFN 포함)
29일	- 美-韓 연방순회협수업권, J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위협 반결 ① 환율 대상은 상호관세 및 대역 관세(중국, 멕시코, 캐나다) ②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구리 등 제232조 품목관세는 무역협정법에 근거하였으므로, 이번 환율제 대상이 아닐 ③ 2025년 10월 13일까지 기존 조치의 효력 유지 ④ 트럼프 행정부, 대법원 상고 시사

9월

4일	- 미국-일본 협정 이행 행정명령 시행 - 항공우주, 이익률, 천연자원 등에 최혜국 대우 - 제232조 자동차-자동차 부품 관세 ① MFN 15% 이상인 품목은 MFN 적용 ② MFN 15% 미만인 품목은 15% 상호관세 부과(MFN 포함)
----	--



New Tariff Requirements for 2025 (국문번역본)

미국은 대통령 행정명령 및 회고장을 통해 '무역확장법, 제232조 및 '국제비상경제안정법(EPA)에 근거하여 기존 관세 책정에 새로운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하고 있음. (이하 '관세'로 지칭) 많은 다수의 현재 규정 및 기타 조항이 적용될 수 있으며, 세부 규정은 CBP.gov에서 확인)

자몽차, 자몽차부품 유효 2월 기준: 25% 제232조: 자몽차 및 자몽차 부품에 25% 관세부과 대상: 모든 국가(예: UK, USMCA) 기타 '명세 적용 제외' 규정 없음	구리 유효 1월 기준: 50% 제232조: 연이어 구리를 및 구리 제품 관세에 50% 관세부과. 대상: 모든 국가 기타 '명세 적용 제외' 규정 없음	철강 유효 4월 기준: 50% 제232조: 철강 및 철강 제품관세에 50% 부과 대상: 모든 국가(예: 영국) 20% 기타 '명세 적용 제외' 규정 없음	알루미늄 유효 4월 기준: 50% 제232조: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제품관세에 50% 관세부과 대상: 모든 국가 (EU-2019년 200%, 중국 20%) 기타 '명세 적용 제외' 규정 없음
브라질 유효 1월 기준: 40% 제232조: 모든 브라질 제품에 40% 관세부과 상호관세(11%)의 추가 적용	멕시코산 직물(면도) 유효 2월 기준: 25% 제232조: 모든 면도산 브라질 제품에 25% 관세부과 상호관세 추가 적용	캐나다 유효 1월 기준: 25%, 알루미늄: 10% 제232조: 모든 알루미늄 25% 관세부과 (EU-2019년 20%, 중국 20%) USMCA 기준을 충족한 원산지 품목은 제232조 관세 면제 USMCA 기준을 충족한 알루미늄 상호관세 35% 부과 기타 '명세 적용 제외' 규정 없음	멕시코 유효 7월 기준: 25% 알루미늄 10% 제232조: 모든 알루미늄 25% 관세부과 (EU-2019년 20%) USMCA 기준을 충족한 원산지 품목은 제232조 관세 면제 USMCA 기준을 충족한 알루미늄 상호관세 25% 부과 기타 '명세 적용 제외' 규정 없음
중국/홍콩 유효 4월 기준: 25% 제232조: 모든 중국에 25% 관세부과 상호관세 10% 추가 적용	상호관세 유효 7월 기준: 25% 제232조: 모든 국가에 25% 상호관세부과 대상: (EU-2019년 20%) 브라질에 관세는 적용 제외	유효 29일부터 모든 국가 대상 'de minimis' 무관세 혜택 폐지	

특정 관세와 중세 적용 제외

1. 제232조 자몽차/자몽차 부품 내성은 제232조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상호관세 제외(멕시코산 알루미늄 제외) 제외
 2a. 제232조 철강/알루미늄 대상 품목은 상호관세 제외(멕시코산 알루미늄 제외) 제외
 2b. 제232조 구리 대상 품목은 상호관세 제외(멕시코산 알루미늄 제외) 제외
 철강/알루미늄/구리가 포함된 제품은 제232조 관세를 모두 적용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5차) 일본산 수입 물품 관련 행정명령 제14345호 반영_09.10.

2025년 미국의 최신 관세부과 현황표										
구분	품목명	수입관세율 (%)					비고	기타 관세		
		최종관세율	원산지별 관세율	관세율	관세율	관세율		관세율	관세율	관세율
자동차	승용차(1.6리터 이하)	0%				0%				
	중형	25%		25%		0%				
	대형	25%				0%				
	특수 목적차	25%				0%				
중형 승용차	승용차(1.6리터 이하)					0%				
	중형		25%			0%				
	대형					0%				
	특수 목적차					0%				
중형 승용차	승용차(1.6리터 이하)					0%				
	중형		25%			0%				
	대형					0%				
	특수 목적차					0%				
중형 승용차	승용차(1.6리터 이하)					0%				
	중형		25%			0%				
	대형					0%				
	특수 목적차					0%				

* 기입된 내역은 기종별 변경된 관세내역을 반영하였으나, 2025.09.08 기준
 미국 관세율(10%)은 미국 관세율(10%) 기준, (1) 관세율(20%) 적용, 2025.09.08 기준
 2) 2025.09.08 기준, 10%이상의 관세는 10% 기준, 10% 10% 미만인 관세는 10% 관세에 부가(10% 포함)



사례를 통한 관세부과 구조 이해하기

<철강 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

- 해당 관세는 '무역확장법, 제232조 품목별 관세에 IEEPA 국가별 관세가 더해지면서, 관세 구조가 이중화돼 가장 복잡한 형태로 적용됨
 - (구조) 기존 관세 체계에 ① 제232조 품목별 관세와 ② IEEPA 상호관세가 더해지는 구조
 - (메시) 냉장고는 철강 파생상품 대상에 이어 알루미늄 파생상품 대상으로 확대된 품목(OB.18.)
 - ① 제232조 철강 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 = 철강 가치에 대한 관세 50%
 - ② IEEPA 국가별 관세 = (한국산) 비합량 가치에 대한 상호관세 15%
 - ∴ 총 관세 = (①+②) + 기존 관세(MFN or FTA 등)

○ 원산지(국가)별 파생상품 관세의 차등 부과

- 이중 구조를 지닌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는 원산지(국가)별로 차등 적용 중이며, 한국산은 USMCA를 충족한 품목 외에 가장 낮은 관세를 적용받고 있음

원산지	관세부과율		
1 USMCA 기준 충족	합량 가치에 대한 관세 50%만 부과		
2 한국산	합량 가치에 대한 관세 50% + 비합량 가치에 대한 상호관세 15%		
3 USMCA 기준 미충족	합량 가치에 대한 관세 50% + <table border="1" style="display: inline-table; vertical-align: middle;"> <tr> <td>[가] 비합량 가치에 대한 상호관세 35%</td> </tr> <tr> <td>[나] 비합량 가치에 대한 상호관세 25%</td> </tr> </table>	[가] 비합량 가치에 대한 상호관세 35%	[나] 비합량 가치에 대한 상호관세 25%
[가] 비합량 가치에 대한 상호관세 35%			
[나] 비합량 가치에 대한 상호관세 25%			
4 중국산	합량 관세 50% + 비합량 관세 10% + 따라 관세 20%		

○ 철강 파생상품에 이어 알루미늄 파생상품 대상으로 확대된 품목의 관세부과 예시

<한국산 냉장고의 품미 수출 체크리스트(메시)>

No.	항목	확인 방법 예시												
1	관세부과 증명	철강 파생상품에 이어 알루미늄 파생상품에 적용 확대(OB.18) - 대상 품목의 부과 항목 확인(합량 관세, 비합량 관세)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제232조 철강 파생상품</th> <th>제232조 알루미늄 파생상품</th> <th>상호관세</th> </tr> </thead> <tbody> <tr> <td>대상</td> <td>대상</td> <td>대상</td> </tr> <tr> <td>합량 가치의 50%</td> <td>합량 가치의 50%</td> <td>비합량 가치의 15%</td> </tr> </tbody> </table>	제232조 철강 파생상품	제232조 알루미늄 파생상품	상호관세	대상	대상	대상	합량 가치의 50%	합량 가치의 50%	비합량 가치의 15%			
제232조 철강 파생상품	제232조 알루미늄 파생상품	상호관세												
대상	대상	대상												
합량 가치의 50%	합량 가치의 50%	비합량 가치의 15%												
2	품목분류	일체형 냉장고의 품목분류는 HT5US 8418.10.00												
3	원산지 증명량과 제조지 확인	자사 물품의 철강 함유량은 40%, 알루미늄 함유량은 20%, 기타 40%												
4	원산지 확인	통 CBP 원산지서전심사 제도를 통한 원산지(한국) 확인												
5	관세를 확인과 총 관세 계산	상품 증가치: 1,000\$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구분</th> <th>관세부과(가액기준)</th> </tr> </thead> <tbody> <tr> <td>합량 증명</td> <td>400\$ × 50% = 200\$</td> </tr> <tr> <td>알루미늄 합량</td> <td>200\$ × 50% = 100\$</td> </tr> <tr> <td>비합량</td> <td>400\$ × 15% = 60\$</td> </tr> <tr> <td>기존 관세</td> <td>MFN or FTA 등</td> </tr> <tr> <td>총 관세</td> <td>360\$ + 기존 관세액</td> </tr> </tbody> </table>	구분	관세부과(가액기준)	합량 증명	400\$ × 50% = 200\$	알루미늄 합량	200\$ × 50% = 100\$	비합량	400\$ × 15% = 60\$	기존 관세	MFN or FTA 등	총 관세	360\$ + 기존 관세액
구분	관세부과(가액기준)													
합량 증명	400\$ × 50% = 200\$													
알루미늄 합량	200\$ × 50% = 100\$													
비합량	400\$ × 15% = 60\$													
기존 관세	MFN or FTA 등													
총 관세	360\$ + 기존 관세액													

자료: 관세청(관세심사제도), WTA-8462, 세관으로 문의까지 연구실



KIOI

Korea Institute of Foreign Trade

국가별 상품관세 및세 현황*

2025.09.01

연번	국명	관세율(%)		
		평균 ¹⁾	최저	
1	아프가니스탄	10	15	
2	알제리	30	30	
3	알골리	32	15	
4	알콜라테시	35	20	
5	볼리비아	10	15	
6	몽스니아헤르체고비나	30	30	
7	보츠와나	37	15	
8	브라질 ²⁾	50	10	
9	브루나이	25	25	
10	캄보디아	36	19	
11	카메룬	11	15	
12	차드	13	15	
13	코스타리카	10	15	
14	코보디부아르	21	15	
15	콩고민주공화국	11	15	
16	에콰도르	10	15	
17	에도그나	13	15	
18	EU	30	MFN 15% 이상 품목	MFN 적용
			MFN 15% 미만 품목	15%(MFN 포함)
19	프랑스령 케도	41	10	
20	피지	32	15	
21	가나	10	15	
22	기니아	38	15	
23	마다가스카르	10	15	
24	인도 ³⁾	26	25	
25	인도네시아	19	19	
26	이라크	30	35	
27	이스라엘	17	15	
28	일본	25	15	
29	요르단	20	15	
30	키르기스스탄	25	25	
31	라오스	40	40	
32	레소토	50	15	
33	리비아	30	30	
34	리히텐슈타인	37	15	
35	마다가스카르	47	15	



KIOI

Global Institute of Higher Education

36	말라위	17	15
37	말레이시아	24	19
38	모리셔스	40	15
39	몰도바	25	29
40	모잠비크	16	15
41	미얀마	40	40
42	나미비아	21	15
43	나우루	30	15
44	뉴질랜드	10	15
45	니카라과	16	18
46	나이지리아	14	15
47	북마케도니아	33	15
48	노르웨이	15	15
49	파키스탄	29	19
50	파푸아뉴기니	10	15
51	필리핀	20	10
52	세인트비어	35	35
53	남아프리카공화국	30	30
54	대한민국	25	15
55	스리랑카	30	20
56	스위스	31	39
57	시리아	41	41
58	대만	32	20
59	태국	36	19
60	트리니다드 토바고	10	15
61	튀니지	25	25
62	튀르키예	10	15
63	우간다	10	15
64	영국	10	10
65	바누아투	22	15
66	베네수엘라	15	15
67	베트남	40	20
68	잠비아	17	15
69	잠비아	18	15

1) 본 캠퍼스는 조양동 2기 행정부 청사(경인영양 제14228호)에 기반해 한 세기 부속 캠퍼스 조성(2025)
 2) 조양동 2기 행정부 청사 5층에 위치한 관내(02-27-2726)
 3) 전지영은 상주교수 10% 및 별도 행정명령 제14222호 제44 40% 추가(총 50% 부속
 4) 전지는 상주교수 20% 및 별도 행정명령 제14228호 제45 20% 추가(총 50% 부속



KIOI

Center for Korea's International Trade

1 '무역프관세' 개요

● 배경

- 지속적인 무역적자로 인한 국가 경제 안보의 위협 해소

● 목적

- 무역적자 시정, 한국산 무역 수출 차진, 해외 투자 유입 촉진, 미국 제조 산업 보호를 통한 미국 중심 보호주의 물살질서 확립

● 추가 관세 종류

-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품목별 관세, '국제비상경제관입, (KEPA)에 따른 국가별 관세

법령구분	내역	영수일자	일시	비고	
KEPA	마타이반	캐나다	행정명령 제14193호	02.01	마약 유입 차단, 환태시타 25%, 나머지 10%
			행정명령 제14231호	03.06	장물 10%
			행정명령 제14325호	07.31	USMCA 미충족 35%
		멕시코	행정명령 제14194호	02.01	마약 유입 차단, 환태시타 25%
			행정명령 제14232호	03.06	장물 10%
		중국	행정명령 제14195호	02.01	마약 유입 차단, 환태시타 10%
	행정명령 제14238호		03.03	하이(텐타닐) 관세 20%	
	국가별 관세 (상호관세)		행정명령 제14257호	04.02	환세계 10%, 환중국 34%, 국가별 관세 일괄 (한국 25%, EU 20% 등)
			행정명령 제14258호(중국)	04.08	환중국 34% → 84%
			행정명령 제14266호(중국)	04.09	환중국 84% → 125%
			행정명령 제14208호(중국)	05.12	환중국 125% → 10% (+24% 유치)
			행정명령 제14326호	07.31	상호관세를 적용 수정 (한국 25% → 15%)
행정명령 제14334호(중국)			08.11	환중국 관세 유예 기준 10% (+24%) 유지	
무역확장법 제232조	자동차-자동차 부품	포고령 제10908호	03.26	환세계 25%, (USMCA 충족, 미미국산 25%)	
		포고령 제10898호	02.10	환세계 25%	
	철강-철강 파생상품	포고령 제10947호	06.03	환세계 25% → 50%	
		포고령 제10895호	02.10	환세계 25%	
	알루미늄-알루미늄 파생상품	포고령 제10947호	06.03	환세계 25% → 50%	
		포고령 제10963호	07.30	환세계 50%	



❶ 최산 조치 주요내용(행정명령 14326호, CBP 지침 CSMS #05829726_(08.07))

- ✓ 국가별 상호관세 확정
- 총 69개 경제주체 대상 국가별 관세부과(부속서 1 한국, 일본, EU 등 포함)
- 부속서 1에 명시되지 않은 국가는 행정명령 14257호에 따른 10% 관세부과
- (MFN) 원EU 관세만 명시(15%, MFN 포함)
- ✓ 환적(Transshipment) 차단 조항 신설
- 환적을 통한 관세 회피 행위 적발 시, 기본관세에 40% 추가 관세부과
- 그 외 법에 따른 징벌적 벌금, 세금 및 기타 부과금 모두 적용(강경 또는 연재 불가)
- 6개월마다 우회 수출 의심 국가 및 시설 리스트 발표(정부 조달, 안보 및 상업 심사 등 반영)
- 현재 환적(Transshipment)의 정의와 적용기준에 대한 공식 발표 전(미국측 자의적 해석 가능)

환적(Transshipment)_CBP 홈페이지

- 원산지 상품은 NAFTA 역외에서 하여, 제적재, 보존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 또는 캐나다-멕시코-미국으로 운송하는데 필요한 작업 외의 공정 수행 시 원산지 지위를 상실한다.

❷ 의류용 세트 제품

- 미국산 소재를 사용하여 만든 수술 도구와 멕시코산 면 가운데 볼대가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운송되어 실은 및 포장 공정을 수행
- CBP는 해당 제품의 원산지를 '별근 및 포장' 공정이 수행된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판단

❸ 변동 가능성

- 국가별 개별 협상에 따른 관세 조정 가능

2. 제232조 품목별 추가 관세 근거 규정 및 지침

❶ 자동차-자동차 부품: 대통령 포고령 10925호 따른 품목

- (자동차) CBP 지침 CSMS #64624801_(04.02)
- (자동차 부품) CBP 지침 CSMS #64916652_(05.01)
- (USMCA) CBP 지침 CSMS #65649652_(07.16)

❷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 대통령 포고령 10947호에 따른 품목

- (철강 및 철강 파생상품) CBP 지침 CSMS #65236374_(06.03)
- (철강 파생상품) 품목 확대 적용 CBP 지침 CSMS #65936570_(08.15)
-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파생상품) CBP 지침 CSMS #65236645_(06.03)
- (알루미늄 파생상품) 품목 확대 적용 CBP 지침 CSMS #65936615_(08.15)

❸ 반제품 구리 및 파생상품: 대통령 포고령 10962호에 따른 품목

- (구리 및 구리 파생상품) CBP 지침 CSMS #65794272_(07.31)

❹ 그 외 제품

- (캐나다) 에너지 자원, CBP 지침 CSMS #64297449_(03.03)
- (캐나다) 칼륨(Potash), CBP 지침 CSMS #64336037_(03.06)
- (멕시코) 칼륨(Potash), CBP 지침 CSMS #64335789_(03.06)



3. IEEPA에 따른 상호관세 추가 여부

●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자동차-자동차 부품 관세부과 시**

- 통 법(제232조)에 따른 철강 가치에 대한 할당 관세와 상호관세는 모두 제외
- 동 법(제232조)에 따른 알루미늄 가치에 대한 할당 관세와 상호관세는 모두 제외
- 동 법(제232조)에 따른 구리 가치에 대한 할당 관세와 상호관세는 모두 제외

●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철강-알루미늄 관세부과 시**

- 철강과 알루미늄은 할당 가치에 따른 증액부과 가능하며, 상호관세는 제외
- 단, 파생상품의 경우 비할당 가치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반도체 구리 및 파생상품 관세부과 시**

- 할당 가치에 따른 품목관세 부과 및 비할당 가치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 그 외 제품

- (TIP) 보세 임시 수입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신고된 상품은 제외
- (USMCA) USMCA 기준 수출 시 제외, 미출국 시 부과
- (캐나다) USMCA 기준 미출국 에너지 자원(10%), 철물(10%) 부과
- (멕시코) USMCA 기준 미출국 철물(10%) 부과

● 환중국 상호관세 현황

- 행정명령 제14334호(08.11)에 따라 11월 10일까지 현행 유지(총 54% 중, 24% 유예)
- 행정명령 제14298호(05.12)에 따라 국가별 10%(+24% 유예중)+미약-이만 관세 20% 유지

4. '프린트 관세' 시사점

● IEEPA에 따른 추가 관세 변동 가능성

- 미국 헌법상의 대통령 권한 논란으로 인한 소송 진행 중
- 8월 29일, 美 연방순회법원들은 IEEPA에 근거한 관세정책은 위법하다고 판결
- 10월 13일까지 기존 조치의 효력 유지, 프린트 행정부 대법원 상고 시사

● 행정명령 제14326호 (07.31)의 제6조

- IEEPA에 따른 관세부과 관련 소송 패소 시의 대비책으로 보여짐
- (산설 조항) Sec 6. Severability(분리 가능성)

(원문) If any provision of this order, or the application of any provision of this order to any individual or circumstance, is held to be invalid, the remainder of this order and the application of its provisions to any other individuals or circumstances shall not be affected.

- (국문) 본 명령의 특정 조항이나 그 적용이 어떤 개인이나 상황에 대해 무효로 판단되더라도, **본 명령의 다른 조항이나 그 적용은 여전히 효력을 유지합니다.**
- 해당 조항(Severability)은 이전 상호관세 관련 발표(07.07)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으로 프린트 행정부가 관세정책에 대한 안정성 제고를 위해 삽입한 것으로 해석 가능



KIOI

Korea Institute of International Economic Research

<주요 무역 시기 및 정부> 미국 관세부과 현황 및지

1월

20일

- 프랑스 대통령 취임
- 2월 1일부터 멕시코-캐나다 대상 25% 관세 폐기
- 중국에 대한 관세부과 방안 검토 언급

2월

1일

- 불법 이민자-코타날 등 여객 유입을 이유로 캐나다 멕시코 대상 25% 관세부과 영향영향 서명
- 중국 대상 10% 추가 관세 부과 결정

3일

- 멕시코-캐나다 대상 관세 30일간 유예 발표

4일

- 중국에 대한 ISEPA 무역 이민 관세 10% 추가 발표

10일

- 3월 12일부터 철강-알루미늄 수입품에 25% 관세 폐기

13일

- 상호관세 부과 폐기

20일

- EU에 대한 25% 관세 발표 폐기

3월

4일

- 캐나다-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발표(캐나다 캐-지 관세 품목 10%)
- 중국 대상 20% 관세 적용(기존 10% + 무역 이민 ISEPA 10%)

6일

- 멕시코-캐나다산 자동차 관세 17개월 만에 종료

6일

- USMCA 기준 중국 제품에 대해 멕시코-캐나다산 수입품 관세 연재
- USMCA 기준 미중국 캐나다산 에너지 10%, 항공 10% 관세부과
- USMCA 기준 미중국 멕시코산 항공 10% 관세

9일

- 중국, 미국산 농-축산물 대상 2차 보복관세 부과

12일

- 전 세계 철강-알루미늄 수입품에 25% 관세(제232조) 발표

14일

- 캐나다, 미국산 철강-알루미늄 등에 208% 캐나다산에 20% 보복관세 부과
- WTO 분쟁 협의 요청

24일

- 4월 2일부터 제4수입관세 적용 수입품에 25% 관세부과 발표

28일

- 4월 3일부터 제232조 자동차 관세 25% 부과 폐기

4월

1일

- 제232조 근거로 반도체-제조 장비 및 부품품으로 수입액 안보 영향 조사 게시

2일

- 전 세계 수입품에 10% 기본관세(4월 5일부터) 발표
- 국가별 추가관세(4월 9일부터) '상호관세' 계획 발표, '백악의 날' 명명
- 국가별 관세 발표: 한국 25%, 중국 34%, EU 20%, 베트남 46%, 대만 32%, 일본 24%
- 미국산 부품 함유가 20% 이상인 경우 비미국산 부품(Contents)만 25% 적용, 미국산 부품 함유가 20% 미만인 경우 전체 가치에 대해 관세부과



KIOI

Center for International Trade & Investment

3월	- 제232조 근거로 외국산 자동차에 25% 관세 부과
4월	- 제232조 근거로 알루미늄 파생상품 25% 관세 부과 - 아시아산 알루미늄 제품에 200% 고율관세 적용 - 중국, 4월 10일부터 미국산 수입품에 34% 보복관세 부과 예고
8월	- 전 세계 대상 10% 관세 발표
8월	- 중국 보복관세 대응 차원에서 대중국 관세 94%로 수렴, 무역 관세 포함 누락 104% 관세 부과
9월	- 중국, 대미 관세 84%로 인상 - 프랑스 대통령, 중국 제외 국가 대상 상호관세 90일 유예 발표(7월 9일까지) - 대중국 관세 125%로 수렴, 무역 관세 포함 누락 관세 145%
12월	- 스마트폰-컴퓨터 반도체 제조 장비 등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
18일	- 제232조 근거로 오토 부품 및 파생상품 수입의 안보 영향 조사 착수
29일	- 제232조 근거로 자동차 및 부품 수입 조항 폐지도입 - 관세상세금 등 관세부과 조항

5월

2월	- 중국-유럽 무역 연세 기준 폐지
4월	- 해외 제작 영화에 100% 관세부과 방침 발표
8월	- 미-영 무역합의 발표 - 미국: 영국산 자동차 10만 대까지 25% → 30%로 인위,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폐지 - 영국: 미국산 농산물 등 시장 개방 수락
10-11월	- 미국 제4차 고위급 회담 개최
12월	- 미-중, 상호관세 대폭 인위 협의(90일간 유효) - 대중 관세: 145% → 30% - 대미 관세: 125% → 10%
14일	- 중국발 800달러 미만 소형 관세 120% → 54%로 인하
23일	- 프랑스 대통령, 6월 7일부터 EU 대상 50% 관세부과 예고 - 애플에 최소 25% 관세부과 예고, 아이폰 미국 내 생산 촉구
28일	- EU 대상 50% 관세 7월 9일부터 유예 발표
28일	- 미 연방 국제통상법원, 프랑스 행정부 상호관세(IEEPA) 시행 금지 판결
29일	- 미 연방 항소법원, 상호관세 일시 적용 명령
30일	- 프랑스 대통령, 철강-알루미늄 제품 관세 25% → 50% 인상 발표

6월

3일	- 프랑스 대통령, 철강-알루미늄 관세 인상 예고문 서명
4일	- 철강-알루미늄 제품 50% 관세 발표 - 중국 대상 무역이전 IEEPA 적용



7월

2일	- 미-베트남 무역협약 발표 - 베트남산 수입품 관세 46% → 20% 단일관세 - 관직 불응에 40% 고율 관세부과
7일	- 프랑스 대통령 공식서면 발송, 상호관세 유예 종료 시험 연기 - 한국 일본 통관 관세 제한 공제, 8월 1일부터 한국산 제품 전면 25% 관세 통보
30일	- 전기용 구리제품-구리 파생상품에 8월 1일부터 50% 관세부과 발표 - 브라질 제품에 8월 6일부터 40% 관세부과 발표 - 8월 29일부터 모든 국가 대상 소매 면세 제도 중단
31일	- 캐나다 제품에 8월 1일부터 35% 관세부과 발표 - 상호관세를 수렴한 발표(8월 7일 발표) - 중국은 IPEPA에 따른 미-미인 관세 20% + 국가별 관세 10% 적용 유지

8월

6일	- 프랑스 대통령 빈도끼 관세부과 가능성 시사 - 인도산 제품에 관세 25% 인상 발표(러시아 제품 제외)
7일	- 한국산 철물 상호관세 15% 발표
11일	- 중국 상호관세 유예 발표(11월 10일까지)
13일	- 프랑스 대통령 친척직 불성 이익률 비축량 확보 명령
15일	- 철강 알루미늄 관세 적용 범위 확대(407개 품목, 8월 18일부터 적용) - 철강 알루미늄 철강 가스에 대한 관세 50%, 비철합금 부분은 국가별 관세부과 - 미국에서 제련 및 후조된 경우 0%, 영국산 25%, 러시아산 200%
18일	- 철강 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 적용 범위 확대(407개 품목) 시행
21일	- 미국-중남 무역협정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 - 빈도끼, 이익률, 목재에 대한 관세를 15% 이하 보장 - 제232조 자동차-자동차 부품 관세 관련 공동성명 발표 ① (조건) EU의 미국산 품목에 대한 관세 인허 시행을 위한 입법안 공식 제출 ② MFN 15% 이상인 품목은 MFN 적용 ③ MFN 15% 미만인 품목은 15% 상호관세 부과(MFN 포함)
29일	- 美 연방순회법원, IP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위협 판결 ① 판결 대상은 상호관세 및 미약 관세(중국, 멕시코, 캐나다) ②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구리 등 제232조 품목관세는 무역협정법에 근거하였으므로, 미법 판결의 대상이 아님 ③ 2025년 10월 13일까지 기존 조치가 효력 유지 ④ 프랑스 행정부, 대법원 상고 시사

9월

4일	- 미국 일본 협정 이행 행정명령 시행 - 항공우주, 이익률, 전선차분 등에 제재국 대우 - 제232조 자동차-자동차 부품 관세 ① MFN 15% 이상인 품목은 MFN 적용 ② MFN 15% 미만인 품목은 15% 상호관세 부과(MFN 포함)
----	--



KIOI

Korea Institute of Foreign Trade Research

(6차) 301조 대중 무역제재 관세율 설명 및 가독성 제고 반영_09.12.

2025년 미국의 최신 관세부와 현황표									
구분	품목명	최종관세율					시행 여부		
		최종관세율	최종 관세율(2025년 1월 1일 이후)	관세율	관세율	관세율	관세율	관세율	관세율
대중 무역제재	철강 제품	25%				10%	관세율 25%	시행	관세율 25%
	알루미늄 제품	25%				10%			
	자동차	25%				10%			
	기계류	25%				10%			
	화학제품	25%				10%			
중대 무역제재	철강 제품	25%				10%	관세율 25%	시행	관세율 25%
	알루미늄 제품	25%				10%			
	자동차	25%				10%			
	기계류	25%				10%			
	화학제품	25%				10%			
중소 무역제재	철강 제품	25%				10%	관세율 25%	시행	관세율 25%
	알루미늄 제품	25%				10%			
	자동차	25%				10%			
	기계류	25%				10%			
	화학제품	25%				10%			

* 자료출처: 관세부, 관세율 변경(가산)일: 2025.09.01
 * 관세율: 관세율 25%, 관세율 10%, 관세율 0%, 관세율 5%, 관세율 15%, 관세율 20%, 관세율 25%, 관세율 30%, 관세율 35%, 관세율 40%, 관세율 45%, 관세율 50%, 관세율 55%, 관세율 60%, 관세율 65%, 관세율 70%, 관세율 75%, 관세율 80%, 관세율 85%, 관세율 90%, 관세율 95%, 관세율 100% 등
 * 관세율: 관세율 25%, 관세율 10%, 관세율 0%, 관세율 5%, 관세율 15%, 관세율 20%, 관세율 25%, 관세율 30%, 관세율 35%, 관세율 40%, 관세율 45%, 관세율 50%, 관세율 55%, 관세율 60%, 관세율 65%, 관세율 70%, 관세율 75%, 관세율 80%, 관세율 85%, 관세율 90%, 관세율 95%, 관세율 100% 등



사례를 통한 관세부과 구조 이해하기

<철강 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

- 해당 관세는 '무역확장법, 제232조 품목별 관세에 IEEPA 국가별 관세가 더해지면서, 관세 구조가 이혼하며 가장 복잡한 형태로 적용 중
 - (구조) 기존 관세 체계에 ① 제232조 품목별 관세와 ② IEEPA 상호관세가 더해지는 구조
 - (메시) 냄장고는 철강 파생상품 대상에 이어 알루미늄 파생상품 대상으로 확대된 품목(OB.18.)
 - ① 제232조 철강 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 = 합량 가치에 대한 관세 50%
 - ② IEEPA 국가별 관세 = (한국산) 비합량 가치에 대한 상호관세 15%
 - ∴ 총 관세 = (①+②) + 기존 관세(MFN or FTA 등)

○ 원산지(국가)별 파생상품 관세의 차등 부과

- 이종 구조를 지닌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는 원산지(국가)별로 차등 적용 중이며, 한국산은 USMCA를 충족한 품목 외에 가장 낮은 관세를 적용받고 있음

원산지	관세부과율		
1 USMCA 기준 충족	합량 가치에 대한 관세 50%만 부과		
2 한국산	합량 가치에 대한 관세 50% + 비합량 가치에 대한 상호관세 15%		
3 USMCA 기준 미충족	합량 가치에 대한 관세 50% + <table border="1" style="display: inline-table; vertical-align: middle;"> <tr> <td>[개] 비합량 가치에 대한 상호관세 35%</td> </tr> <tr> <td>[맥] 비합량 가치에 대한 상호관세 25%</td> </tr> </table>	[개] 비합량 가치에 대한 상호관세 35%	[맥] 비합량 가치에 대한 상호관세 25%
[개] 비합량 가치에 대한 상호관세 35%			
[맥] 비합량 가치에 대한 상호관세 25%			
4 중국산	합량 관세 50% + 비합량 관세 10% + 따라 관세 20%		

○ 철강 파생상품에 이어 알루미늄 파생상품 대상으로 확대된 품목의 관세부과 예시

<한국산 냄장고의 환미 수출 체크리스트(메시)>

No.	항목	확인 방법 예시												
1	관세부과 증명	철강 파생상품에 이어 알루미늄 파생상품에 적용 확대(OB.18) - 대상 품목의 부과 항목 확인(합량 관세, 비합량 관세)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제232조 철강 파생상품</th> <th>제232조 알루미늄 파생상품</th> <th>상호관세</th> </tr> </thead> <tbody> <tr> <td>대상</td> <td>대상</td> <td>대상</td> </tr> <tr> <td>합량 가치의 50%</td> <td>합량 가치의 50%</td> <td>비합량 가치의 15%</td> </tr> </tbody> </table>	제232조 철강 파생상품	제232조 알루미늄 파생상품	상호관세	대상	대상	대상	합량 가치의 50%	합량 가치의 50%	비합량 가치의 15%			
제232조 철강 파생상품	제232조 알루미늄 파생상품	상호관세												
대상	대상	대상												
합량 가치의 50%	합량 가치의 50%	비합량 가치의 15%												
2	품목분류	일체형 냄장고의 품목분류는 HT5US 8418.10.00												
3	원산지 증명량과 제조지 확인	자사 물품의 철강 함유량은 40%, 알루미늄 함유량은 20%, 기타 40%												
4	원산지 확인	통 CBP 원산지서전심사 제도를 통한 원산지(한국) 확인												
5	관세를 확인과 총 관세 계산	상품 증가치: 1,000\$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구분</th> <th>관세부과(가액기준)</th> </tr> </thead> <tbody> <tr> <td>합량 증명</td> <td>400\$ × 50% = 200\$</td> </tr> <tr> <td>알루미늄 합량</td> <td>200\$ × 50% = 100\$</td> </tr> <tr> <td>비합량</td> <td>400\$ × 15% = 60\$</td> </tr> <tr> <td>기존 관세</td> <td>MFN or FTA 등</td> </tr> <tr> <td>총 관세</td> <td>360\$ + 기존 관세액</td> </tr> </tbody> </table>	구분	관세부과(가액기준)	합량 증명	400\$ × 50% = 200\$	알루미늄 합량	200\$ × 50% = 100\$	비합량	400\$ × 15% = 60\$	기존 관세	MFN or FTA 등	총 관세	360\$ + 기존 관세액
구분	관세부과(가액기준)													
합량 증명	400\$ × 50% = 200\$													
알루미늄 합량	200\$ × 50% = 100\$													
비합량	400\$ × 15% = 60\$													
기존 관세	MFN or FTA 등													
총 관세	360\$ + 기존 관세액													

자료: 관세청(관세심사제도), FTA-40627, 세관으로 문의까지 연구실



KIOI

Korea Institute of Foreign Education

국가별 상호관세율표 검토*

2025.08.07

연번	국가	상호관세율(%)		
		평균 ¹⁾	최저	
1	아프가니스탄	10	15	
2	알제리	30	30	
3	알골리	32	15	
4	알공라테시	35	20	
5	볼리비아	10	15	
6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30	30	
7	보스니아	37	15	
8	브라질 ²⁾	50	10	
9	브루나이	25	25	
10	캄보디아	36	19	
11	카메룬	11	15	
12	차드	13	15	
13	코스타리카	10	15	
14	코프디부아르	21	15	
15	콩고민주공화국	11	15	
16	레소토	10	15	
17	레도기니	13	15	
18	EU	30	MFN 15% 이상 품목 MFN 15% 미만 품목	MFN 적용 15%(MFN 포함)
19	몰덴드 제도	41	10	
20	피지	32	15	
21	기니	10	15	
22	가이아나	38	15	
23	아이슬란드	10	15	
24	인도 ³⁾	26	25	
25	인도네시아	19	19	
26	이라크	30	35	
27	이스라엘	17	15	
28	일본	25	15	
29	요르단	20	15	
30	카자흐스탄	25	25	
31	라오스	40	40	
32	레소토	50	15	
33	리비아	30	30	
34	리히텐슈타인	37	15	
35	파라과스카로	47	15	



KIOI

Global Institute of Higher Education

36	말라위	17	15
37	말레이시아	24	19
38	모리셔스	40	15
39	몰도바	25	25
40	모잠비크	18	15
41	미얀마	40	40
42	나미비아	21	15
43	나우루	30	15
44	뉴질랜드	10	15
45	니카라과	18	18
46	니이지리아	14	15
47	북마케도니아	33	15
48	노르웨이	15	15
49	파키스탄	29	19
50	파푸아뉴기니	10	15
51	필리핀	20	19
52	세르비아	35	35
53	남아프리카공화국	30	30
54	대한민국	25	15
55	스리랑카	30	20
56	스위스	31	39
57	시리아	41	41
58	태완	32	20
59	태국	36	19
60	트리니다드 토바고	10	15
61	튀니지	25	25
62	튀르키예	10	15
63	우간다	10	15
64	영국	10	10
65	베누에루	22	15
66	베네수엘라	15	15
67	베트남	40	20
68	집비아	17	15
69	잠비아	18	15

1) 본 대학은 2019년 2학기부터 입학정원인 14,128명(2019년 기준)의 1/3 이하로 축소 운영할 예정입니다.
 2) 학생부 고지 사항에 관한 안내사항(2021-07-28)
 3) 입학원은 본교원에 10% 및 별도 정당한 사유가 40%가 추가되어 총 50% 증가
 4) 인도는 본교원에 10% 및 별도 정당한 사유가 20%가 추가되어 총 30% 증가



KIOI

Center for Korea's International Trade

1 '무역프관세' 개요

① 배경

- 지속적인 무역적자로 인한 국가 경제 안보의 위협 해소

② 목적

- 무역적자 시정, 중국산 무역 수출 차감, 해외 투자 유입 촉진, 미국 제조 산업 보호를 통한 미국 중심 보호주의 정상화 확보

③ 추가 관세 종류

-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품목별 관세, '국제비상경제관급'(IEEPA)에 따른 국가별 관세

법률구분	내역	번호/일	일시	비고	
IEEPA	미국-이반	캐나다	행정명령 제14193호	02.01	대약 유입 차단, 환태평양 25%, 나머지 10%
			행정명령 제14231호	03.06	장물 10%
			행정명령 제14325호	07.31	USMCA 적용 35%
		멕시코	행정명령 제14194호	02.01	대약 유입 차단, 환태평양 25%
			행정명령 제14232호	03.06	장물 10%
		중국	행정명령 제14195호	02.01	대약 유입 차단, 환태평양 10%
	행정명령 제14238호		03.03	하이(엔타일) 관세 20%	
	국가별 관세 (상호관세)		행정명령 제14257호	04.02	환세계 10%, 환중국 34%, 국가별 관세 일괄 (한국 25%, EU 20% 등)
			행정명령 제14258호(중국)	04.08	환중국 34% → 84%
			행정명령 제14266호(중국)	04.09	환중국 84% → 125%
			행정명령 제14208호(중국)	05.12	환중국 125% → 10% (+24% 일괄)
			행정명령 제14326호	07.31	상호관세를 적용 수정 (한국 25% → 15%)
			행정명령 제14334호(중국)	08.11	환중국 관세 일괄 기준 10% (+24%) 유지
무역확장법 제232조	자동차-자동차 부품	포고령 제10908호	03.26	환세계 25%, (USMCA 충족, 미미국산 25%)	
		포고령 제10898호	02.10	환세계 25%	
	철강-철강 파생상품	포고령 제10947호	06.03	환세계 25% → 50%	
		포고령 제10895호	02.10	환세계 25%	
	알루미늄-알루미늄 파생상품	포고령 제10947호	06.03	환세계 25% → 50%	
		포고령 제10963호	07.30	환세계 50%	



❶ 최상 조치 주요내용(행정명령 14326호, CBP 지침 CSMS #65829726_(08.07))

- ✓ 국가별 상호관세 확정
- 총 69개 경제주체 대상 국가별 관세부과(부속서 I 한국, 일본, EU 등 포함)
- 부속서 I에 명시되지 않은 국가는 행정명령 14257호에 따른 10% 관세부과
- (MFN) 환EU 관세만 명시(15%, MFN 포함)
- ✓ 환적(Transshipment) 차단 조항 신설
- 환적을 통한 관세 회피 행위 적발 시, 기본관세에 40% 추가 관세부과
- 그 외 법에 따른 징벌적 벌금, 세금 및 기타 부과금 모두 적용(강경 또는 연체 불가)
- 6개월마다 우회 수출 의심 국가 및 시설 리스트 발표(첨부 조달, 안보 및 산업 심사 등 반영)
- 현재 환적(Transshipment)의 정의와 적용기준에 대한 공식 발표 전(미국측 자의적 해석 가능)

환적(Transshipment)_CBP 홈페이지

- 원산지 상품은 NAFTA 역외에서 하여, 제적재, 보존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 또는 캐나다-멕시코-미국으로 운송하는데 필요한 작업 외의 공정 수행 시 원산지 지위를 상실한다.

❷ 역외론 세트 품목

- 미국산 소재를 사용하여 만든 수출 도구과 멕시코산 면 가운과 볼더가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운송되어 살균 및 포장 공정을 수행
- CBP는 해당 품목의 원산지를 '영국 및 프랑스' 공칭이 수행된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판단

❸ 변동 가능성

- 국가별 개별 협상에 따른 관세 조정 가능

2. 제3322, 국제별 추가 관세 근거 규정 및 지침

❶ 자동차-자동차 부품: 대통령 포고령 10925에 따른 품목

- (자동차) CBP 지침 CSMS #64624801_(04.02)
- (자동차 부품) CBP 지침 CSMS #64916652_(05.01)
- (USMCA) CBP 지침 CSMS #65649652_(07.16)

❷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 대통령 포고령 10947호에 따른 품목

- (철강 및 철강 파생상품) CBP 지침 CSMS #65236374_(06.03)
- (철강 파생상품) 품목 확대 적용 CBP 지침 CSMS #65936670_(08.15)
-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파생상품) CBP 지침 CSMS #65236645_(06.03)
- (알루미늄 파생상품) 품목 확대 적용 CBP 지침 CSMS #65936615_(08.15)

❸ 반제품 구리 및 파생상품: 대통령 포고령 10962호에 따른 품목

- (구리 및 구리 파생상품) CBP 지침 CSMS #65794272_(07.31)

❹ 그 외 제품

- (캐나다) 에너지 자원, CBP 지침 CSMS #64297449_(03.03)
- (캐나다) 칼륨(Potash), CBP 지침 CSMS #64336037_(03.06)
- (멕시코) 칼륨(Potash), CBP 지침 CSMS #64335789_(03.06)



3. IEEPA에 따른 상호관세 추가 여부

●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자동차·자동차 부품 관세부과 시**

- 통 법(제232조)에 따른 할당 가치에 대한 할당 관세와 상호관세는 모두 제외
- 동 법(제232조)에 따른 일부미능 가치에 대한 할당 관세와 상호관세는 모두 제외
- 동 법(제232조)에 따른 구리 가치에 대한 할당 관세와 상호관세는 모두 제외

●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철강·일부미능 관세부과 시**

- 철강과 일부미능은 할당 가치에 따른 증액부과 가능하며, 상호관세는 제외
- 단, 파생상품의 경우 비할당 가치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반도체 구리 및 파생상품 관세부과 시**

- 할당 가치에 따른 품목관세 부과 및 비할당 가치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 그 외 제품

- (TIP) 보세 임시 수입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신고된 상품은 제외
- (USMCA) USMCA 기준 수출 시 제외, 미수출 시 부과
- (캐나다) USMCA 기준 미수출 에너지 자원(10%), 철물(10%) 부과
- (멕시코) USMCA 기준 미수출 철물(10%) 부과

● 환중국 상호관세 현황

- 행정명령 제14334호(08.11)에 따라 11월 10일까지 현행 유지(총 54% 중, 24% 유예)
- 행정명령 제14298호(05.12)에 따라 국가별 10%(+24% 유예중)+미약-이민 관세 20% 유지

4. '프린트 관세 시사점

● IEEPA에 따른 추가 관세 변동 가능성

- 미국 헌법상의 대통령 권한 논란으로 인한 소송 진행 중
- 8월 29일, 美 연방순회법원들은 IEEPA에 근거한 관세정책은 위법하다고 판결
- 10월 13일까지 기존 조치의 효력 유지, 프린트 행정부 대법원 상고 시사

● 행정명령 제14326호 (07.31)의 제6조

- IEEPA에 따른 관세부과 관련 소송 패소 시의 대비책으로 보여짐
- (산설 조항) Sec 6. Severability(분리 가능성)

(원문) If any provision of this order, or the application of any provision of this order to any individual or circumstance, is held to be invalid, the remainder of this order and the application of its provisions to any other individuals or circumstances shall not be affected.

- (국문) 본 명령의 특정 조항이나 그 적용이 어떤 개인이나 상황에 대해 무효로 판단되더라도, **본 명령의 다른 조항이나 그 적용은 여전히 효력을 유지합니다.**
- 해당 조항(Severability)은 이전 상호관세 관련 발표(07.07)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으로 프린트 행정부가 관세정책에 대한 안정성 제고를 위해 삽입한 것으로 해석 가능



KIOI

Korea Institute of International Economic Research

<주요 무역 기법 전망> 미국 관세부와 관세 일치

1월

- 30일 - 프랑스 대통령 취임
- 2월 1일부터 멕시코-캐나다 대상 25% 관세 폐지
- 중국에 대한 관세부과 방안 검토 완료

2월

- 1일 - 불법 이민자-팬데믹 등 대역 유행병 이유로 캐나다-멕시코 대상 25% 관세부과 행정명령 시행
- 중국 대상 10% 추가 관세 부과 결정
- 3일 - 멕시코-캐나다 대상 관세 30일간 유예 발표
- 4일 - 중국에 대한 (EEPA 대역 이민 관세 10% 추가 발표
- 10일 - 3월 12일부터 철강-알루미늄 수입품에 25% 관세 폐지
- 13일 - 상호관세 부과 폐지
- 20일 - EU에 대한 25% 관세 발표 폐지

3월

- 4일 - 캐나다-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발표(캐나다 에너지 관련 품목 10%)
- 중국 대상 20% 관세 적용(기존 10% + 대역 이민 (EEPA 10%)
- 5일 - 멕시코-캐나다산 자동차 관세 1개월 연체 발표
- 8일 - USMCA 기준 농축 품목에 대해 멕시코-캐나다산 수입품 관세 면제
- USMCA 기준 미중국 캐나다산 에너지 10%, 철물 10% 관세부과
- USMCA 기준 미중국 멕시코산 철물 10% 관세
- 9일 - 중국, 미국산 농축산물 대상 2차 보복관세 부과
- 12일 - 전 세계 철강-알루미늄 수입품에 25% 관세(제232조) 발표
- 14일 - 캐나다, 미국산 철강-알루미늄 등에 298%의 제232조의 규율 보복관세 부과
- WTO 분쟁 협의 요청
- 24일 - 4월 2일부터 배타수출권산 석유 수입국에 25% 관세부과 발표
- 26일 - 4월 3일부터 제232조 시종자 관세 25% 부과 폐지

4월

- 1일 - 제232조 근거로 반도체 제조 장비 및 의약품 관세 수입의 인위 영향 조사 개시
- 2일 - 전 세계 수입품에 10% 기본관세(4월 9일부터) 발표
- 국가별 추가관세(4월 9일부터) '상호관세' 계획 발표, '책임의 날' 선언
- 국가별 관세 발표: 한국 25%, 중국 34%, EU 20%, 베트남 46%, 대만 32%, 일본 24%
- 미국산 부품 함량이 20% 이상인 경우 미미국산 부품(Contents)만 25% 적용, 미국산 부품 함량이 20% 미만인 경우 전체 가치에 대해 관세부과



KIOI

Center for Korea's International Trade

3일	- 제232조 근거로 미국산 자동차에 25% 관세 부과
4일	- 제232조 근거로 알루미늄 파생상품 25% 관세 부과 - 아시아산 알루미늄 제품에 200% 고율관세 적용 - 중국, 4월 10일부터 미국산 수입품에 34% 보복관세 부과 예고
5일	- 전 세계 대상 10% 관세 발표
8일	- 중국 보복관세 대응 차원에서 대중국 관세 84%로 수정, 대미 관세 포함 누적 104% 관세 부과
9일	- 중국, 대미 관세 84%로 인상 - 트럼프 대통령, 중국 제4 국가 대상 상호관세 90일 유예 발표(7월 9일까지) - 대중국 관세 125%로 수정, 대미 관세 포함 누적 관세 145%
12일	- 스마트폰-컴퓨터 반도체 제조업체 등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
16일	- 제232조 근거로 중요 광물 및 파생상품 수입의 안보 영향 조사 착수
29일	- 제232조 근거로 자동차 및 부품 수입 조정 제도 도입 - 관세상대국 등 통관부과 조정

5월

2일	- 중국-몽골 수역 관세 기준 폐지
4일	- 해외 제작 영화에 100% 관세부과 방침 발표
9일	- 미-영 무역협약 발표 - 미국 영국산 자동차 10만 대까지 25% → 10%로 인하,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폐지 - 영국-미국산 농산물 등 시장 개방 수용
10-11일	- 미-중 제네바 고위급 회담 개최
12일	- 미-중, 상호관세 대폭 인하 합의(90일간 유효) - 대중 관세: 145% → 30% - 대미 관세: 125% → 30%
14일	- 중국발 800달러 미만 소모 관세 120% → 54%로 인하
23일	- 트럼프 대통령, 6월 1일부터 EU 대상 50% 관세부과 예고 - 애플에 최소 25% 관세부과 예고, 아이폰 미국 내 생산 촉구
28일	- EU 대상 50% 관세 7월 9일까지 유예 발표
28일	- 미 연방 국제통상법원, 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EEPA) 시행 금지 판결
29일	- 미 연방 항소법원, 상호관세 일시 복원 명령
30일	- 트럼프 대통령, 철강-알루미늄 제품 관세 25% → 50% 인상 발표

6월

3일	- 트럼프 대통령, 철강-알루미늄 관세 인상 예고문 시행
4일	- 철강-알루미늄 제품 50% 관세 발표 - 중국 대상 미약시인 IEEPA 적용



KIOI

Korea Institute of International Economic Research

7월

2일	-미 베트남 무역협약 발효 -베트남산 수입품 관세 40% → 20% 단일관세 -원격 물품에 40% 고율 관세부과
7일	-프랑스 대통령 공식서한 발송, 상호관세 유예 종료 시험 연기 -한국-일본 등에 관세 서한 공개, 8월 1일부터 한국산 제품 전면 25% 관세 동보
30일	-인가고 구리제품-구리 화생상품에 8월 1일부터 50% 관세부과 발표 -브라질 제품비 8월 6일부터 40% 관세부과 발표 -8월 29일부터 모든 국가 대상 소액 면세 제도 중단
31일	-캐나다 제품비 8월 1일부터 35% 관세부과 발표 -상호관세를 수정한 발표(8월 7일 발표) -중국인 RCEPA에 따른 아라미인 관세 20% + 국가별 관세 10% 적용 유지

8월

8일	-프랑스 대통령 반도체 관세부과 가능성 시사 -인도산 제품에 관세 25% 인상 발표(러시아 식유 제외)
7일	-한국산 물품 상호관세 15% 발표
11일	-중국 상호관세 유예 발표(11월 10일까지)
13일	-프랑스 대통령 전략적 핵심 이익을 비축할 확보 명령
15일	-철강 알루미늄 관세 적용 범위 확대(407개 품목, 8월 15일부터 적용) -철강 알루미늄 합금 가치에 대한 관세 50%, 비합금 부분은 국가별 관세부과 -미국에서 재현 및 추조한 경우 0%, 영국산 25%, 러시아산 200%
18일	-철강/알루미늄 광생상품 관세 적용 범위 확대(407개 품목) 시행
21일	-미국 EU 무역협상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 -반도체, 의약품, 목재에 대한 관세를 15% 이하 보장 -제232조 자동차-자동차 부품 관세 관련 공동성명 발표 ① (조건) EU의 미국산 물품에 대한 관세 인하 시행을 위한 입법안 공식 제출 ② MFN 15% 이상인 품목은 MFN 적용 ③ MFN 15% 미만인 품목은 15% 상호관세 부과(MFN 포함)
29일	-美 연방순회법원, RC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위반 판결 ① 판결 대상은 상호관세 및 타락 관세(중국, 멕시코, 캐나다) ②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구리 등 제232조 품목관세는 무역협약법에 근거하였으므로, 이번 판결의 대상이 아님 ③ 2025년 10월 13일까지 기존 조치가 효력 유지 ④ 프랑스 영향부, 대법원 상고 시사

9월

4일	-미국-일본 협정 이행 행정명령 시행 -항공우주, 의약품, 전자기품 등에 피해국 대우 -제232조 자동차-자동차 부품 관세 ① MFN 15% 이상인 품목은 MFN 적용 ② MFN 15% 미만인 품목은 15% 상호관세 부과(MFN 포함)
-----------	---



(7차) 일본산 자동차 수입 관세율 15% 반영_09.16.

2025년 미국의 최신 관세부과 현황표*											
구분	원산지	도입원산지별 관세						다른 관세			
		제33도 동유럽 관세		EU24 국가별 관세		관세부과율	부과 구분	통관세 ¹⁾ 세율기준	FTA 등	관세율 및 비고	
		자동차 자동차부속 ²⁾	철강, 알루미늄-구리 및 석유제품	대부분	일부국가						
자동차 자동차부속	한국 EU/일본	15%				15%	통관세 관세	25-100% 상하	FTA 없음	관세율 및 비고	
	중국	25%		20%		25%					
	대만	20%				20%					
	USMCA 중국	15-중형차 전기 차량(15%) 15% 이하(전기차 제외) 20% 20% 또는 0%				15%					관세율 관세
	USMCA 자동차	20%				20%					
철강 자동차부속	한국 EU/일본					15%	통관세 관세 의양 기준	25%	FTA 없음	관세율 및 비고	
	중국			20%		관세율 관세(20%)					
	대만					15%					
	USMCA 중국					15%					통관세 관세
	USMCA 자동차					15%					
철강 자동차부속 기타 자동차부속	한국 EU/일본				15%	15% 관세율 관세(20% 추가) 20% 또는 25% 추가	통관세 관세 의양 기준 또는 의양 관세 (의양 기준)	25%	FTA 없음	관세율 및 비고	
	중국			20%	15% (14% 관세율)						
	대만				20%						
	USMCA 중국				15-43 20%						통관세 관세
	USMCA 자동차				15-43 20%						
기타 자동차	한국 EU/일본				15%	15%	통관세 관세	25% ~ 10%	FTA 없음	관세율 및 비고	
	중국			20%	15% (12% 관세율)						
	대만				20%						
	USMCA 중국				0%						통관세 관세
	USMCA 자동차				15-43 20%						15-43 20% (15-43 15%, 관세 15%)
				15-43 20%	15-43 20% (15-43 15%, 관세 15%)						

* 7차 관세율 내역을 기초로 변경된 상호관세율 반영(작성일자: 2025.09.16.)
 1) 한국 EU/일본은 15%로 합치되나 일본 수입 할 때는 15%로, 단, 현재 일본은 15% 적용(한국 EU 25%, 2025.09.16. 기준)
 2) 미국산 '중형차, 제33도제 크기'에 중국산 자동차에 대해 25%에서 100%의 관세율 부과되고 있음
 - 적용 대상: 배터리의 부속(25%),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25%), 광물 자원(25%), 연구차(25%), 안드레(50%), 태양전지(50%), 전기차(80%) 등
 또 EU 자동차의 MFN 15%이었던 관세율 MFN 적용, MFN 15% 의양관 관세율 15% 상호관계 부과(MFN 포함)



상세를 통한 관세부과 구조 이해하기

> 합당·일부미능 파생상품 관세 <

- 해당 관세는 '무역확장법, 제232조 품목별 관세에 IEEPA 국가별 관세가 더해지면서, 관세 구조가 이중화돼 가장 복잡한 형태로 적용 중
 - (구조) 기존 관세 체계에 ① 제232조 품목별 관세와 ② IEEPA 상호관세가 더해지는 구조
 - (예시) 냉장고는 철강 파생상품 대상에 이어 알루미늄 파생상품 대상으로 확대된 품목(08.18.)
 - ① 제232조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 = 합당 가치에 대한 관세 50%
 - ② IEEPA 국가별 관세 = (한국산) 비합당 가치에 대한 상호관세 15%
 - ∴ 총 관세 = ①+② + 기존 관세(MFN or FTA 등)

○ 원산지(국가)별 파생상품 관세의 차등 부과

- 이중 구조를 지닌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는 원산지(국가)별로 차등 적용 중이며, 한국산은 USMCA를 충족한 품목 외에 가장 낮은 관세를 적용받고 있음

원산지	관세부과율
1 USMCA 기준 충족	합당 가치에 대한 관세 50%만 부과
2 한국산	합당 가치에 대한 관세 50% + 비합당 가치에 대한 상호관세 15%
3 USMCA 기준 미충족	합당 가치에 대한 관세 50% + [해] 비합당 가치에 대한 상호관세 35% [맥] 비합당 가치에 대한 상호관세 25%
4 중국산	합당 관세 50% + 비합당 관세 10% + 미약 관세 20%

○ 철강 파생상품에 이어 알루미늄 파생상품 대상으로 확대된 품목의 관세부과 예시

<한국산 냉장고의 해외 수출 체크리스트(예시)>

순	항목	해기 (해당 예시)												
1	관세부과 품명	철강 파생상품에 이어 알루미늄 파생상품에 적용 확대(08.18) - 대상 품목의 부과 품목 확인(합당 관세, 비합당 관세)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제232조 철강 파생상품</th> <th>제232조 알루미늄 파생상품</th> <th>상호관세</th> </tr> </thead> <tbody> <tr> <td>대상</td> <td>대상</td> <td>대상</td> </tr> <tr> <td>합당 가치의 50%</td> <td>합당 가치의 50%</td> <td>비합당 가치의 15%</td> </tr> </tbody> </table>	제232조 철강 파생상품	제232조 알루미늄 파생상품	상호관세	대상	대상	대상	합당 가치의 50%	합당 가치의 50%	비합당 가치의 15%			
제232조 철강 파생상품	제232조 알루미늄 파생상품	상호관세												
대상	대상	대상												
합당 가치의 50%	합당 가치의 50%	비합당 가치의 15%												
2	품목분류	일체형 냉장고의 품목분류는 HTSUS 8418.10.00												
3	원산지 인증량과 체조시 확인	자사 품목의 평균 함유량은 40%, 알루미늄 함유량은 20%, 기타 40%												
4	원산지 확인	美 CBP 원산지사천심사 제도를 통한 원산지(한국) 확인												
5	관세율 확인과 총 관세 계산	상품 총가치: 1,000\$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구분</th> <th>관세부과(가치기준)</th> </tr> </thead> <tbody> <tr> <td>합당 상당</td> <td>400\$ × 50% = 200\$</td> </tr> <tr> <td>알루미늄 상당</td> <td>200\$ × 50% = 100\$</td> </tr> <tr> <td>비합당</td> <td>400\$ × 15% = 60\$</td> </tr> <tr> <td>기존 관세</td> <td>MFN or FTA 등</td> </tr> <tr> <td>총 관세</td> <td>360\$ + 기존 관세액</td> </tr> </tbody> </table>	구분	관세부과(가치기준)	합당 상당	400\$ × 50% = 200\$	알루미늄 상당	200\$ × 50% = 100\$	비합당	400\$ × 15% = 60\$	기존 관세	MFN or FTA 등	총 관세	360\$ + 기존 관세액
구분	관세부과(가치기준)													
합당 상당	400\$ × 50% = 200\$													
알루미늄 상당	200\$ × 50% = 100\$													
비합당	400\$ × 15% = 60\$													
기존 관세	MFN or FTA 등													
총 관세	360\$ + 기존 관세액													

자료: 한국원산지정보원, FTA-DB, IEEPA, 제232조 품목별 관세부과



KIOI

Center Institute of Foreign Information

국가별 상호관계 필요 현황*

(2025.06.07)

번	국가	관계율 (%)		
		동반*	반반	
1	에르가니스탄	10	15	
2	말레이	30	30	
3	방글라	32	15	
4	방글라데시	35	20	
5	볼리비아	10	15	
6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30	30	
7	보츠와나	37	15	
8	브라질 ⁵⁾	50	10	
9	브루나이	25	25	
10	캄보디아	36	19	
11	카메룬	11	15	
12	차드	13	15	
13	코스타리카	10	15	
14	코모도루어르	21	15	
15	콩고민주공화국	11	15	
16	에콰도르	10	15	
17	케냐	13	15	
18	태남	30	MFN 15% 이상 품목 MFN 15% 미만 품목	MFN 적용 15%(MFN 포함)
19	포클랜드 제도	41	10	
20	피지	32	15	
21	가나	10	15	
22	가이아나	36	15	
23	아이슬란드	10	15	
24	인도 ⁶⁾	26	25	
25	인도네시아	19	19	
26	이라크	30	35	
27	이스라엘	17	15	
28	일본	25	15	
29	요르단	20	15	
30	카자흐스탄	25	25	
31	라오스	40	40	
32	레소토	50	15	
33	리비아	30	30	
34	리히텐슈타인	37	15	
35	마다가스카르	47	15	



KIOI

Center for International Education

36	말라위	17	15
37	말레이시아	24	19
38	모리셔스	40	15
39	몰도바	25	25
40	모잠비크	16	15
41	미얀마	40	40
42	나미비아	21	15
43	나우루	30	15
44	뉴질랜드	10	15
45	니카라과	18	18
46	나이저리아	14	15
47	북마케도니아	33	15
48	노르웨이	15	15
49	피키스탄	29	19
50	파푸아뉴기니	10	15
51	필리핀	20	19
52	세르비아	35	35
53	남아프리카공화국	30	30
54	대한민국	25	15
55	스리랑카	30	20
56	스위스	31	39
57	시리아	41	41
58	대만	32	20
59	태국	36	19
60	트리니다드 토바고	10	15
61	튀니지	25	25
62	튀르키예	10	15
63	우간다	10	15
64	영국	10	10
65	베누에루	22	15
66	베네수엘라	15	15
67	베트남	40	20
68	잠비아	17	15
69	짐바브웨	18	15

1년 전후로는 지원금 2억 원정액 (영수증명서 4228800에 기재된 한 세제 부과 증명서 참조)을
 2) 지원금 2억 원정액 공식 시한에 16년 (연세 007-07-00)
 3) 국가유공자 유족에게 20%의 별도 정액명령 4243220에 40%가 추가되어 총 50% 부과
 4) 연세는 유족에게 20%의 별도 정액명령 4243220에 40%가 추가되어 총 50% 부과



1 '트럼프 관세' 개요

○ 배경

- 지속적인 무역적자로 인한 국가 경제 안보의 위협 해소

○ 목적

- 무역적자 시정, 중국산 우회 수출 차단, 해외 투자 유입 촉진, 미국 제조 산업 보호를 통한 미국 중심 보호주의 동향질서 확립

○ 추가 관세 종류

-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품목별 관세, '국제비상경제조법, (IEEPA)에 따른 국가별 관세

법률근거	대상	발령일자	일시	비고	
IEEPA	미국·미반	캐나다	행정명령 제14193호	02.01	미약 유입 차단, 환태나나 25%, 에너지 30%
			행정명령 제14231호	03.06	감율 10%
			행정명령 제14325호	07.31	USMCA 비종류 35%
		멕시코	행정명령 제14194호	02.01	미약 유입 차단, 환멕시코 25%
			행정명령 제14232호	03.06	감율 10%
			행정명령 제14195호	02.01	미약 유입 차단, 환중국 10%
	국가별 관세 (상호관세)	중국	행정명령 제14228호	03.03	미약(벤타닐) 관세 30%
			행정명령 제14257호	04.02	환세계 10%, 환중국 34%, 국가별 관세 발표 (한국 25%, EU 20% 등)
			행정명령 제14259호(중국)	04.08	환중국 34% → 84%
			행정명령 제14266호(중국)	04.09	환중국 84% → 125%
			행정명령 제14298호(중국)	05.12	환중국 125% → 10% (+24% 무역)
			행정명령 제14326호	07.31	상호관세를 최종 수정 (대한국 25% → 15%)
무역확장법 제232조	자동차·자동차 부품	포고령 제10908호	03.26	환세계 25%, (USMCA 종류, 비미국산 25%)	
	철강·철강 파생상품	포고령 제10896호	02.10	환세계 25%	
		포고령 제10947호	06.03	환세계 25% → 50%	
	알루미늄·알루미늄 파생상품	포고령 제10895호	02.10	환세계 25%	
		포고령 제10947호	06.03	환세계 25% → 50%	
	반도체 구리 및 파생상품	포고령 제10962호	07.30	환세계 50%	



● 최신 조치 주요내용(행정명령 14326호, CBP 지침 CSMS #65829726_(08.07))

✓ 국가별 상호관세 확정

- 총 69개 경제주체 대상 국가별 관세부과(부속서 1, 한국, 일본, EU 등 포함)
- 부속서 1에 명시되지 않은 국가는 행정명령 14257호에 따른 10% 관세부과
- (MFN) **對EU 관세만 명시(15%, MFN 포함)**

✓ 환적(Transshipment) 차단 조항 신설

- 환적을 통한 관세 회피 행위 적발 시, 기본관세에 40% 추가 관세부과
- 그 외 법에 따른 징벌적 벌금, 세금 및 기타 부과금 모두 적용(감경 또는 면제 불가)
- 6개월마다 무회 수출 의심 국가 및 사업 리스트 발표(정부 조달, 안보 및 상업 심사 등 반영)
- 현재 환적(Transshipment)의 정의와 적용기준에 대한 공식 발표 권(미국측 자의적 해석 가능)

환적(Transshipment)_CBP 홈페이지

- 원산지 상품은 NAFTA 역외에서 하여, 재적재, 보존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 또는 캐나다/멕시코/미국으로 운송하는데 필요한 작업 외의 공정 수행 시 원산지 지위를 상실한다.

● 의료용 세트 제품

- 미국산 소재를 사용하여 만든 수술 도구와 멕시코산 면 거문과 봉대가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운송되어 상근 및 포장 공정을 수행
- CBP는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평균 및 포장' 공정이 수행된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판단

● 변동 가능성

- 국가별 개별 입상에 따른 관세 조장 가능

2. 제232조 품목별 추가 관세 근거 규정 및 지침

● 자동차-자동차 부품: 대통령 포고령 10925에 따른 품목

- (자동차) CBP 지침 CSMS #64624801_(04.02)
- (자동차 부품) CBP 지침 CSMS #64916652_(05.01)
- (USMCA) CBP 지침 CSMS #65649652_(07.16)

●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 대통령 포고령 10947호에 따른 품목

- (철강 및 철강 파생상품) CBP 지침 CSMS #65236374_(06.03)
- (철강 파생상품) 품목 확대 적용 CBP 지침 CSMS #65936570_(08.15)
-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파생상품) CBP 지침 CSMS #65236645_(06.03)
- (알루미늄 파생상품) 품목 확대 적용 CBP 지침 CSMS #65936615_(08.15)

● 반제품 구리 및 파생상품: 대통령 포고령 10962호에 따른 품목

- (구리 및 구리 파생상품) CBP 지침 CSMS #65794272_(07.31)

● 그 외 제품

- (캐나다) 에너지 자원, CBP 지침 CSMS #64297449_(03.03)
- (캐나다) 칼륨(Potash), CBP 지침 CSMS #64336037_(03.06)
- (멕시코) 칼륨(Potash), CBP 지침 CSMS #64335789_(03.06)



3. IEEPA에 따른 상호관세 추가 여부

①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자동차·자동차 부품 관세부과 시

- 동 법(제232조)에 따른 철강 가치에 대한 할당 관세와 상호관세는 모두 제외
- 동 법(제232조)에 따른 알루미늄 가치에 대한 할당 관세와 상호관세는 모두 제외
- 동 법(제232조)에 따른 구리 가치에 대한 할당 관세와 상호관세는 모두 제외

②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철강·알루미늄 관세부과 시

- 철강과 알루미늄은 할당 가치에 따른 중복부과 가능하며, 상호관세는 제외
- 단, 파생상품의 경우 비할당 가치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③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반도체 구리 및 파생상품 관세부과 시

- 할당 가치에 따른 중복관세 부과 및 비할당 가치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④ 그 외 제품

- (TIP) 보세 및 시 수입 절차에 따라 적합하게 신고된 상품은 제외
- (USMCA) USMCA 기준 충족 시 제외, 미충족 시 부과
- (캐나다) USMCA 기준 미충족 에너지 자원(10%), 알루미늄(10%) 부과
- (멕시코) USMCA 기준 미충족 알루미늄(10%) 부과

⑤ 한중국 상호관세 현행

- 행정명령 제14334호(08.11)에 따라 11월 10일까지 현행 유지(중 54% 중, 24% 유예)
- 행정명령 제14298호(05.12)에 따라 국가별 10%(+24% 유예중)+아약이민 관세 20% 유지

4. '트럼프 관세' 시사점

① IEEPA에 따른 추가 관세 변동 가능성

- 미국 헌법상의 대통령 권한 논란으로 위헌 소송 진행 중
- 8월 29일, 美 연방순회합소법원은 IEEPA에 근거한 관세정책은 위법하다고 판결함
- 10월 13일까지 기존 조치의 효력 유지, 트럼프 행정부 대법원 상고 시사

② 행정명령 제14326호 (07.31)의 제6조

- IEEPA에 따른 관세부과 관련 소송 패소 시의 대비책으로 보여짐
- (산할 조항) Sec 6. Severability(분리 가능성)

(원문) If any provision of this order, or the application of any provision of this order to any individual or circumstance, is held to be invalid, the remainder of this order and the application of its provisions to any other individuals or circumstances shall not be affected.

- (국문) 본 명령의 특정 조항이나 그 적용이 어떤 개인이나 상황에 대해 무효로 판단되더라도, **본 명령의 다른 조항이나 그 적용은 여전히 효력을 유지합니다.**
- 해당 조항(Severability)은 이전 상호관세 관련 발표(07.07)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정책에 대한 안정성 재고를 위해 삽입한 것으로 해석 가능



KIOI

Korea Institute of International Law & Economics

< 2019 2기 월간보 > 미국 관세부과 현황 일지

1월

30일	- 트럼프 대통령 취임 - 2월 1일부터 멕시코-캐나다 대상 25% 관세 예고 - 중국에 대한 관세부과 방안 검토 언급
-----	--

2월

1일	- 불법 이민자-범죄자 등 미국 출입을 이유로 캐나다-멕시코 대상 25% 관세부과 행정명령 시행 - 중국 대상 10% 추가 관세 부과 결정
3일	- 멕시코-캐나다 대상 관세 30일간 유예 발표
4일	- 중국에 대한 US-EPA 무역-이전 관세 10% 추가 발표
10일	- 2월 12일부터 철강-알루미늄 수입품에 25% 관세 예고
13일	- 상호관세 부과 예고
26일	- EU에 대한 25% 관세 발표 예고

3월

4일	- 캐나다-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발표(캐나다 에너지 관련 품목 10%) - 중국 대상 20% 관세 적용(기본 10% + 무역-이전 US-EPA 10%)
6일	- 멕시코-캐나다산 자동차 관세 1개월 연기 발표
6일	- USMCA 기존 품목 목록에 대해 멕시코-캐나다산 수입품 관세 연기 - USMCA 기존 미종류 캐나다산 에너지 10%, 철강 10% 관세부과 - USMCA 기존 미종류 멕시코산 철강 10% 관세
9일	- 중국, 미국산 농-축산물 대상 '2차 보복관세' 부과
12일	- 전 세계 철강-알루미늄 수입품에 25% 관세(제232조) 발표
14일	- 캐나다, 미국산 철강-알루미늄 등에 206만 캐나다달러 규모의 보복관세 부과 - WTO 분쟁 절차 요청
34일	- 4월 2일부터 캐세이퍼라산 세우 수입품에 25% 관세부과 발표
36일	- 4월 3일부터 제232조 자동차 관세 25% 부과 예고

4월

1일	- 제232조 근거로 반도체 제조 장비 및 부품들-원료 수입에 관세 면제 결정 호시 게시
3일	- 전 세계 수입품에 10% 기본관세(4월 5일부터) 발표 - 국가별 추가관세(4월 9일부터) '산호관세' 적용 발표, '해방의 날' 연기 - 국가별 관세 발표: 한국 25%, 중국 34%, EU 20%, 베트남 46%, 대만 32%, 일본 24% - 미국산 부품 할당이 20% 이상인 경우 비미국산 부품(Cocontent)만 25% 적용, 미국산 부품 할당이 20% 미만인 경우 관세 가치에 대해 관세부과



KIOI

Global Institute of Trade & Investment

3월	- 제232조 근거로 미국산 자동차에 25% 관세 부과
4월	- 제232조 근거로 알루미늄 파넬링에 25% 관세 부과 - 러시아산 알루미늄 제품에 200% 고율관세 적용 - 중국, 4월 10일부터 미국산 수입물에 34% 보복관세 부과 예고
6월	- 전 세계 대상 10% 관세 발표
8월	- 중국 보복관세 대응 차원에서 대중국 관세 84%로 인상, 대미 관세 포함 누적 104% 관세 부과
9월	- 중국, 대미 관세 84%로 인상 - 트럼프 대통령, 중국 제외 국가 대상 상호관세 90일 유예 발표(7월 9일까지) - 대중국 관세 125%로 인상, 대미 관세 포함 누적 관세 145%
12월	- 스마트폰·인공지능·반도체 제조장비 등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
18일	- 제232조 근거로 중요 광물 및 파생상품 수입의 안보 영향 조사 착수
29일	- 제232조 근거로 자동차 및 부품 수입 조정 제도 도입 - 관세상세금 등 관세부과 조정

5월

2일	- 중국-홍콩 무역 연세 기준 폐지
4일	- 해외 제작 영화에 100% 관세부과 방침 발표
9일	- 미국 무역협약 발표 - 미국: 영국산 자동차 30만 대까지 25% → 10%로 인하,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폐지 - 영국: 미국산 농산물 등 시장 개방 수용
10-11일	- 미-중 제세관 고위급 회담 개최
12일	- 미-중, 상호관세 대폭 인하 합의(90일간 유예) - 대중 관세 145% → 30% - 대미 관세 125% → 10%
14일	- 중국산 800달러 미만 소형 관세 120% → 54%로 인하
23일	- 트럼프 대통령, 6월 1일부터 EU 대상 50% 관세부과 예고 - 대일에 최소 25% 관세부과 예고, 미-중은 미국 내 생산 촉구
25일	- EU 대상 50% 관세 7월 9일까지 유예 발표
28일	- 미 연방 국제통상법원, 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ICEPA) 시행 금지 판결
29일	- 미 연방 항소법원, 상호관세 일시 적용 명령
30일	- 트럼프 대통령, 철강·알루미늄 제품 관세 25% → 50% 인상 발표

6월

3일	- 트럼프 대통령, 철강·알루미늄 관세 인상 포고문 서명
4일	- 철강·알루미늄 제품 50% 관세 발표 - 중국 대상 미-중 이관 ICEPA 적용



KIOI

Korea Institute of International Economic Research

7월

2일	- 미-베트남 무역협정 발효 - 베트남산 수입품 관세 46% → 20% 단일관세 - 한·적 열풍에 40% 고율 관세 부과
7일	- 트럼프 대통령 공식서한 발송, 상호관세 유예 종료 시점 연기 - 한국-일본 등에 관세 서한 공개, 8월 1일부터 한국산 제품 전면 25% 관세 통보
30일	- 방카과 구리제품-구리 파생상품에 8월 1일부터 50% 관세 부과 발표 - 브라질 제품에 8월 8일부터 40% 관세 부과 발표 - 8월 29일부터 모든 국가 대상 소액 면세 제도 중단
31일	- 캐나다 제품에 8월 1일부터 35% 관세 부과 발표 - 상호관세를 수감한 발표(8월 7일 발표) - 중국은 WTPA에 따른 무역-이민 관세 20% + 국가별 관세 10% 적용 유지

8월

6일	- 트럼프 대통령 반도체 관세 부과 가능성 시사 - 인도산 제품에 관세 25% 인상 발표(러시아 석유 제외)
7일	- 한국산 품목 상호관세 15% 발표
11일	- 중국 상호관세 유예 발표(11월 10일까지)
13일	- 트럼프 대통령 친박적 출신 의석을 비축할 확보 명백
15일	- 칠강-알루미늄 관세 적용 범위 확대(407개 품목, 8월 18일부터 적용) - 칠강-알루미늄 합금 가치에 대한 관세 50%, 비합금 부분은 국가별 관세 부과 - 미국에서 재관 및 주조된 경우 0%, 영국산 25%, 러시아산 200%
18일	- 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 적용 범위 확대(407개 품목) 시행
21일	- 미국-EU 무역협정에 관한 공동성명문 발표 - 반도체, 의약품, 목재에 대한 관세를 15% 이하 보장 - 제232조 자동차-자동차부품 관세 관련 공동성명 발표 ① (E-2) EU의 미국산 물품에 대한 관세 인하 시행을 위한 입법안 공식 제출 ② MFN 15% 이상인 품목은 MFN 적용 ③ MFN 15% 미만인 품목은 15% 상호관세 부과(MFN 포함)
29일	- 美-韓 정상회담소집원, WTPA에 근거한 상호관세 위협 판결 ① 판결 대상은 상호관세 및 미-아 관세(중국, 멕시코, 캐나다) ② 자동차, 칠강, 알루미늄, 구리 등 제232조 품목관세는 무역확장법에 근거하였으므로, 이번 판결의 대상이 아님 ③ 2025년 10월 13일까지 기존 조치의 효력 유지 ④ 트럼프 행정부, 대법원 상고 시사

9월

4일	- 미국-일본 협정 이행 행정명령 시행 - 항공우주, 의약품, 천연자원 등에 최혜국 대우 - 제232조 자동차-자동차 부품 관세 ① MFN 15% 이상인 품목은 MFN 적용 ② MFN 15% 미만인 품목은 15% 상호관세 부과(MFN 포함)
----	--



KIOI

Korea Institute of Foreign Trade Studies

(8차) USMCA 내용 가독성 제고 및 AD/CVD 부분 가독성 제고 반영_09.18.

2025년 미국의 최신 관세부와 현황표										
부류	품목명	최종관세율						기타 관세		
		최종관세율		최종관세율		관세부과율	부과 구분	특수관세	FTA	관세부과
		최종관세율	최종관세율	관세부과율	관세부과율					
일반관세	한국 EU/일본	10%				10%				
	중국	20%		20%		40%				
	세르브	20%				20%				
	USMCA 중주	10%				10%				
	USMCA 비중주	10%				10%				
중간 관세	한국 EU/일본					10%				
	중국			20%		20%				
	USMCA 중주					10%				
	USMCA 비중주					10%				
	USMCA 중주					10%				
중간 관세	한국 EU/일본					10%				
	중국			20%		20%				
	세르브					20%				
	USMCA 중주					10%				
	USMCA 비중주					10%				
고세 관세	한국 EU/일본					10%				
	중국			20%		40%				
	세르브					20%				
	USMCA 중주					10%				
	USMCA 비중주					10%				

* 기밀로 분류된 자료는 변경된 관세율을 반영(작성일자: 2025.09.18.)
 1. 관세율(10%)은 10%로 합의(10%)인 시점 합의만 적용. 단, 관세율은 10% 적용(한국 EU 10%, 2025.09.18. 기준)
 2. 관세율(중간관세)은 기존관세(FTA)는 중주 부과 되지 않음. 301조와 기존관세(FTA) 및 301조와 AG/CVD는 중주 부과 가능
 3. 미국은 '통상법', 제301조제 2항에 따라 중국산 상품에 대해 25%에서 10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 적용 대상: 배타무역 부문(25%),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25%), 광물 자원(25%), 항공기(25%), 반도체(10%), 해양수산(50%), 전기차(100%) 등
 4. EU/일본은 MFN 10%이지만 중주는 MFN 적용, MFN 10% 이면은 중주는 15% 부과에 부가(MFN 포함)



상세를 통한 관세부과 구조 이해하기

> 합당·일부미능 파생상품 관세 <

- 해당 관세는 '무역확정법, 제232조 품목별 관세에 IEEPA 국가별 관세가 더해지면서, 관세 구조가 이중화돼 가장 복잡한 형태로 적용 중
 - (구조) 기존 관세 체계에 ① 제232조 품목별 관세와 ② IEEPA 상호관세가 더해지는 구조
 - (예시) 냉장고는 철강 파생상품 대상에 이어 알루미늄 파생상품 대상으로 확대된 품목(08.18.)
 - ① 제232조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 = 합당 가치에 대한 관세 50%
 - ② IEEPA 국가별 관세 = (한국산) 비합당 가치에 대한 상호관세 15%
 - ∴ 총 관세 = ①+② + 기존 관세(MFN or FTA 등)

○ 원산지(국가)별 파생상품 관세의 차등 부과

- 이중 구조를 지닌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는 원산지(국가)별로 차등 적용 중이며, 한국산은 USMCA를 충족한 품목 외에 가장 낮은 관세를 적용받고 있음

원산지	관세부과율		
1 USMCA 기준 충족	합당 가치에 대한 관세 50%만 부과		
2 한국산	합당 가치에 대한 관세 50% + 비합당 가치에 대한 상호관세 15%		
3 USMCA 기준 미충족	합당 가치에 대한 관세 50% + <table border="1" style="display: inline-table; vertical-align: middle;"> <tr> <td>[해] 비합당 가치에 대한 상호관세 35%</td> </tr> <tr> <td>[맥] 비합당 가치에 대한 상호관세 25%</td> </tr> </table>	[해] 비합당 가치에 대한 상호관세 35%	[맥] 비합당 가치에 대한 상호관세 25%
[해] 비합당 가치에 대한 상호관세 35%			
[맥] 비합당 가치에 대한 상호관세 25%			
4 중국산	합당 관세 50% + 비합당 관세 10% + 미약 관세 20%		

○ 철강 파생상품에 이어 알루미늄 파생상품 대상으로 확대된 품목의 관세부과 예시

<한국산 냉장고의 해외 수출 체크리스트(예시)>

순	항목	해석 (해당 예시)												
1	관세부과 품명	철강 파생상품에 이어 알루미늄 파생상품에 적용 확대(08.18) - 대상 품목의 부과 품목 확인(합당 관세, 비합당 관세) <table border="1" style="display: inline-table; vertical-align: middle;"> <tr> <th>제232조 철강 파생상품</th> <th>제232조 알루미늄 파생상품</th> <th>상호관세</th> </tr> <tr> <td>대상</td> <td>대상</td> <td>대상</td> </tr> <tr> <td>합당 가치의 50%</td> <td>합당 가치의 50%</td> <td>비합당 가치의 15%</td> </tr> </table>	제232조 철강 파생상품	제232조 알루미늄 파생상품	상호관세	대상	대상	대상	합당 가치의 50%	합당 가치의 50%	비합당 가치의 15%			
제232조 철강 파생상품	제232조 알루미늄 파생상품	상호관세												
대상	대상	대상												
합당 가치의 50%	합당 가치의 50%	비합당 가치의 15%												
2	품목분류	일체형 냉장고의 품목분류는 HTSUS 8418.10.00												
3	원산지 함유량과 체조시 확인	자사 품목의 철강 함유량은 40%, 알루미늄 함유량은 20%, 기타 40%												
4	원산지 확인	美 CBP 원산지사천심사 제도를 통한 원산지(한국) 확인												
5	관세를 확인과 총 관세 계산	상품 총가치: 1,000\$ <table border="1" style="display: inline-table; vertical-align: middle;"> <tr> <th>구분</th> <th>관세부과(가치기준)</th> </tr> <tr> <td>합당 상품</td> <td>400\$ × 50% = 200\$</td> </tr> <tr> <td>알루미늄 포함</td> <td>200\$ × 50% = 100\$</td> </tr> <tr> <td>비합당</td> <td>400\$ × 15% = 60\$</td> </tr> <tr> <td>기존 관세</td> <td>MFN or FTA 등</td> </tr> <tr> <td>총 관세</td> <td>360\$ + 기존 관세액</td> </tr> </table>	구분	관세부과(가치기준)	합당 상품	400\$ × 50% = 200\$	알루미늄 포함	200\$ × 50% = 100\$	비합당	400\$ × 15% = 60\$	기존 관세	MFN or FTA 등	총 관세	360\$ + 기존 관세액
구분	관세부과(가치기준)													
합당 상품	400\$ × 50% = 200\$													
알루미늄 포함	200\$ × 50% = 100\$													
비합당	400\$ × 15% = 60\$													
기존 관세	MFN or FTA 등													
총 관세	360\$ + 기존 관세액													

자료: 한국관세지정관리, FTA-DB, IEEPA, 제232조 품목별 관세



KIOI

Center Institute of Foreign Information

국가별 상호관세 상호 현황*

(2025.04.07)

연번	국가	관세율(%)		
		통관 ¹⁾	간접	
1	아프가니스탄	10	15	
2	알제리	30	30	
3	알골라	32	15	
4	방글라데시	35	20	
5	볼리비아	10	15	
6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30	30	
7	보츠와나	37	15	
8	브라질 ²⁾	50	10	
9	브루나이	25	25	
10	캄보디아	36	19	
11	카메룬	11	15	
12	차드	13	15	
13	코스타리카	10	15	
14	코트디부아르	21	15	
15	몽고민주공화국	11	15	
16	페루도르	10	15	
17	피도기나	13	15	
18	EU	30	MFN 15% 이상 품목 MFN 15% 미만 품목	MFN 적용 15%(MFN 포함)
19	포클랜드 제도	41		10
20	피지	32		15
21	기나	10		15
22	가이아나	38		15
23	아이슬란드	10		15
24	인도 ³⁾	26		25
25	인도네시아	18		19
26	이라크	30		35
27	이스라엘	17		15
28	일본	25		15
29	요르단	20		15
30	카자흐스탄	25		25
31	러오스	40		40
32	레소토	50		15
33	리비아	30		30
34	리히텐슈타인	37		15
35	마다가스카르	47		15



KIOI

Center for International Education

36	말라위	17	15
37	말레이시아	24	19
38	모리셔스	40	15
39	몽도바	25	25
40	모잠비크	16	15
41	미얀마	40	40
42	나미비아	21	15
43	나우루	30	15
44	뉴질랜드	10	15
45	니카라과	18	18
46	나이지리아	14	15
47	북마케도니아	33	15
48	노르웨이	15	15
49	파키스탄	29	19
50	파푸아뉴기니	10	15
51	필리핀	20	19
52	세르비아	35	35
53	남아프리카공화국	30	30
54	대한민국	25	15
55	스리랑카	30	20
56	스위스	31	39
57	시리아	41	41
58	대만	32	20
59	태국	36	19
60	트리니다드 토바고	10	15
61	튀니지	25	25
62	튀르키예	10	15
63	우간다	10	15
64	영국	10	10
65	바누아투	22	15
66	베네수엘라	15	15
67	베트남	40	20
68	잠비아	17	15
69	짐바브웨	18	15

각 분점별 또는 지점도 정기 발행부 정보(발행일)은 제142368호에 기재된 한 4개 부과 발행부 작성기준으로
 2) 발행부 정기 발행부 공식 서한에 의해 접수번호(07-07-000)
 3) 발행일과 발행부 10%의 별도 발행일(제142322호에 기재) 42%가 유지되어 총 52% 부과
 4) 인도는 2009년에 25%의 별도 발행일(제143222호에 기재) 25%가 유지되어 총 50% 부과



1. '트럼프 관세 계획'

○ 배경

- 지속적인 무역적자로 인한 국가 경제 안보의 위협 해소

○ 목적

- 무역적자 시정, 중국산 무역 수출 차단, 해외 투자 유입 촉진, 미국 제조 산업 보호를 통한 미국 중심 보호주의 통상질서 확립

○ 추가 관세 출현

-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품목별 관세, '국제비상경제권법, (IEEPA)에 따른 국가별 관세

법령근거	대상	발령일자	일시	비고	
IEEPA	미국-미간	캐나다	행정명령 제14193호	02.01	미국 유입 차단, 원세율 25%, 에너지 10%
			행정명령 제14231호	03.06	합류 10%
			행정명령 제14325호	07.31	USMCA 미준족 35%
		멕시코	행정명령 제14194호	02.01	미국 유입 차단, 원세율 25%
			행정명령 제14232호	03.06	합류 10%
			행정명령 제14195호	02.01	미국 유입 차단, 원세율 10%
	중국	국가별 관세 (상호관세)	행정명령 제14228호	03.03	아약(엔타일) 관세 20%
			행정명령 제14257호	04.02	원세율 10%, 원중국 34%, 국가별 관세 필요 (한국 25%, EU 20% 등)
		행정명령 제14259호(중국)	04.08	원중국 34% → 84%	
		행정명령 제14266호(중국)	04.08	원중국 84% → 125%	
		행정명령 제14296호(중국)	05.12	원중국 125% → 10% (+24% 유예)	
		행정명령 제14326호	07.31	상호관세를 적용 수경 (원중국 25% → 15%)	
무역확장법 제232조	자동차-자동차 부품	포고령 제10998호	03.26	원세율 25%, (USMCA 준족, 비미국산 35%)	
		포고령 제10896호	02.10	원세율 25%	
	철강-철강 파생상품	포고령 제10947호	06.03	원세율 25% → 50%	
		포고령 제10895호	02.10	원세율 25%	
	알루미늄-알루미늄 파생상품	포고령 제10947호	06.03	원세율 25% → 50%	
		포고령 제10962호	07.30	원세율 50%	



● 최선 조치 주요내용(행정명령 14326호, CBP 지침 CSMS #65829726_(08.07))

- ✓ 국가별 상호관세 확정
- 총 69개 경제주체 대상 국가별 관세부과(부속서 1, 한국, 일본, EU 등 포함)
- 부속서 1에 명시되지 않은 국가는 행정명령 14257호에 따른 10% 관세부과
- (MFN) 對EU 관세만 명시(15%, MFN 포함)
- ✓ 환적(Transshipment) 차단 조항 신설
- 환적을 통한 관세 회피 행위 적발 시, 기본관세에 40% 추가 관세부과
- 그 외 법에 따른 징벌적 벌금, 세금 및 기타 부과금 모두 적용(감경 또는 면제 불가)
- 6개월마다 우회 수출 의심 국가 및 시설 리스트 발표(정부 조달, 안보 및 상업 심사 등 반영)
- 현재 환적(Transshipment)의 정의와 적용기준에 대한 공식 발표 권(미국측 자의적 해석 가능)

환적(Transshipment)_CBP 홈페이지

- 원산지 상품은 NAFTA 역외에서 하며, 재차재, 보존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 또는 캐나다-멕시코-미국으로 운송하는데 필요한 작업 외의 공정 수행 시 원산지 지위를 상실한다.

1) 의료용 셔드 부품

- 미국산 소재를 사용하여 만든 수술 도구와 멕시코산 연 가운과 봉대가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운송되어 실금 및 포장 공정을 수행
- CBP는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영국 및 포장' 공정이 수행된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판단

● 변동 가능성

- 국가별 개별 협상에 따른 관세 조정 가능

2. 제232조 품목별 추가 관세 근거 규정 및 지침

● 자동차-자동차 부품: 대통령 포고령 10925에 따른 품목

- (자동차) CBP 지침 CSMS #64624801_(04.02)
- (자동차 부품) CBP 지침 CSMS #64916652_(05.01)
- (USMCA) CBP 지침 CSMS #65849652_(07.16)

●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 대통령 포고령 10947호에 따른 품목

- (철강 및 철강 파생상품) CBP 지침 CSMS #65236374_(06.03)
- (철강 파생상품) 품목 확대 적용 CBP 지침 CSMS #65936570_(08.15)
-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파생상품) CBP 지침 CSMS #65236645_(06.03)
- (알루미늄 파생상품) 품목 확대 적용 CBP 지침 CSMS #65936615_(08.15)

● 반제품 구리 및 파생상품: 대통령 포고령 10962호에 따른 품목

- (구리 및 구리 파생상품) CBP 지침 CSMS #65794272_(07.31)

● 그 외 제품

- (캐나다) 에너지 자원, CBP 지침 CSMS #64297449_(03.03)
- (캐나다) 칼륨(Potash), CBP 지침 CSMS #64336037_(03.06)
- (멕시코) 칼륨(Potash), CBP 지침 CSMS #64335789_(03.06)



3. IEEPA에 따른 상호관세 추가 여부

①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자동차·자동차 부품 관세부과 시**

- 동 법(제232조)에 따른 철강 가치에 대한 할당 관세와 상호관세는 모두 제외
- 동 법(제232조)에 따른 알루미늄 가치에 대한 할당 관세와 상호관세는 모두 제외
- 동 법(제232조)에 따른 구리 가치에 대한 할당 관세와 상호관세는 모두 제외

②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철강·알루미늄 관세부과 시**

- 철강과 알루미늄은 할당 가치에 따른 관세부과 가능하며, 상호관세는 제외
- 단, 피상상품의 경우 비할당 가치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③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반도체 구리 및 파생상품 관세부과 시**

- 할당 가치에 따른 유통관세 부과 및 비할당 가치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④ 그 외 제품

- (TIP) 보세 및 시 수입 절차에 따라 적당하게 신고된 상품은 제외
- (USMCA) USMCA 기준 충족 시 제외, 미충족 시 부과
- (캐나다) USMCA 기준 미충족 에너지 자원(10%), 알루미늄(10%) 부과
- (멕시코) USMCA 기준 미충족 알루미늄(10%) 부과

⑤ 환중국 상호관세 현황

- 행정명령 제14334호(08.11)에 따라 11월 10일까지 현행 유지(중 54% 중, 24% 유예)
- 행정명령 제14298호(05.12)에 따라 국가별 10%(+24% 유예중)+아이-이핀 관세 20% 유지

4. '트럼프 관세' 시사점

① IEEPA에 따른 추가 관세 변동 가능성

- 미국 헌법상의 대통령 권한 논란으로 위한 소송 진행 중
- 8월 29일, 美 연방순회합소법원은 IEEPA에 근거한 관세정책은 위법하다고 판결함
- 10월 13일까지 기존 조치의 효력 유지, 트럼프 행정부 대법원 상고 시사

② 행정명령 제14326호 (07.31)의 제6조

- IEEPA에 따른 관세부과 관련 소송 패스 시의 대비책으로 보여짐
- (산출 조항) Sec 6. Severability(분리 가능성)

(원문) If any provision of this order, or the application of any provision of this order to any individual or circumstance, is held to be invalid, the remainder of this order and the application of its provisions to any other individuals or circumstances shall not be affected.

- (국문) 본 명령의 특정 조항이나 그 적용이 어떤 개인이나 상황에 대해 **무효로 판단되어도, 본 명령의 다른 조항이나 그 적용은 여전히 효력을 유지**합니다.
- 해당 조항(Severability)은 이전 상호관세 관련 발표(07.07)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정책에 대한 안정성 재고를 위해 삽입한 것으로 해석 가능



<스핀오프기 발간부> 미국 관세부과 현황 일지

1월

20일	- 트럼프 대통령 취임 - 2월 1일부터 멕시코-캐나다 대상 25% 관세 예고 - 중국에 대한 관세부과 방안 검토 언급
-----	--

2월

1일	- 불법 이민자遣返당 등 미역 유입을 이유로 캐나다-멕시코 대상 25% 관세부과 결정연일 서명 - 중국 대상 10% 추가 관세 부과 발표
3일	- 멕시코-캐나다 대상 관세 30일간 유예 발표
4일	- 중국에 대한 WTPA 미비이전 관세 10% 추가 발표
10일	- 3월 12일부터 철강-알루미늄 수입품에 25% 관세 예고
13일	- 상호관세 부과 예고
20일	- EU에 대한 25% 관세 발표 예고

3월

4일	- 캐나다-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발표(캐나다 에너지 관련 품목 10%) - 중국 대상 30% 관세 적용(기존 10% + 미비이전 WTPA 10%)
5일	- 멕시코-캐나다산 자동차 관세 1개월 연해 발표
6일	- USMCA 기준 중국 품목에 대해 멕시코-캐나다산 수입품 관세 연해 - USMCA 기준 미중품 캐나다산 에너지 10%, 철강 10% 관세부과 - USMCA 기준 미중품 멕시코산 철강 10% 관세
9일	- 중국, 미국산 농·축산물 대상 2차 보복관세 부과
12일	- 전 세계 철강-알루미늄 수입품에 25% 관세(제232조) 발표
14일	- 캐나다, 미국산 철강-알루미늄 등에 298년 캐나다입자 규모 보복관세 부과 - WTO 분쟁 합의 요청
24일	- 4월 2일부터 배타수출자산 석유 수입품에 25% 관세부과 발표
29일	- 4월 3일부터 제232조 자동차 관세 25% 부과 예고

4월

1일	- 제232조 근거로 반도체-제조 장비 및 역학을 중요 수입에 연보 영향 조사 개시
2일	- 전 세계 수입품에 10% 기본관세(4월 5일부터) 발표 - 국가별 추가관세(4월 9일부터) '상호관세' 계획 발표, '해방의 날' 명명 - 국가별 관세 발표: 한국 25%, 중국 34%, EU 20%, 베트남 46%, 대만 32%, 일본 24% - 미국산 부품 결함미 20% 이상인 경우 미미국산 부품(Components)만 25% 적용, 미미국산 부품 함량이 20% 미만인 경우 전체 가치에 대해 관세부과



KIOI

Korea Institute of International Law & Economics

3월	- 제232조 근거로 자동차 자용차에 25% 관세 부과
4월	- 제232조 근거로 알루미늄 파생상품 25% 관세 부과 - 러시아산 알루미늄 제품에 200% 고율관세 적용 - 중국, 4월 10일부터 미국산 수입품에 34% 보복관세 부과 예고
5월	- 전 세계 대상 10% 관세 발표
8월	- 중국 보복관세 대응 차원에서 대중국 관세 84%로 수렴, 미약 관세 포함 누적 104% 관세 부과
9월	- 중국, 미약 관세 84%로 인상 - 프랑스 대통령, 중국 제외 국가 대상 상호관세 90일 유예 발표(7월 9일까지) - 대중국 관세 125%로 수렴, 미약 관세 포함 누적 관세 145%
12월	- 스타트업-컴퓨터 반도체 제조장비 등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
15일	- 제232조 근거로 중요 광물 및 파생상품 수입액 간보 영향 조사 착수
29일	- 제232조 근거로 자동차 및 부품 수입 조정 제도 도입 - 관세상계금 등 징척부과 도입

5월

2일	- 중국-몽골 무역 관세 기준 제시
4일	- 미약 관세 영향에 100% 관세부과 방침 발표
9일	- 미-영 무역협약 발표 - 미국-영국산 자동차 10년 내까지 25% + 10%로 인하,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폐지 - 영국-미국산 농산물 등 시장 개방 수렴
10-11일	- 미-중 제네바 고위급 회담 개최
12일	- 미-중, 상호관세 대폭 인하 합의(90일간 유효) - 대중 관세 145% → 30% - 대미 관세 125% → 10%
14일	- 중국발 600달러 미만 소모 관세 120% → 54%로 인하
23일	- 프랑스 대통령, 6월 1일부터 EU 대상 50% 관세부과 예고 - 독일에 최소 25% 관세부과 예고, 아이폰 미국 내 생산 촉구
28일	- EU 대상 50% 관세 7월 9일까지 유예 발표
29일	- 미 연방 국제통상법원, 프랑스 철강부 상호관세(BEPA) 시행 금지 판결
29일	- 미 연방 항소법원, 상호관세 일시 복원 명령
30일	- 프랑스 대통령, 철강-알루미늄 제품 관세 25% + 50% 인상 발표

6월

3일	- 프랑스 대통령, 철강-알루미늄 관세 인상 예고한 사항
4일	- 철강-알루미늄 제품 50% 관세 발표 - 중국 대상 미약-이전 BEPA 적용



KIOI

Korea Institute of International Economic Research

7월

2일	- 미 베트남 무역협약 발표 - 베트남산 수입품 관세 46% → 20% 단발관세 - 한적 불꽃에 40% 고율 관세부과
7일	- 트럼프 대통령 공식서한 발송, 상호관세 무역 종료 시장 연기 - 한국-일본 등에 관세 서한 공개, 8월 1일부터 한국산 제품 전면 25% 관세 불부
30일	- 방가공 구리제품-구리 파생상품에 8월 1일부터 50% 관세부과 발표 - 브라질 제품에 8월 6일부터 40% 관세부과 발표 - 8월 29일부터 모든 국가 대상 소액 면세 제도 중단
31일	- 캐나다 제품에 8월 1일부터 35% 관세부과 발표 - 상호관세를 수정한 발표(8월 7일 발표) - 중국은 WTPA에 따른 무역 이민 관세 20% + 국가별 관세 10% 적용 유지

8월

6일	- 트럼프 대통령 반도적 관세부과 가능성 시사 - 인도산 제품에 관세 25% 인상 발표(러시아 석유 제재)
7일	- 한국산 물품 상호관세 15% 발표
11일	- 중국 상호관세 유예 발표(11월 10일까지)
13일	- 트럼프 대통령 전략적 협상 의약품 비축량 확보 명령
15일	- 칠간-일루미늄 관세 적용 범위 확대(407개 품목, 8월 18일부터 적용) - 칠간-일루미늄 칠간 가치에 대한 관세 50%, 비칠간 부분은 국가별 관세부과 - 미국에서 제련 및 주조된 경우 0%, 영국산 25%, 러시아산 200%
18일	- 칠간-일루미늄 파생상품 관세 적용 범위 확대(407개 품목) 시행
21일	- 미국-EU 무역협상에 관한 공동성명 발표 - 반도적, 의약품, 폭재에 대한 관세를 15% 이하 보장 - 제232조 자동차-자동차 부품 관세 관련 공동성명 발표 ① (조건) EU와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 시행을 위한 입법안 공식 제출 ② MFN 15% 이상인 품목은 MFN 적용 ③ MFN 15% 미만인 품목은 15% 상호관세 부과(MFN 포함)
29일	- 美 연방수회합소법원, WTPA에 근거한 상호관세 위법 판결 ① 판결 대상은 상호관세 및 무역 관세(중국, 멕시코, 캐나다) ② 자동차, 칠간, 일루미늄, 구리 등 제232조 품목관세는 무역협정에 근거하였으므로, 이번 판결의 대상이 아님 ③ 2025년 10월 13일까지 기존 조치의 효력 유지 ④ 트럼프 행정부, 대법원 상고 시사

9월

4일	- 미국-일본 협정 이행 행정명령 시행 - 항공우주, 의약품, 천연자물 등에 최대국 대우 - 제232조 자동차-자동차 부품 관세 ① MFN 15% 이상인 품목은 MFN 적용 ② MFN 15% 미만인 품목은 15% 상호관세 부과(MFN 포함)
----	--



(9차) 232조 목재 및 가구 관련 품목 관세 반영_10.13.

2025년 미국의 최신 관세부과 현황표*										
구분	품목명	관세율 (%)					비고	관세 부과 방식		
		일반관세	최저 관세율(FTA 등 제외관세)	자유관세	특별관세	특별관세율		관세율	관세율	관세율
목재	목재	0%								
	목재	0%								
	목재	0%								
	목재	0%								
	목재	0%								
가구	가구	0%								
	가구	0%								
	가구	0%								
	가구	0%								
	가구	0%								
기타	기타	0%								
	기타	0%								
	기타	0%								
	기타	0%								
	기타	0%								

* 232조 관련 품목의 관세율 변경 현황을 반영한 것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1. 관세율: 0%인 품목은 관세 부과 대상이 아니며, 관세 부과 대상 품목은 관세율에 따라 관세 부과됩니다.

2. 관세율: 0%인 품목은 관세 부과 대상이 아니며, 관세 부과 대상 품목은 관세율에 따라 관세 부과됩니다.

3. 관세율: 0%인 품목은 관세 부과 대상이 아니며, 관세 부과 대상 품목은 관세율에 따라 관세 부과됩니다.

4. 관세율: 0%인 품목은 관세 부과 대상이 아니며, 관세 부과 대상 품목은 관세율에 따라 관세 부과됩니다.

5. 관세율: 0%인 품목은 관세 부과 대상이 아니며, 관세 부과 대상 품목은 관세율에 따라 관세 부과됩니다.

6. 관세율: 0%인 품목은 관세 부과 대상이 아니며, 관세 부과 대상 품목은 관세율에 따라 관세 부과됩니다.

7. 관세율: 0%인 품목은 관세 부과 대상이 아니며, 관세 부과 대상 품목은 관세율에 따라 관세 부과됩니다.

8. 관세율: 0%인 품목은 관세 부과 대상이 아니며, 관세 부과 대상 품목은 관세율에 따라 관세 부과됩니다.

9. 관세율: 0%인 품목은 관세 부과 대상이 아니며, 관세 부과 대상 품목은 관세율에 따라 관세 부과됩니다.

10. 관세율: 0%인 품목은 관세 부과 대상이 아니며, 관세 부과 대상 품목은 관세율에 따라 관세 부과됩니다.



시제품 통한 관세부과 구조 이해하기

<필수 업무미능 파생상품 관세>

- 해당 관세는 '무역확장법' 제232조 품목별 관세에 KEPPA 국가별 관세가 더해지면서, 관세 구조가 이중화돼 가장 복잡한 형태로 적용됨
 - (구조) 기존 관세 체계에 ① 제232조 품목별 관세와 ② KEPPA 상호관세가 더해지는 구조
 - (예시) 냄창고는 철강 파생상품 대상에 이어 알루미늄 파생상품 대상으로 확대된 품목(08.18)
 - ① 제232조 철강 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 = 철강 가치에 대한 관세 50%
 - ② KEPPA 국가별 관세 = (한국산) 비합량 가치에 대한 상호관세 15%
 - ∴ 총 관세 = ①+② + 기존 관세(MFN or FTA 등)

② 원산지(국가)별 파생상품 관세의 차등 부과

- 이중 구조를 지닌 철강 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는 원산지(국가)별로 차등 적용 중이며, 한국산은 USMCA를 충족한 품목 외에 가장 낮은 관세를 적용받고 있음

원산지	관세부과율		
1. USMCA 기준 충족	합량 가치에 대한 관세 50%만 부과		
2. 한국산	합량 가치에 대한 관세 50% + 비합량 가치에 대한 상호관세 15%		
3. USMCA 기준 미충족	합량 가치에 대한 관세 50% +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r> <td>[제] 비합량 가치에 대한 상호관세 35%</td> </tr> <tr> <td>[미] 비합량 가치에 대한 상호관세 25%</td> </tr> </table>	[제] 비합량 가치에 대한 상호관세 35%	[미] 비합량 가치에 대한 상호관세 25%
[제] 비합량 가치에 대한 상호관세 35%			
[미] 비합량 가치에 대한 상호관세 25%			
4. 중국산	합량 관세 50% + 비합량 관세 10% + 마약 관세 20%		

③ 철강 파생상품에 이어 알루미늄 파생상품 대상으로 확대된 품목의 관세부과 예시

<한국산 냄창고의 함미 수출 체크리스트(예시)>

No.	항목	체크내용 표시												
1	관세부과 등장	철강 파생상품에 이어 알루미늄 파생상품에 적용 확대(08.18) - 대상 품목의 부과 항목 확인(합량 관세, 비합량 관세)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제232조 철강 파생상품</th> <th>제232조 알루미늄 파생상품</th> <th>상호관세</th> </tr> </thead> <tbody> <tr> <td>대상</td> <td>대상</td> <td>대상</td> </tr> <tr> <td>합량 가치의 50%</td> <td>합량 가치의 50%</td> <td>비합량 가치의 15%</td> </tr> </tbody> </table>	제232조 철강 파생상품	제232조 알루미늄 파생상품	상호관세	대상	대상	대상	합량 가치의 50%	합량 가치의 50%	비합량 가치의 15%			
제232조 철강 파생상품	제232조 알루미늄 파생상품	상호관세												
대상	대상	대상												
합량 가치의 50%	합량 가치의 50%	비합량 가치의 15%												
2	품목분류	일체형 냄창고의 품목분류는 HTSUS 8418.10.00												
3	원자재 함유량과 세조지 확인	자사 제품의 철강 함유량은 40%, 알루미늄 함유량은 20%, 기타 40%												
4	원산지 확인	美 CBP 원산지사건심사 제도를 통한 원산지(한국) 확인												
5	관세율 확인과 총 관세 계산	상품 총가치: 1,000\$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구분</th> <th>관세부과(달러기준)</th> </tr> </thead> <tbody> <tr> <td>합량 합량</td> <td>400\$ × 50% = 200\$</td> </tr> <tr> <td>알루미늄 합량</td> <td>200\$ × 50% = 100\$</td> </tr> <tr> <td>비합량</td> <td>400\$ × 15% = 60\$</td> </tr> <tr> <td>기존 관세</td> <td>MFN or FTA 등</td> </tr> <tr> <td>총 관세</td> <td>360\$ + 기존 관세액</td> </tr> </tbody> </table>	구분	관세부과(달러기준)	합량 합량	400\$ × 50% = 200\$	알루미늄 합량	200\$ × 50% = 100\$	비합량	400\$ × 15% = 60\$	기존 관세	MFN or FTA 등	총 관세	360\$ + 기존 관세액
구분	관세부과(달러기준)													
합량 합량	400\$ × 50% = 200\$													
알루미늄 합량	200\$ × 50% = 100\$													
비합량	400\$ × 15% = 60\$													
기존 관세	MFN or FTA 등													
총 관세	360\$ + 기존 관세액													

자료: 한국원산지관리법, 무역확장법, 제232조 품목별 관세부과율



KIOI

Center for the Study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국제기구 순위표 (2019년 기준)

순위	국명	국제기구 수	
		총 수	인도
1	미국(USA)	30	15
2	일본(JP)	30	30
3	영국(UK)	32	15
4	영국(GB)	35	20
5	독일(DE)	30	15
6	프랑스(FR)	30	30
7	호주(AU)	37	15
8	캐나다(CA)	34	10
9	대한민국(KR)	25	25
10	일본(JP)	34	10
11	중국(CN)	11	15
12	미국(USA)	13	15
13	미국(USA)	10	15
14	대한민국(KR)	21	15
15	대한민국(KR)	11	15
16	미국(USA)	10	15
17	미국(USA)	13	15
18	EU	38	MFN 15% 이상 품목 MFN 15% 미만 품목
19	프랑스(FR)	41	MFN 15% 미만 품목
20	미국(USA)	32	15
21	미국(USA)	30	15
22	미국(USA)	38	15
23	미국(USA)	10	15
24	미국(USA)	28	25
25	미국(USA)	10	15
26	미국(USA)	30	35
27	미국(USA)	17	15
28	미국(USA)	25	15
29	미국(USA)	28	15
30	미국(USA)	25	25
34	미국(USA)	37	15
35	미국(USA)	47	15
36	미국(USA)	17	15
37	미국(USA)	24	10
38	미국(USA)	40	15
39	미국(USA)	25	25
40	미국(USA)	36	15
41	미국(USA)	40	40
42	미국(USA)	21	15
43	미국(USA)	30	15
44	미국(USA)	10	15
45	미국(USA)	18	15
46	미국(USA)	14	15



KIOI

Center for Studies in Foreign Languages

번	국가	교재페이지	
		듣기	읽기
47	북마케도니아	33	15
48	노르웨이	15	15
49	튀르키스탄	29	19
50	피루아뉴기니	10	15
51	말리환	20	19
52	세르비아	35	35
53	남아프리카공화국	30	30
54	대한민국	25	15
55	스리랑카	30	20
56	스위스	31	30
57	시리아	41	41
58	태완	32	20
59	태국	36	19
60	프랑스의 퐁비고	10	15
61	튀니지	25	25
62	튀르키예	10	15
63	우간다	10	15
64	영국	10	10
65	베누에루	22	15
66	베네수엘라	15	15
67	베트남	40	20
68	잠비아	17	15
69	잠비아	18	15

1) 교재 가격은 위 표의 국가 별마다 출판사별마다 제423000에 가산한 후 세제 부과 금액이 적용되며
 교재별 교재 별마다 금액이 다른 (제423000)이다.
 2) 배송비 별도이며 10% 이상 5% 할인되며 제423000 이하 40%가 추가되며 50% 이상
 3) 10% 이상 20% 이상 5% 할인되며 제423000 이하 25%가 추가되며 50% 이상



KIOI

Center for Korea's International Trade

1. '무역포 관세' 개요

● 배경

- 지속적인 무역적자로 인한 국가 경제 안보의 위협 해소

● 목적

- 무역적자 시정, 중국산 무역 수급 차단, 해외 투자 유입 촉진, 미국 제조 산업 보호를 통한 미국 중심 보호주의 분상일서 확립

● 추가 관세 종류

-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품목별 관세, '국제비상경제관세'(IETPA)에 따른 국가별 관세

법률 근거	대상	발행일자	일시	비고	
EFTA	미국 지역	캐나다	행정명령 제14193호	02.01	마약 수입 차단, 황폐지 25%, 해안지 10%
			행정명령 제14231호	03.06	철물 10%
			행정명령 제14325호	07.31	USMCA 미류품 35%
		멕시코	행정명령 제14194호	02.01	마약 수입 차단, 황폐지 25%
			행정명령 제14232호	03.06	철물 10%
		중국	행정명령 제14195호	02.01	마약 수입 차단, 황폐지 10%
	행정명령 제14226호		03.03	다양(황태어) 관세 20%	
	국가별 관세 (상호관세)	행정명령 제14257호	04.02	황폐지 10%, 황폐지 34%, 국가별 관세 상류 (한국 25%, EU 20% 등)	
		행정명령 제14259호(중국)	04.08	황폐지 34% → 84%	
		행정명령 제14266호(중국)	04.09	황폐지 84% → 125%	
		행정명령 제14298호(중국)	05.12	황폐지 125% → 10% (+24% 상류)	
		행정명령 제14326호	07.31	상호관세를 적용 수급 (황폐지 25% → 15%)	
		행정명령 제14334호(중국)	08.11	황폐지 관세 유예 기준 10% (+24%) 유지	
	무역확장법 제232조	자동차 자동차 부품	포고령 제10908호	03.26	황폐지 25% (USMCA 중계 시 비타리산만 25%)
철강-철강 파생상품		포고령 제10896호	02.10	황폐지 25%	
		포고령 제10947호	06.03	황폐지 25% → 50%	
알루미늄-알루미늄 파생상품		포고령 제10895호	02.10	황폐지 25%	
		포고령 제10947호	06.03	황폐지 25% → 50%	
반도체-구리 및 파생상품		포고령 제10862호	07.30	황폐지 50%	
석재 및 파생상품		포고령 제10948호	09.29	황폐지 10-25% (한국 10%, EU-일본 15%)	



KIOI

Korea Institute of International Commerce

- 최선 조치 주요내용(행정명령 14326호, CBP 지침 CSMS #65829726_J08.07)
 - ✓ 국가별 상호관세 발표(행정명령 14326호, CBP 지침 CSMS #65829726_J08.07)
 - 총 89개 경제주체 대상 국가별 관세부과(부속서 I, 한국, 일본, EU 등 포함)
 - 부속서 I에 명시되지 않은 국가는 행정명령 14327호에 따른 10% 관세부과
 - (MFN) 관세 EU 관세면 면세(15%, MFN 포함)
 - ✓ 상호관세 범위 수정(행정명령 14346호, CBP 지침 CSMS #66148876_J09.05)
 - 미국-일본 협정에 따른 15% 세율 적용(MFN 포함)
 - ✓ 환적(Transshipment) 지난 조항 신설
 - 환적을 통한 관세 회피 행위 적발 시, 기본관세에 40% 추가 관세부과
 - 그 외 법에 따른 징벌적 벌금, 세관 및 기타 부과금 모두 적용(징벌 또는 연세 불가)
 - 6개월마다 우리 수출 대상 국가 및 사법 리스트 발표(정부 조달, 안보 및 산업 심사 등 반영)
 - 현재 환적(Transshipment)의 정의와 적용기준에 대한 공식 필요 전(미국측 자의적 해석 가능)

환적(Transshipment)_CBP 통제여지

- 환산지 상품은 NAFTA 지역에서 판매, 재판매, 보존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 또는 캐나다 멕시코 미국으로 운송하는데 필요한 적법 처리 공청 수행 시 환산지 처리를 상실한다.

CBP 적법률 제도 설명

- 미국산 소재를 사용하여 만든 수출 도구와 멕시코산 한, 가문과 물체가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운송하여 실관 및 포장 공청을 수행
- CBP는 해당 물품의 환산지를 '별관 및 표관' 공청이 수행된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판단

○ 변동 가능성

- 국가별 개별 협정에 따른 관세 조정 가능

2. 제232조 품목별 추가 관세 근거 규정 및 지침

- 자동차-자동차 부품: 대통령 포고령 10925호에 따른 품목
 - (자동차) CBP 지침 CSMS #64624801_J04.02)
 - (자동차 부품) CBP 지침 CSMS #64916652_J05.01)
 - (USMCA) CBP 지침 CSMS #65849652_J07.16)
- 철강-철루미늄 및 파생상품: 대통령 포고령 10947호에 따른 품목
 - (철강 및 철강 파생상품) CBP 지침 CSMS #65236374_J06.03)
 - (철강 파생상품) 품목 확대 적용 CBP 지침 CSMS #65936570_J08.15)
 -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파생상품) CBP 지침 CSMS #65236645_J06.03)
 - (알루미늄 파생상품) 품목 확대 적용 CBP 지침 CSMS #65936615_J08.16)
- 반제품 구리 및 파생상품: 대통령 포고령 10962호에 따른 품목
 - (구리 및 구리 파생상품) CBP 지침 CSMS #65794272_J07.31)
- 목재 및 파생상품: 대통령 포고령 제10976호에 따른 품목
 - (연목, 삶대 장식, 주방 캐비닛) CBP 지침 CSMS #66492057_J10.10)
- 그 외 제품
 - (캐나다) 에너지 자원, CBP 지침 CSMS #64297449_J03.03)
 - (캐나다) 칼륨(Potash), CBP 지침 CSMS #64336027_J03.06)
 - (멕시코) 칼륨(Potash), CBP 지침 CSMS #64335789_J03.06)



KIOI

Center for Korea Studies at Yonsei University

3. EEPA에 따른 상호관세 추가 여부

-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자동차·자동차 부품 관세부과 시**
 - 동 법(제232조)에 따른 할당 가치에 대한 할당 관세와 상호관세는 모두 제외
 - 동 법(제232조)에 따른 일부미봉 가치에 대한 할당 관세와 상호관세는 모두 제외
 - 동 법(제232조)에 따른 구리 가치에 대한 할당 관세와 상호관세는 모두 제외
-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철강·일부미봉 관세부과 시**
 - 철강과 일부미봉은 할당 가치에 따른 품목부과 가능하며, 상호관세는 제외
 - 단, 파생상품의 경우 비할당 가치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반도체 구리 및 파생상품 관세부과 시**
 - 할당 가치에 따른 품목관세 부과 및 비할당 가치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목재 및 파생상품 관세부과 시**
 - 연목, 실내 장식 기구, 주방 캐비닛과 세면대 등 대상 품목은 상호관세 제외
 - 그 외 목재 및 파생상품은 상호관세 부과
- 그 외 제품
 - (TPP) 보세 입시 수입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신고된 상품은 제외
 - (USMCA) USMCA 기준 충족 시 제외, 미충족 시 부과
 - (캐나다) USMCA 기준 미충족 에너지 자원(10%), 합류(10%) 부과
 - (멕시코) USMCA 기준 미충족 합류(10%) 부과
- 환중국 상호관세 현황
 - 행정명령 제14334호(08.11)에 따라 11월 10일까지 한일 유지(중 54% 중, 24% 유예)
 - 행정명령 제14298호(05.12)에 따라 국가별 10%+(24% 유예중)+아미아인 관세 20% 유지

4. EEPA에 따른 추가 관세 변동 가능성

- EEPA에 따른 추가 관세 변동 가능성
 - 미국 헌법상의 대통령 권한 논란으로 인한 소송 진행 중
 - 8월 29일, 美 연방수석합수법원은 EEPA에 근거한 관세정책은 위법하다고 판결함
 - 10월 13일까지 기존 조처의 효력 유지, 트럼프 행정부 대법원 상고 시사
 - 11월 5일, 대법원은 EEPA에 근거한 관세의 합법성에 대한 구두 변론 진행 예정

- 행정명령 제14326호 (07.31)의 재고조
 - EEPA에 따른 관세부과 관련 소송 재소 시의 대비책으로 마련됨
 - (신설 조항) Sec. 6. Severability(분리 가능성)

[원문] If any provision of this order, or the application of any provision of this order to any individual or circumstance, is held to be invalid, the remainder of this order and the application of its provisions to any other individuals or circumstances shall not be affected.

- (각주) 본 명령의 특정 조항이나 그 적용이 어떤 개인이나 상황에 대해 무효로 판단되더라도, 본 명령의 다른 조항이나 그 적용은 여전히 효력을 유지합니다.
- 재발 조항(Severability)은 이전 상호관세 관련 발표(07.07)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정책에 대한 헌법성 재고를 위해 삽입한 것으로 해석 가능



«트럼프 고기 행정부» 미국 관세부와 전황 일자

1월

20일	- 트럼프 대통령 취임 - 2월 1일부터 멕시코-캐나다 대상 25% 관세 예고 - 중국에 대한 관세부와 방안 검토 언급
-----	--

2월

1일	- 불법 이민자-판타닐 등 마약 유통을 이유로 캐나다-멕시코 대상 25% 관세부와 행정명령 시행 - 중국 대상 10% 추가 관세 부과 결정
3일	- 멕시코-캐나다 대상 관세 30일간 유예 발표
4일	- 중국에 대한 IEEPA 마약-이민 관세 10% 추가 발표
10일	- 3월 12일부터 철강-알루미늄 수입품에 25% 관세 예고
13일	- 상호관세 부과 예고
26일	- EU에 대한 25% 관세 발표 예고

3월

4일	- 캐나다-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발표(캐나다 에너지 관련 품목 10%) - 중국 대상 20% 관세 적용(기존 10% + 마약-이민 IEEPA 10%)
5일	- 멕시코-캐나다산 자동차 관세 1개월 연기 발표
8일	- USMCA 기존 품목 품목에 대해 멕시코-캐나다산 수입품 관세 연기 - USMCA 기존 미충족 캐나다산 에너지 10%, 철강 10% 관세부과 - USMCA 기존 미충족 멕시코산 철강 10% 관세
9일	- 중국, 미국산 농-축산물 대상 '2차 보복관세' 부과
12일	- 전 세계 철강-알루미늄 수입품에 25% 관세(제232조) 발표
14일	- 캐나다, 미국산 철강-알루미늄 등에 298억 캐나다달러 규모 보복관세 부과 - WTO 분쟁 협의 요청
24일	- 4월 2일부터 베네수엘라산 석유 수입품에 25% 관세부과 발표
26일	- 4월 3일부터 제232조 자동차 관세 25% 부과 예고



KIOI

Global Institute of Foreign Information

4월

1일	- 제232호 근거로 인도네시아 정보 및 자원을 원유 수입의 안보 영향 조사 개시
2일	- 전 세계 수입량의 50% 의존해나올 5일부터 발효 - 국가별 추가세(4월 30일부터) 인도네시아 개지 발표, 베트남 및 캄보디아 - 국가별 관세 철폐: 한국 25%, 중국 34%, EU 22%, 베트남 40%, 미국 32%, 일본 24% - 미국산 무역 제한의 20% 이상인 경우 추가국산 상품(Cashewnut) 25% 적용, 미국산 무역 제한이 20% 미만인 경우 전체 가치에 대해 관세 부과
3일	- 제232호 근거로 외국인 지원자에 25% 관세 부과
4일	- 제232호 근거로 알루미늄 화물선량 25% 관세 부과 - 러시아산 알루미늄 제품과 200% 고율 관세 적용 - 중국, 4월 1일부터 미국산 수입품에 24% 보편관세 부과 예고
5일	- 전 세계 대상 10% 관세 발표
6일	- 중국 보편관세 대상 제품에서 10% 관세 84%로 수입, 자국 관세 포함 수입 104% 관세 부과
9일	- 중국, 자국 관세 84%로 인상 - 유럽과 대동원, 중국 대외 국가 내산 관세관세 20% 관세 포함(21일 부당까지) - 대동원 관세 12%로 수입, 대외 관세 포함 수입 관세 140%
12일	- 스페인으로부터 인도계 제조업체 등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
15일	- 제232호 근거로 중국 상품 및 자생상품 수입의 안보 영향 조사 개시
20일	- 제232호 근거로 자일렌 및 우물 수입, 도관 제도 도입 - 관세당국에 총 통관부과 요청

5월

3일	- 중국 수출 수역 관세 기준 폐지
4일	- 미국 석유 정제에 100% 관세부과 예정 발표
5일	- 미국 무역제한의 발효 - 미국-영국산 자동차 11만 대까지 25% → 10%로 관세, 칠갑 알루미늄 25% 관세 폐지 - 영국-미국산 농산물 등 수입 제한 수동
10-11일	- 미국 무역에 20%의 수입 개시
12일	- 미국, 상호관세 제로 전면 합의(20일 기준) - 대동원 관세 140% → 20% - 중국 관세 120% → 10%
14일	- 중국산 자동차가 2만 3천 대 관세 120% → 84%로 인하
22일	- 프랑스 자동차, 5월 7일부터 EU 대상 50% 관세부과 예고 - 대동원 최고 25% 관세부과 예고, 미국은 7월 내 연산 목표
25일	- EU 대상 50% 관세 7월 5일까지 부세 발표
28일	- 미국 연방 규제당국, 유럽산 알루미늄(20%관세)에 대해 시장 규제 권고
29일	- 미국 연방 규제당국, 상호관세 실시 계획 발표
30일	- 유럽과 대동원, 칠갑 알루미늄 제품 관세 25% → 50% 인상 발표

6월

3일	- 프랑스 자동차, 칠갑 알루미늄 관세 인상 예고(3일 기준)
4일	- 칠갑 알루미늄 제품 50% 관세 발표 - 중국 대상 무역 제한(25%) 적용



KIOI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개발협력연구원

2월

- 2월**
 - 2월 15일: 2018년 2월 15일 ~ 2018년 2월 15일
 - 2월 15일: 2018년 2월 15일 ~ 2018년 2월 15일
- 17일**
 - 2월 17일: 2018년 2월 17일 ~ 2018년 2월 17일
 - 2월 17일: 2018년 2월 17일 ~ 2018년 2월 17일
- 18일**
 - 2월 18일: 2018년 2월 18일 ~ 2018년 2월 18일
 - 2월 18일: 2018년 2월 18일 ~ 2018년 2월 18일
- 19일**
 - 2월 19일: 2018년 2월 19일 ~ 2018년 2월 19일
 - 2월 19일: 2018년 2월 19일 ~ 2018년 2월 19일

3월

- 3월**
 - 3월 1일: 2018년 3월 1일 ~ 2018년 3월 1일
 - 3월 1일: 2018년 3월 1일 ~ 2018년 3월 1일
- 7일**
 - 3월 7일: 2018년 3월 7일 ~ 2018년 3월 7일
- 14일**
 - 3월 14일: 2018년 3월 14일 ~ 2018년 3월 14일
- 15일**
 - 3월 15일: 2018년 3월 15일 ~ 2018년 3월 15일
- 16일**
 - 3월 16일: 2018년 3월 16일 ~ 2018년 3월 16일
- 17일**
 - 3월 17일: 2018년 3월 17일 ~ 2018년 3월 17일
- 30일**
 - 3월 30일: 2018년 3월 30일 ~ 2018년 3월 30일

4월

- 4월**
 - 4월 1일: 2018년 4월 1일 ~ 2018년 4월 1일
 - 4월 1일: 2018년 4월 1일 ~ 2018년 4월 1일
- 4일**
 - 4월 4일: 2018년 4월 4일 ~ 2018년 4월 4일
- 10일**
 - 4월 10일: 2018년 4월 10일 ~ 2018년 4월 10일
- 30일**
 - 4월 30일: 2018년 4월 30일 ~ 2018년 4월 30일

10월

- 3일**
 - 제301호 근거 중국 선박 수수료 부과 지침 발표(10월 14일 적용)
- 10일**
 - 제232호 목재 및 파생상품 관세 관련 세부 지침 발표(10월 14일 적용)



KIOI

Center Institute of Higher Education

(10차) 한-미 무역협상 타결 및 미-중 협상 결과 반영_11.26.

2025년 미국의 최신 관세부와 현황표*										
세목	품목명	관세부율					비고	기타 적용사항		
		일반관세부율	최소관세부율	최대관세부율	관세부율	관세부율		관세부율	관세부율	관세부율
농산물	밀	0%				0%				
	밀(수출용)	0%				0%				
	밀(수입용)	0%				0%				
	밀(수출용)	0%				0%				
농산물	밀(수출용)	0%				0%				
	밀(수출용)	0%				0%				
	밀(수출용)	0%				0%				
	밀(수출용)	0%				0%				
농산물	밀(수출용)	0%				0%				
	밀(수출용)	0%				0%				
	밀(수출용)	0%				0%				
	밀(수출용)	0%				0%				
농산물	밀(수출용)	0%				0%				
	밀(수출용)	0%				0%				
	밀(수출용)	0%				0%				
	밀(수출용)	0%				0%				
농산물	밀(수출용)	0%				0%				
	밀(수출용)	0%				0%				
	밀(수출용)	0%				0%				
	밀(수출용)	0%				0%				

* 자료출처: 미국관세청, 미국관세청 홈페이지(www.cbp.gov) 2025. 11. 26.

1. 관세부율: 관세부율의 부속표는 관세부율의 부속표에 따라 관세부율을 결정한다. 관세부율의 부속표는 관세부율의 부속표에 따라 관세부율을 결정한다.

2. 관세부율: 관세부율의 부속표는 관세부율의 부속표에 따라 관세부율을 결정한다. 관세부율의 부속표는 관세부율의 부속표에 따라 관세부율을 결정한다.

3. 관세부율: 관세부율의 부속표는 관세부율의 부속표에 따라 관세부율을 결정한다. 관세부율의 부속표는 관세부율의 부속표에 따라 관세부율을 결정한다.

4. 관세부율: 관세부율의 부속표는 관세부율의 부속표에 따라 관세부율을 결정한다. 관세부율의 부속표는 관세부율의 부속표에 따라 관세부율을 결정한다.

5. 관세부율: 관세부율의 부속표는 관세부율의 부속표에 따라 관세부율을 결정한다. 관세부율의 부속표는 관세부율의 부속표에 따라 관세부율을 결정한다.

구분	관세부율	관세부율	비고
관세부율	0%	0%	관세부율의 부속표에 따라 관세부율을 결정한다.
관세부율	0%	0%	관세부율의 부속표에 따라 관세부율을 결정한다.
관세부율	0%	0%	관세부율의 부속표에 따라 관세부율을 결정한다.



시세를 통한 관세부의 구조 이해하기

▶ 칠감 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

- 해당 관세는 '무역확장법, 제232조 품목별 관세에 HETA 국가별 관세가 더해지면서, 관세 구조가 단순화돼 가장 복잡한 형태로 적용 중
 - (구조) 기존 관세 체계에 ① 제232조 품목별 관세와 ② HETA 상호관세가 더해지는 구조
 - (예시) 생강고는 칠감 파생상품 대상에 이어 알루미늄 파생상품 대상으로 확대된 품목(08.18)
 - ① 제232조 칠감 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 = 칠감 가치에 대한 관세 50%
 - ② HETA 국가별 관세 = (한국산) 비합당 가치에 대한 상호관세 15%
 - ∴ 총 관세 = ①+② = 기존 관세(MFN or FTA 등)

○ 원산지(국가별 파생상품 관세)의 차등 부과

- 이종 구조를 지닌 칠감 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는 원산지(국가)별로 차등 적용 중이며, 한국산은 USMCA를 충족한 품목 외에 가장 낮은 관세를 적용받고 있음

원산지	관세부과율		
1 USMCA 기준 충족	칠감 가치에 대한 관세 50%만 부과		
2 한국산	칠감 가치에 대한 관세 50% + 비합당 가치에 대한 상호관세 15%		
3 USMCA 기준 미충족	칠감 가치에 대한 관세 50% + <table border="1" style="display: inline-table; vertical-align: middle;"> <tr> <td>[캐] 비합당 가치에 대한 상호관세 35%</td> </tr> <tr> <td>[멕시코] 비합당 가치에 대한 상호관세 25%</td> </tr> </table>	[캐] 비합당 가치에 대한 상호관세 35%	[멕시코] 비합당 가치에 대한 상호관세 25%
[캐] 비합당 가치에 대한 상호관세 35%			
[멕시코] 비합당 가치에 대한 상호관세 25%			
4 중국산	칠감 관세 50% + 비합당 관세 10% + 파락 관세 10%		

○ 칠감 파생상품에 이어 알루미늄 파생상품 대상으로 확대된 품목의 관세부과 예시

◀한국산 생강고의 황미 수출 헤크리스드(예시)▶

NO	항목	비고(내부 예시)												
1	관세부과 통항	칠감 파생상품에 이어 알루미늄 파생상품에 적용 확대(08.18) - 대상 품목의 부과 항목 확인(합당 관세, 비합당 관세) <table border="1" style="display: inline-table; vertical-align: middle;"> <thead> <tr> <th>제232조 품목 적용관세</th> <th>제232조 알루미늄 파생상품 적용관세</th> <th>상호관세</th> </tr> </thead> <tbody> <tr> <td>대상</td> <td>대상</td> <td>대상</td> </tr> <tr> <td>칠감 가치에 50%</td> <td>칠감 가치에 50%</td> <td>비합당 가치에 15%</td> </tr> </tbody> </table>	제232조 품목 적용관세	제232조 알루미늄 파생상품 적용관세	상호관세	대상	대상	대상	칠감 가치에 50%	칠감 가치에 50%	비합당 가치에 15%			
제232조 품목 적용관세	제232조 알루미늄 파생상품 적용관세	상호관세												
대상	대상	대상												
칠감 가치에 50%	칠감 가치에 50%	비합당 가치에 15%												
2	품목분류	일체형 냉장고의 품목분류는 HTSUS 8418.10.00												
3	원자재 함유량과 제조지 확인	자사 물품의 칠감 함유량은 40%, 알루미늄 함유량은 20%, 기타 40%												
4	원산지 확인	통 CBP 원산지서신심사 제도를 통한 원산지(한국) 확인												
5	관세율 확인과 총 관세 계산	상품 총가치: 1,000\$ <table border="1" style="display: inline-table; vertical-align: middle;"> <thead> <tr> <th>항목</th> <th>관세부과액(예시)</th> </tr> </thead> <tbody> <tr> <td>칠감 포함</td> <td>400\$ × 50% = 200\$</td> </tr> <tr> <td>알루미늄 포함</td> <td>200\$ × 50% = 100\$</td> </tr> <tr> <td>세관관</td> <td>400\$ × 15% = 60\$</td> </tr> <tr> <td>기존 관세</td> <td>MFN or FTA 등</td> </tr> <tr> <td>총 관세</td> <td>360\$ = 기존 관세액</td> </tr> </tbody> </table>	항목	관세부과액(예시)	칠감 포함	400\$ × 50% = 200\$	알루미늄 포함	200\$ × 50% = 100\$	세관관	400\$ × 15% = 60\$	기존 관세	MFN or FTA 등	총 관세	360\$ = 기존 관세액
항목	관세부과액(예시)													
칠감 포함	400\$ × 50% = 200\$													
알루미늄 포함	200\$ × 50% = 100\$													
세관관	400\$ × 15% = 60\$													
기존 관세	MFN or FTA 등													
총 관세	360\$ = 기존 관세액													

자료: 한국관세지정위원회, HTS-8417, 제232조 품목에 적용



KIOI

Center Institute of Foreign Information

국가별 상품관세 부과 단점*

연번	국가	관세율(%)		
		유선	한정	
1	아르헨티나	10	15	
2	알제리	30	30	
3	앙골라	32	15	
4	방글라데시	35	20	
5	볼리비아	10	15	
6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30	30	
7	부르키나	37	15	
8	브라질 ¹⁾	50	10	
9	브루나이	25	25	
10	캄보디아	35	19	
11	카메룬	11	15	
12	차드	13	15	
13	코스타리카	10	15	
14	코트디부아르	21	15	
15	콩고민주공화국	11	15	
16	에콰도르	10	15	
17	적도기니	13	15	
18	EU	30	MFN 15% 이상 품목	MFN 적용
			MFN 15% 미만 품목	15%(MFN 포함)
19	프랑스의 제도	41	10	
20	피지	32	15	
21	기니	10	15	
22	가이아나	38	15	
23	아이슬란드	10	15	
24	인도 ²⁾	26	25	
25	인도네시아	19	19	
26	이라크	30	35	
27	이스라엘	17	15	
28	일본	25	15	
29	요르단	20	15	
30	카자흐스탄	25	25	
31	카모스	40	40	
32	케냐	50	15	
33	키리바티	30	30	
34	리히텐슈타인	37	15	
35	마다가스카르	47	15	



KIOI

Global Institute of Foreign Languages

36	필리핀	17	15
37	말레이시아	24	19
38	도미니카	40	15
39	폴란드	25	25
40	모잠비크	16	15
41	미얀마	40	40
42	니제르	21	15
43	니우우	30	15
44	뉴질랜드	10	15
45	니카라과	18	18
46	나미비아	14	15
47	북마케도니아	33	15
48	노르웨이	15	15
49	파키스탄	29	19
50	파푸아뉴기니	10	15
51	팔리핀	20	19
52	세인트비	35	35
53	남아프리카공화국	30	30
54	대한민국	25	15
55	스리랑카	30	20
56	스위스	31	39
57	시리아	41	41
58	대만	32	20
59	태국	36	19
60	트리니다드 토바고	10	15
61	튀니지	25	25
62	튀르키예	10	15
63	우간다	10	15
64	미국	10	10
65	베네투	22	15
66	베네수엘라	15	15
67	베트남	40	20
68	잠비아	17	15
69	짐바브웨	18	15

인도: 인도는 2017년 11월 14일 기준 14.2%의 인구를 차지하며, 2017년 기준 14.2%의 인구를 차지하고 있음
 14.2%의 인구를 차지하며, 2017년 기준 14.2%의 인구를 차지하고 있음
 14.2%의 인구를 차지하며, 2017년 기준 14.2%의 인구를 차지하고 있음
 14.2%의 인구를 차지하며, 2017년 기준 14.2%의 인구를 차지하고 있음



1. '트럼프 관세' 개요

○ 배경

- 지속적인 무역적자로 인한 국가 경제 안보의 위협 해소

○ 목적

- 무역적자 시정, 중국산 우회 수출 차단, 해외 투자 유입 촉진, 미국 제조 산업 보호를 통한 미국 중심 보호주의 통상질서 확립

○ 추가 관세 종류

-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품목별 관세, '국제비상경제권법, (IEEPA)에 따른 국가별 관세

법령 근거	대상	발효일	관세	비고	
IEEPA	북미-이안	캐나다	행정명령 제14193호	02.01	미약 수입 차단, 환캐나다 25%, 에너지 10%
			행정명령 제14231호	03.06	철강 10%
			행정명령 제14325호	07.31	USMCA 미준족 35%
	멕시코	행정명령 제14194호	02.01	미약 수입 차단, 환멕시코 25%	
		행정명령 제14232호	03.06	철강 10%	
	중국	행정명령 제14195호	02.01	미약 수입 차단, 환중국 10%	
		행정명령 제14228호	03.03	미약(베트남) 관세 20%	
		행정명령 제14357호	11.04	미약(베트남) 관세 10%	
		행정명령 제14257호	04.02	환세계 10%, 환중국 34%, 국가별 관세 발표 (한국 25%, EU 20% 등)	
		행정명령 제14259호(중국)	04.08	환중국 34% → 84%	
	국가별 관세 (상호관세)	행정명령 제14266호(중국)	04.09	환중국 84% → 125%	
		행정명령 제14298호(중국)	05.12	환중국 125% → 10% (+24% 유예)	
		행정명령 제14326호	07.31	상호관세율 적용 수정 (환한국 25% → 15%)	
		행정명령 제14334호(중국)	08.11	환중국 관세 유예 기존 10% (+24%) 유지	
행정명령 제14358호(중국)		11.04	환중국 관세 인상 중단 기본관세 10%만 부과		



무역확장법 제232조	자동차·자동차 부품	포고령 제10908호	03.26	환세제 25% (USMCA 중독 시 서미국산만 25%)
	철근·철강 파생상품	포고령 제10896호	02.10	환세제 25%
		포고령 제10947호	06.03	환세제 25% + 50%
	알루미늄·알루미늄 파생상품	포고령 제10895호	02.10	환세제 25%
		포고령 제10947호	06.03	환세제 25% + 50%
	반도체·구리 및 파생상품	포고령 제10962호	07.30	환세제 50%
특채 및 파생상품	포고령 제10946호	09.29	환세제 10~25% (중국 10%, EU·일본 15%)	

- ✓ 환적(Transshipment) 차단 조항 신설 (행정명령 14325호, 07.31)
 - 환적을 통한 관세 회피 행위 적발 시, 기본관세에 40% 추가 관세부과
 - 그 외 법에 따른 징벌적 벌금, 세금 및 기타 부과금 모두 적용(검정 또는 면제 불가)
 - 6개월마다 무역 수출 대상 국가 및 시설 리스트 발표(장부 조달, 안보 및 상업 심사 등 반영)
 - 현재 환적(Transshipment)의 정의와 적용기준에 대한 공식 발표 전(미국측 자의적 해석 가능)

환적(Transshipment_CBP 홈페이지)

- 원산지 상품은 NAFTA 역외에서 학어, 재처리, 보존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 또는 캐나다·멕시코·미국으로 운송하는데 필요한 적법 목적 공할 수할 시 원산지 지위를 상실한다.

CBP 의료품 제외 품목

- 의약품 소재를 사용하여 만든 수술 도구와 멕시코산 연 가운과 붕대가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운송되어 삼군 및 포항 공정을 수행
- CBP는 해당 품종의 원산지를 '영문 및 포장' 공정이 수행된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판단

최선 조치 주요내용

- ✓ 국가별 상호관세 발표(행정명령 14326호, CBP 지침 CSMS #65829726, 08.07)
 - 총 89개 경제주체 대상 국가별 관세부과(부속서 1 한국, 일본, EU 등 포함)
 - 부속서 4에 명시되지 않은 국가는 행정명령 14257호에 따른 10% 관세부과
 - (MFN) 외 EU 관세만 명시(15%, MFN 포함)
- ✓ 자동차 부품 관세 상회 지침 발표(CBP CSMS #66884128, 10.31)
 - (수입자 신청) 상부부의 수입 조정 상회 혜택을 부여받은 수입자만 신청 가능
 - (제232조)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관세가 부과된 부분만 상회가능
- ✓ 한-미 무역협상 결과 발표(백악관 팩트시트, 11.13)
 - (자동차부품) EU, 일본과 동일한 수준인 15%로 합의(MFN 포함), 향후 15% 적용
 - (의약품) 최혜국 대우(MFN) 관세
 - (반도체) 경쟁국인 대한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적용
 - (FTA 제2차 지위) 한-미 FTA 중독 품목은 MFN이 15%를 초과하더라도 15%만 적용, EU와 일본은 MFN이 15% 이상이면 상호관세 부과 없이 MFN을 적용
- ✓ 상호관세 범위 수정(행정명령 14360호, CBP 지침 CSMS #66814923, 11.14)
 - 특정 농산물(기타 감귤류, 열대 과일 등)에 대한 상호관세 면제 조치
 - 브라질산 특정 농산물(기타 감귤류, 열대 과일 등)에 대한 상호관세 면제 조치(CSMS #66871900, 11.14)



KIOI

www.kioi.or.kr

2. 제232호 품목별 추가공제 근거 규정 및 지원

- ① 자동차·자전거 부품: 대통령령 제10925호에 따른 품목
 - (자동차) CBP 지원 CSMS #64624801_104.02)
 - (자동차 부품) CBP 지원 CSMS #64916652_105.01)
 - (USMCA) CBP 지원 CSMS #65049652_107.10)
- ② 철강·철무늬롤 및 파생상품: 대통령령 제10947호에 따른 품목
 - (철강 및 철강 파생상품) CBP 지원 CSMS #65236374_106.03)
 - (철강 파생상품) 품목 확대 적용 CBP 지원 CSMS #65936570_108.15)
 - (철무늬롤 및 철무늬롤 파생상품) CBP 지원 CSMS #65236645_106.03)
 - (철무늬롤 파생상품) 품목 확대 적용 CBP 지원 CSMS #65936615_108.15)
- ③ 반도체 구리 및 파생상품: 대통령령 제10962호에 따른 품목
 - (구리 및 구리 파생상품) CBP 지원 CSMS #65794272_107.31)
- ④ 목재 및 파생상품: 대통령령 제10976호에 따른 품목
 - (면목, 실내 장식, 주방 캐비닛) CBP 지원 CSMS #66492057_110.10)
- ⑤ 그 외 제품
 - (제니코) 배너지 장판, CBP 지원 CSMS #64297449_103.03)
 - (제니코) 칠공(Powah), CBP 지원 CSMS #64336037_103.06)
 - (제시크) 칠공(Powah), CBP 지원 CSMS #64335769_103.06)

3. 제232호에 따른 상호관세 추가 적용

- ① 무역협정법 제232조에 따른 **자동차·자전거 부품 관세부과 시**
 - 통 관(제232조)에 따른 철강 기자재 대한 철강 관세에 상호관세는 모두 제외
 - 통 관(제232조)에 따른 철무늬롤 기자재 대한 철강 관세에 상호관세는 모두 제외
 - 통 관(제232조)에 따른 구리 기자재 대한 철강 관세에 상호관세는 모두 제외
- ② 무역협정법 제232조에 따른 **철강·철무늬롤 관세부과 시**
 - 철강과 철무늬롤은 철강 기자재 위한 용접부과 카노우어, 상호관세는 제외
 - 단, 파생상품의 경우 배합량 기자재 대한 상호관세 부과
- ③ 무역협정법 제232조에 따른 **반도체 구리 및 파생상품 관세부과 시**
 - 면목, 실내 장식, 주방 캐비닛과 세면대 및 대금 용품은 상호관세 제외
 - 그 외 목재 및 파생상품은 상호관세 부과
- ④ 그 외 제품
 - (TSP) 배너지 시 수납 장치에 따라 특별하게 상호관세 상품과 제외
 - (USMCA) USMCA 기준 품목 시 제외, 미품목 시 부과
 - (제니코) USMCA 기준 품목에 제니코 지원(10%), 칠공(10%) 부과
 - (제시크) USMCA 기준 미품목 칠공(10%) 부과
- ⑤ 환율국 상호관세 현황
 - 통관협정 제14296호(06.12)에 따라 국가별 10%+3.4% 유예율(+미양-미양 관세 30% 부과)
 - 통관협정 제14334호(08.11)에 따라 11월 10일까지 현행 국가(총 54% 중, 3.4% 유예)
 - 통관협정 제14357호(11.04)에 따라 현(미양 관세 10%로 인하)
 - 통관협정 제14358호(11.04)에 따라 관세 인하(+2.4%) 종료, 기존관세 10%만 부과



4. '트럼프 관세' 시사점

① IEPPA에 따른 추가 관세 변동 가능성

- 미국 헌법상의 대통령 권한 논란으로 인한 소송 진행 중
- 8월 29일, 美 연방순회합소법원은 IEPPA에 근거한 관세장벽은 위법하다고 판결함
- 10월 13일까지 기존 조치의 효력 유지, 트럼프 행정부 대법원 상고 시사
- 11월 5일, 美 연방대법원에서 IEPPA에 근거한 관세의 합법성에 대한 구두 변론 진행
- 美 연방대법원의 공식 판결 선고일은 확정되지 않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IEPPA를 대체할 법적 근거를 검토하고 있음

② 행정명령 제14326호 (07.31)의 제6조

- IEPPA에 따른 관세 부과 관련 소송 패스 시의 대비책으로 보여짐
- (산실 조항) Sec 6. Severability(분리 가능성)

(원문) If any provision of this order, or the application of any provision of this order to any individual or circumstance, is held to be invalid, the remainder of this order and the application of its provisions to any other individuals or circumstances shall not be affected.

- (국문) 본 명령의 특정 조항이나 그 적용이 어떤 개인이나 상황에 대해 무효로 판단되더라도, **본 명령의 다른 조항이나 그 적용은 여전히 효력을 유지합니다.**
- 해당 조항(Severability)은 이전 상환관세 관련 발표(07.07)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장벽에 대한 연방심 재고를 위해 삽입한 것으로 해석 가능

<트럼프 2기 행정부> 미국 관세부과 현황 일지

1월

20일

- 트럼프 대통령 취임
- 2월 1일부터 멕시코-캐나다 대상 25% 관세 예고
- 중국에 대한 관세부과 방안 검토 언급

2월

1일

- 불법 이민자-컨타이너 등 무역 유입을 이유로 캐나다-멕시코 대상 25% 관세부과 행정명령 시행
- 중국 대상 10% 추가 관세 부과 명령

3일

- 멕시코-캐나다 대상 관세 30일간 유예 발표

4일

- 중국에 대한 IEPPA 파악-이전 관세 10% 추가 발표

10일

- 3월 12일부터 철강-알루미늄 수입품에 25% 관세 예고

13일

- 상호관세 부과 예고

26일

- EU에 대한 25% 관세 발표 예고



KIOI

Center for International Trade & Investment

3월

4일	- 캐나다-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발효(캐나다 에너지 관련 품목 10%) - 중국 대상 20% 관세 적용(기존 10% + 마약-이민 (IEPA) 10%)
5일	- 멕시코-캐나다산 자동차 관세 1개월 연체 발효
6일	- USMCA 기존 품목 품목에 대해 멕시코-캐나다산 수입품 관세 연체 - USMCA 기존 미중품 캐나다산 에너지 10%, 항공 10% 관세부과 - USMCA 기존 미중품 멕시코산 항공 10% 관세
9일	- 중국, 미국산 농·축산물 대상 '2차 보복관세' 부과
12일	- 전 세계 칠간-일루미늄 수입품에 25% 관세(제232조) 발효
14일	- 캐나다, 미국산 칠간-일루미늄 등에 298억 캐나다달러 규모 보복관세 부과 - WTO 분쟁 협의 요청
24일	- 4월 2일부터 베트남수출러산 석유 수입국에 25% 관세부과 발효
26일	- 4월 3일부터 제232조 자동차 관세 25% 부과 예고

4월

1일	- 제232조 근거로 반도체-제조 장비 및 리튬-원료 수입의 안보 영향 조사 개시
2일	- 전 세계 수입품에 10% 기본관세(4월 5일부터) 발효 - 국가별 추가관세(4월 9일부터) '상호관세' 계획 발표, '해방의 날' 명명 - 국가별 관세 발표: 한국 25%, 중국 34%, EU 20%, 베트남 40%, 대만 32%, 일본 24% - 미국산 부품 함량이 20% 이상인 경우 비미국산 부분(Contents)만 25% 적용, 미국산 부품 함량이 20% 미만인 경우 전체 가치에 대해 관세부과

3일	- 제232조 근거로 미국산 자동차에 25% 관세부과
4일	- 제232조 근거로 일루미늄 파생상품 25% 관세부과 - 러시아산 일루미늄 제품어 200% 고통관세 적용 - 중국, 4월 10일부터 미국산 수입품에 34% 보복관세 부과 예고
6일	- 전 세계 대상 10% 관세 발효
8일	- 중국 보복관세 대응 차원에서 대중국 관세 84%로 수직, 마약 관세 포함 누적 104% 관세 부과
9일	- 중국, 대미 관세 84%로 인상 - 트럼프 대통령, 중국 제외 국가 대상 상호관세 90일 유예 발표(7월 9일까지) - 대중국 관세 125%로 수직, 마약 관세 포함 누적 관세 145%
12일	- 스마트폰-컴퓨터 반도체 제조장비 및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
15일	- 제232조 근거로 칠간 광물 및 파생상품 수입의 안보 영향 조사 착수
20일	- 제232조 근거로 자동차 및 부품 수입 조정 제도 도입 - 관세 상해금 등 품목 부과 조정



KIOI

Global Institute of Foreign Affairs

5월

2일	- 중국-중국 소액 연세 기준 폐지
4일	- 해외 제작 영화에 100% 관세부과 방침 발표
9일	- 미-중 무역협약 발표 - 미국: 영국산 자동차 10만 대까지 25% → 10%로 인자, 칠강-일루미늄 25% 관세 폐지 - 영국: 미국산 농산물 등 시장 개방 수용
10-11일	- 미-중 제너바 고위급 회담 개최
12일	- 미-중, 상호관세 대폭 인하 합의(90일간 유효) - 대중 관세: 145% → 30% - 대미 관세: 125% → 10%
14일	- 중국산 800달러 미만 소모 관세 120% → 54%로 인하
23일	- 트럼프 대통령, 6월 1일부터 EU 대상 50% 관세부과 예고 - 애플에 최소 25% 관세부과 예고, 아이폰 미국 내 생산 촉구
25일	- EU 대상 50% 관세 7월 9일까지 유예 발표
28일	- 미 연방 국제통상법원, 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IEEPA) 시행 금지 판결
29일	- 미 연방 항소법원, 상호관세 일시 복원 명령
30일	- 트럼프 대통령, 칠강-일루미늄 제품 관세 25% → 50% 인상 발표

6월

3일	- 트럼프 대통령, 칠강-일루미늄 관세 인상 보고문 서명
4일	- 칠강-일루미늄 제품 50% 관세 발표 - 중국 대상 무역이민(IEEPA) 적용



KIOI

Global Economic & Policy Information

7월

2일	- 미-세르본 무역협약 발표 - 베트남산 수입품 관세 48% → 20% 단절관세 - 원적 물품에 40% 그룹 관세부과
7일	- 트럼프 대통령 공식서한 발표, 상호관세 유예 종료 시험 연기 - 한국 일본 물품 관세 서한 공개, 8월 1일부터 한국산 제품 전면 25% 관세 종료
30일	- 반기론 구리제품 구리 파생상품에 6월 1일부터 50% 관세부과 발표 - 브라질 제품에 9월 8일부터 40% 관세부과 발표 - 8월 29일부터 모든 국가 대상 소액 면세 제도 중단
31일	- 캐나다 제품에 9월 1일부터 35% 관세부과 발표 - 상호관세를 수렴한 발표(8월 7일 발표) - 동국관 조EPA에 따른 미역 미면 관세 20% + 국가별 관세 10% 적용 유지

8월

6일	- 트럼프 대통령 반도체 관세부과 가능성 시사 - 인도산 제품에 관세 25% 인상 발표(카시미 지역 제외)
7일	- 한국산 물품 상호관세 15% 발표
11일	- 중국 상호관세 유예 발표(11월 10일까지)
13일	- 트럼프 대통령 전략적 통상 지역을 비축할 확보 명령
15일	- 철강 알루미늄 관세 적용 범위 확대(407개 품목, 9월 18일부터 적용) - 철강 알루미늄 협정 가치에 12만 관세 50%, 비협정 부분은 국가별 관세부과 - 미국에서 제2차 조 조된 경우 0%, 영국산 25%, 러시아산 200%
18일	- 철강 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 적용 범위 확대(407개 품목) 시행
21일	- 미국-EU 무역협정에 관한 공동성명문 발표 - 반도체, 의약품, 목재에 대한 관세를 15% 이하 보장 - 제232조 자동차 자동차부품 관세 관련 공동성명 발표 ① (조건) EU의 미국산 물품에 대한 관세 인하 시행을 위한 입법안 공식 제출 ② MFN 15% 이상인 품목은 MFN 적용 ③ MFN 15% 미만인 품목은 15% 상호관세 부과(MFN 포함)
29일	- 동맹국 회담수업권, EFTA에 근거한 상호관세 위협 완화 ① 관세 대상은 상호관세 및 무역 관세(중국, 멕시코, 캐나다) ②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구리 등 제232조 품목관세는 무역협정에 근거하였으므로, 이번 관세의 대상이 아님 ③ 2025년 10월 13일까지 기존 조치의 효력 유지 ④ 트럼프 행정부, 대법원 상고 시사

9월

4일	- 미국 일본 협정 이행 발표(행정명령 제14345호) ① 자동차, 자동차 부품, 항공우주 제품, 의약품 및 미국에서 생산이 어려운 품목 등에 별도의 분야별 특별 적용 ② MFN 15% 이상인 품목은 MFN 적용 ③ MFN 15% 미만인 품목은 15% 상호관세 부과(MFN 포함)
8일	- 상호관세 범위 수정 및 무역, 반도 협정 이행 절차 수립 발표(행정명령 제14346호) ① 미국-EU 무역협정 이행 ② EU의 특정 조건(입법안 제출) 이행에 따라 제232조 품목별 관세 인하 이행 ③ 자동차-자동차 부품, 의약품 및 반도체 대상 15% 관세 부과 ④ 철강-알루미늄-구리에 대한 관세는 50% 유지



KIOI

Korea Institute of International Economic Research

<p>29일</p>	<p>- 제232호 근거 국제 및 과당상품 수입 조정 발표(포고령 제10976호) ① 연육 및 육재: 10% ② 실내 장식 가구: 25%(2026.01.01. 이후 50% 예정) ③ 주방 캐비닛 및 세면대의 부품: 35%(2026.01.01. 이후 50% 예정) ④ 대영국 관세: 10% ⑤ 대EU-일본 관세: 15%(MFN 포함) ⑥ 10월 14일 적용</p> <p>- 제232호 추가 품목 관세 발표 ① 반도체 ② 의약품 ③ 상업용 항공기 ④ 농작물터번 ⑤ 로봇 ⑥ 무인 항공 시스템 ⑦ 개인 보호 장비 등 품목에 대해 상무부 조사 진행 중</p>
<p>10월</p>	
<p>3일</p>	<p>- 제301호 근거 중국 선박 수수료 부과 지침 발표(10월 14일 적용)</p>
<p>10일</p>	<p>- 제232호 국제 및 과당상품 관세 관련 세부 지침 발표(10월 14일 적용)</p>
<p>17일</p>	<p>- 제232호 근거 중대형 차량 및 부분품, 버스에 대한 관세 발표(11월 1일 적용)</p>
<p>29일</p>	<p>- APEC 한-미 정상회담 중, 한-미 무역 협상 타결</p> <p>- 중대형 차량 및 버스(MHDPV)에 대한 관세부과 지침 발표 ① 완성차: 25%(기타) 차량 10% ② USMCA 기준 충족: 비 미국산 부품 가치만 25%(일부 품목 0%)</p> <p>- 중대형 차량 및 버스의 부품(MHDPVP)에 대한 관세부과 지침 발표 ① 부품: 25% ② USMCA 기준 충족: 0%(완성차 분해 기증나 부품 세트 제외)</p>
<p>30일</p>	<p>- 한국서 개최된 미-중 정상회담, 우일차량부분 협정 이행 합의(11월 10일 적용) ① 미국+중국: 상호관세 인상 중단 및 현대일 관세 인하, 1년간 입항 수수료 유예, 일부 대용재제 및 조사 권한 강화 ② 중국+미국: 최우량 및 핵심품목 수출규제 유예, 미국산 대우, 수수료, 원적 구매, 미국산 농수산물 수입 관세 유예</p>
<p>31일</p>	<p>- 美 CBP 자동차 부품 수입에 대한 관세 상회 지침 발표</p>
<p>11월</p>	
<p>4일</p>	<p>- 환동 현대일 관세 10% 인하(행정명령 제14357호, 11월 10일 적용) - 환동 상호관세 인상 중단 및 기본관세 10% 부과 연장(행정명령 제14358호)</p>
<p>13일</p>	<p>- 한-미 무역협상 결과 발표(백악관 메모리엄) ① 자동차자동차 부품: 15%(MFN 포함), EU 및 일본과 동일 수준 ② 의약품: 최혜국 대우(MFN 적용) ③ 항공기부품, 제대형 의약품, 미국내 비생산 원천자본: 0% ④ 반도체: 경쟁국인 대한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적용 ⑤ 상호관세: FTA 활용 시, MFN이 15%를 초과한다면 15%만 적용 (EU 및 일본은 15% 초과 시, MFN 적용) ⑥ 발표: 한국 국회 비준 후 일정에 따라 적용 (11월 비준 시, 1월 기준 소급 적용)</p>
<p>14일</p>	<p>- 특정 농산물에 대한 상호관세 면제 조치(비자유화 품목) - 기타 감공품(메드포그, 열대 과일, 콩고콩) 대부분이 자 기지파 베이커리, 마사이, 오렌지, 자몽 등 특정 농산물에 대한 상호관세 면제</p>



붙임. 2 무역원산지리포트 기고문 취합본

(1분기) APEC Green Customs for MSMEs Workshop(환경규제와 세관 역할 중심)





들어가기

기후변화를 비롯한 환경문제는 정치적·경제적 복잡성이 깊어지는 양세계적 차원의 문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공約, 민간 분야의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1995년 WTO 체제 아래 무역환경위원회(Committee on Trade and Environment: CTE)가 설치된 이후 2001년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DDA) 협상¹⁾이 진행되면서, 국제무역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효율적 방안 중 하나로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최근 환경규제는 환경 보호라는 공약의 목적을 넘어,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무역주체적 요소와 결합하는 등 다변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1) DDA 협상대상: 자유무역 31년째 지속 3개의 협상대상체 ● WTO 규범과 자유무역협정이(AFTA)의 독립무역협정의 관계, ● WTO와 ASEAN 사무의 긴밀고한 협력과 31년째 지속, ● 환경 보호 및 서비스와 관련 무역협정의 자유무역 협정과 다른 3개의 22개국에 ● 환경규제와 무역협정의 상호작용, ● 무역협정의 협정의 최종 수단, ● 자유 무역협정의 구상



사제로 EU의 CBAM²⁾과 같은 환경규제는 관세당국의 최종 제품에 따라가거나 공급망 전체를 규제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어 기업의 입장에서 부담이 더욱 과중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환경규제 다변화 속에서 지난 2025년 2월 24-25일 중소기업(MSMEs)이 직면하는 도전과 기회를 논제하기 위한 APEC Green Customs for MSMEs Workshop³⁾이 광주에서 개최되었다. 관세청, 한국통관자정보원, 대한한국FTA운산지연구회 세 기관의 협력을 통해 진행된 행사에서는 중소기업의 환경규제 대응전략과 이를 위한 세관의 역할에 대한 논제가 진행되었다. 본고에서는 2025년 APEC Green Customs for MSMEs Workshop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프로그램]

Day 1 (2025. 2. 24) Green Customs for MSMEs Workshop	
SESSION 1	Environmental Regulation Issues and International Responses
SESSION 2	Carbon Neutrality Strategy and Improved Customs Clearance
SESSION 3	Challenges and Responses of Customs Authorities Related to Green Customs
SESSION 4	Supply Chain Management for Seamless Cross-Border Movement of Environment-Friendly Products
Day 2 (2025. 2. 25) Showcase of Customs Technology	
Showcase 1	X-ray training program
Showcase 2	AI-based tracking system for high-risk passengers
Showcase 3	Passenger verification (facial recognition)
Showcase 4	3D multi-function radiation detection system
Showcase 5	Virtual Reality (VR) Training System

2) 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이란 탄소배출량 감축 규제가 강한 국가에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국가로 탄소배출이 이전되는 탄소유출(Carbon Leakage)을 예방하기 위해 EU가 도입하고자 하는 탄소국경조정장치로, 세관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로서, 특히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한 CBAM 적용시기 규제를 연구하는 데가 주목할

3) APEC은 미국, 중국, 한국, 일본 등 21개국이 참여하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로, 우리나라는 2025년 APEC 정상회의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동 협회에게 당시 2025년 2월 24일부터 14일간 광주에서 개최 예정인 APEC Green Customs for MSMEs Workshop에 유망한 기업 지원 및 APEC Green Customs for MSMEs Workshop의 진행



KIOI

Center Institute of Foreign Languages



Green Customs for MMEs Workshop 422



2. 다자간환경협약과 세관의 역할 논의

다자간환경협약(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MEAs)은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여러 국가 간에 체결되어 법적 구속력을 갖는 협약으로, 현재 전 세계 250개 이상의 MEAs가 체결되어 있다.

이러한 환경협약의 특징 중 하나는 협약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여러 무역규제조치를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 이행을 위한 「몬트리올 의정서」, 제4조는 특정 규제물질의 수출입 금지 및 비당사국과의 무역 통제를 명시하고 있으며, 「바젤협약」, 제4조 역시 유해 폐기물 및 기타 폐기물의 비당사국 수출·수입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출처: 세관청, 환경부, 무역위원회



중소기업

문제는 이러한 규제가 특히 중소기업(MSMEs)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정보 접근성이 제한적이며, 규제 준수를 위한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 또한, 기술 개발 및 대체 에너지 활용과 같은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 기술적 역량이 부족하여 규제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취약할 수 밖에 없다.

이때 본 워크숍에서는 중소기업의 환경 규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이 중요적으로 논의되었으며, 특히 불분 불균을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세관의 역할이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다. 논의를 주요 사항 중 하나는 중소기업에 환경규제를 효과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세관 직원들 정보 제공이 절실하다는 점이었다. 이를 위해 세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 확대, 기업 컨설팅을 통한 규제 정보 제공, 국내 유관 기관 및 세계관세기구(WCO), 유엔환경계획(UNEP, MEAs) 사무국 등과의 지속적인 협력 강화 필요성 등이 강조되었다.

3. Green Customs 사례 소개

이어서 한국,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칠레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각국의 환경규제 및 다자간협약에 대응하는 세관 운영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들은



KIOI

Center for International Trade & Investment



장부 및 세관 처리의 규제 대응 노력무를 소개하며, 불법 환경 범죄 저감을 위한 조치와 Green Customs 실현을 위한 전략적 방안을 논의하였다.

한국 사례로는 친환경-임사업용 임업 수출 지원 전략이 소개되었으며, 해당 발표는 한국임산지정보관리국 오윤진 팀장이 진행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함의가 가속화됨에 따라, 한국에서도 이에 발맞추어 친환경 및 임사업용 임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GR 인증^{*)}, 재제조제품 품질인증^{**)}, 플러모 시스템^{***)} 등 다양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또 실질은 미려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세관 차등적 구제적인 수출 지원 방안 마련이 필수적이라 주장하며, 특히 해당 산업 계층의 FTA 협정문에 적용 가능한 검토, 산업 변화에 따른 FTA 원산지규정 개정 및 정책적 개선 등이 핵심 과제임을 강조했다.

[한국 방문규제 대응 사례 소개]

연도	주제	주요 내용
Jun XU (China)	Enforcement Cases of Illegal Import of Vietnam	중국 국기를 철수 사례 소개
Hidayat ACHMAD (Indonesia)	Customs Clearance System for the Prevention of Illegal Timber Exports	인도네시아 불법 목재 수출에 관한 세관 통칙 및 사례 소개
Haer RAZALI (Malaysia)	Export Support Strategy for Products (palm oil) in Compliance with Regulations on Prevention of Deforestation	지속가능한 팜 오일 수출을 위한 말레이시아 세관 지원 방안 소개
Tuan Hung HA (Viet Nam)	Circular Economy in Waste Management in Vietnam	폐유류 폐기물 수입 관련 법령 및 불법 폐기물 수입에 대한 세관 사례 소개
Remunda (PHILIP) (China)	Transformative Bioprocesos: The Green Future of Contraband Cigarettes	담배 담배 흡수에 대한 세관 사례 소개
Yungh OH (Korea)	Strategy for Export Support for Eco-friendly and Upgrading Industry	친환경-임사업용 임업 수출지원 전략 소개

*) GR(Cost Reduced Product) 인증: 제품을 수출할 때의 원료(소재)를 저감하여 수출해 놓는, 친환경적 통관 인증기 인증제도는 KIOI
 **) 국제수익-공급자-조각-제조업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재료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인공 재질(인공) 재료 사용에 대한 통관 인증기 인증제도는 KIOI
 ***) 플라스틱 재활용이 가능한 비가역적 전 과정을 인공 또는 재생원자(인공)인공(인공)을 적용하여, 공정이 위한 폐기물 중립의 시스템



4. 맺음말

이번 APEC Green Customs for MSMEs Workshop에서는 중소기업이 직면한 환경규제에 대해 대한 대응 방안을 다각도로 논제하였다. 특히, 스펀진 규제 정보 제공 체계 구축, △세관 역할 강화, △국제 협의 확대 등과 같은 세관 차원의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오늘날 환경규제는 글로벌 무역의 핵심 요인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으며,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금번 워크숍을 통한 논의를 바탕으로, 향후 중소기업이 미룰 리스크가 아닌 성장의 기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정책 지원이 마련되길 기대해 본다.





KIOI

Center Institute of Foreign Information

(2분기) 한국원산지정보원과 함께하는 미국 통상정책 및 원산지 대응(CBP 관정 중심)



- 2025년 2분기 통상 동향에 대해 전해주는 "통상" 통상정책
- 미국 비특혜원산지 편집 및 수출입 관련 주요 동향 제공
- CBP 통상 사례를 통해 원산지 편집을 위한 체크리스트 및 실무 사례를 소개하고 통상 대응 방안을 소개

1. 들어가며

미국 원산지정보원 KIOI

2025년 유엔의 '대통령 재선으로 출범한 제47기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지지 강하게 내세우며, 통상 정책 전반에 걸쳐 급격한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특히 미국이 무역에 있어 보호, 자국 산업 보호, 국가 안보 등을 명분으로 관세 조지 강화 및 무역 협상 재협상 등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한국원산지정보원은 2025년 2분기 통상 동향들을 소개하고 미국 비특혜원산지



현행 사례 분석, CBP¹⁾ 사전심사 가이드 작성, 신출발 관련 이슈 대응 등 다양한 연구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2025년 상반기 동안 추진된 주요 성과를 중심으로 한국원산지정보원의 활동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2025년 상반기 KIOI 미국 통상 정책 및 비특혜원산지 대응 주요 성과

번호	주요 성과
1.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사례집 발간
2.	미국 CBP 사전심사 제도 활용 가이드북 및 동영상 제작 배포
3.	포괄세무과 현행 SCM 제공 및 기업 지원 설명회 개최

2.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사례집 발간

2-1.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Origin Case」 발간

미국은 비특혜원산지 판정 시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무역협정법 제232조, 무역법 제301조, 정부조달협정(GPA)²⁾ 등 다양한 통상 규제의 정책 집행 과정에서 원산지 판정하는 핵심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FTA 등에서 적용되는 특혜원산지 기준과 상이하기 때문에, 동일한 제품이라 하더라도 정책 목적에 따라 서로 다른 원산지로 판단되는 「이중 원산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실질적 변형 기준은 가공의 복잡성이나 제품의 본질적 성격의 변화 여부 등 정성적 판단 요소에 기반하기 때문에, 미국 CBP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예측하기 어려운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통상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다 선명한 사전 검토와 해석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한국원산지정보원은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과 관련된 법적 기준과 실무 사례를 정리한 「ORIGIN CASE」를 발간하였다. 본 간행물은 미국 CBP가 발표한 주요 사전심사

1)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2) 정부조달협정(GPA: 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



KIOI

Global Business in Higher Education



현장 사례들을 분석한 것으로, 우리 기업들이 자사 제품의 원산지 판단 리스크를 사전에 인지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ORIGIN CASE에는 SE 케미칼, 냉동 야류, 전동 모터 등 46건의 품목 사례를 수록하였으며, 각 사례는 품목 개요, 제조공정, 핵심 원료, 업지 근거, 현행 결과 등의 항목으로 체계적으로 구성되었다. 이를 통해 수출기업은 비특정원산지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유사 사례를 통해 자사 제품의 원산지 리스크를 사전 점검하거나 사전성사 신청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한국원산지정보원은 *ORIGIN CASE, V&V를 시작으로 상반기 4회 발간을 완료하였고, 향후 대외 수출 주요 품목들에 대한 다양한 사전성사 사례를 분석하여 지속적으로 우리 품종에 대해 제공할 예정이다.

*Origin Case, 소개

Origin Case 표지



Origin V&V Contents

CONTENTS	
001	01. 원산지 정보
002	02. 원산지 증명
003	03. 원산지 판단
004	04. 원산지 증명서
005	05. 원산지 증명서 발급
006	06. 원산지 증명서
007	07. 원산지 증명서
008	08. 원산지 증명서
009	09. 원산지 증명서
010	10. 원산지 증명서

Origin V&V Contents

CONTENTS	
001	01. 원산지 정보
002	02. 원산지 증명
003	03. 원산지 판단
004	04. 원산지 증명서
005	05. 원산지 증명서 발급
006	06. 원산지 증명서
007	07. 원산지 증명서
008	08. 원산지 증명서
009	09. 원산지 증명서
010	10. 원산지 증명서

Origin V&V Contents

CONTENTS	
001	01. 원산지 정보
002	02. 원산지 증명
003	03. 원산지 판단
004	04. 원산지 증명서
005	05. 원산지 증명서 발급
006	06. 원산지 증명서
007	07. 원산지 증명서
008	08. 원산지 증명서
009	09. 원산지 증명서
010	10. 원산지 증명서

Origin V&V Contents

CONTENTS	
001	01. 원산지 정보
002	02. 원산지 증명
003	03. 원산지 판단
004	04. 원산지 증명서
005	05. 원산지 증명서 발급
006	06. 원산지 증명서
007	07. 원산지 증명서
008	08. 원산지 증명서
009	09. 원산지 증명서
010	10. 원산지 증명서

문의 : (02)25 1230 30 FAX : (02)25 9444





KIOI

Center for International Trade & Investment

‘Origin Case, 사례 제시 - 2023년 현재 -

TRADE REPORT

CASE
6

파이프 런치

요약

이슈	● 원산지 규정 - 수입의 변경 여부 확인		
사건번호	NY N332258 (2023.04.21.) 및 NY N332259 (2023.06.06.)		
사실관계	<p>고용사실</p> <p>미국 및 중국에서 생산된 손잡이, 조립 조, 고형 조, 조형 나트, 기타 부품은 중국에서 추가 가공 및 조립하여 미국에 수출</p>	<p>● NY N332258</p> <p>한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잡이, 조립 조, 고형 조, 조형 나트 수출 • 고형 조, 조형 나트 생산 • 손잡이, 조립 조, 고형 조, 추가 가공 • 상기 4개 부품의 기타 부품 결합 포함 • 미국으로 수출 	<p>● NY N332259</p> <p>한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잡이, 조립 조, 고형 조, 조형 나트 생산 후 중국 수출 • 한국 • 손잡이, 조립 조, 고형 조, 추가 가공 • 상기 4개 부품의 기타 부품 결합 포함 • 미국으로 수출
	<p>고용사실</p> <p>손잡이, 조립 조, 고형 조, 조형 나트는 기능의 구현에 있어 필수적인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부품임</p>	<p>● NY N332258 수입의 변경 여부</p> <p>한국산 부품의 원산지는 이미 정해져 있으나 완성품 생산은 미국이고, 중국에서 추가적 가공과 나트 핵심 부품의 결합을 통해 완성품이 기능할 수 있으므로, 이 국영품 중립적으로 고려했을 때, 중국에서 수입적 변경이 발생함 (주-이)</p>	<p>● NY N332259 수입의 변경 여부</p> <p>미국 기능을 수행하는 부품들이 모두 한국에서 생산되었고, 해당 부품들은 중국으로 수입될 당시, 국어로 변하여 전동식으로 제작되어 나트 원도도 사용될 수 있으므로, 중국에서 수입적 변경이 발생하지 않음 (주-이)</p>
근거법령	•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egulations Part 134(10 C.F.R. § 134)		

TRADING AGREEMENT 29



KIOI

Center for Quality Improvement



*Origin Case, 사례 제시 - 강의의 명칭 -

① 관점사례*

주제명 [파이프 렌치] 심층적 변형 여부 분석

사례번호 NY N332258 (2012.10.27) | 및 NY N332516 (2013.05.09)

사실관계

회사	Wohler Maschinen Advanced Tool Co., Ltd.
제품명	- 파이프 렌치 (Pipe Wrench)
배경	- 고객사 / 고객사 A / 고객사 B (중요 고객) 인, 스페셜 등 - 불량이 있는 두 개의 제품 가지고 있으며, 고객사 B로 이송에 의하여 일부 파이프 렌치 파손이 발생 - 파이프 렌치 파손이 발생하여 고객사 B
원인	- 해당 부품의 품질 또는 제조 시공상의 문제

제조공정 (ID NY N332258)



분석과정

- 원인**
 - 1. 원재료 불량에 의해 불량품 조성이 됨
 - 2. 불량인 원재료를 사용하여 조립도 불량
 - 3. 불량인 도구를 사용하여 사용
- 원인**
 - 4. 불량인 원재료를 사용하여 조립도 불량
 - 5. 불량인 원재료를 사용하여 조립도 불량
 - 6. 불량인, 불량도, 불량 도구가 사용(검사, 포장, 수납, 고객)
 - 7. 불량인 원, 불량인 도구를 사용하여 사용
 - 8. 불량인 원, 불량인 도구를 사용하여 사용

사실관계 분석을 통해 원인을 파악하고 원인 제거 및 예방 대책을 수립함

OC - 00000000 00000000 00000000



2-2. 관세청과 협업을 통한 산업별 비특혜원산지 규정 사례집 발간

‘ORIGIN CASE’와 더불어 한국원산지정보원은 관세청과 협업을 통해 ‘미국 비특혜 원산지 규정 대응 체크리스트 - 제1편 - 칠감제품’, ‘제2편 - 자동차 부품’, ‘제3편 - 식육류’, ‘제4편 - 칠감 일부기능 피생제품’을 공동 발간하였다.

본 사례집은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50%의 관세가 부과되는 칠감·일부기능과 과당제품 그리고 자동차 부품, 국제비상경제관련법(REPAIR)에 따른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관련 미국 관세청과 비특혜원산지 규정 기준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특히, CTR가 비특혜원산지 판단 시 고려하는 기준과 절차를 현장 사례 및 현장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 수출기업이 비특혜원산지 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판단하는데 실질적으로 유익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였다.

● 미국 비특혜원산지 규정 대응 체크리스트 - 제1편 칠감제품



● 미국 비특혜원산지 규정 대응 체크리스트 - 제2편 자동차 부품





KIO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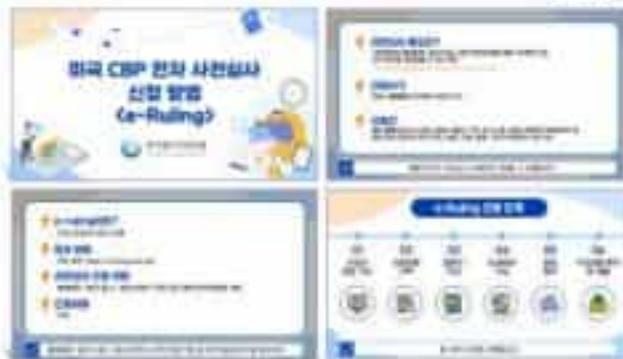
한국투자증권 KIOI (Korea Investment & Finance)

증권상을 재차서였다. CBP 사전심사 신청 가이드북 및 사전 점검서는 한국투자증권내망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CBP e-Ruling 신청 가이드북



CBP e-Ruling 사전 점검서



THINK AGAIN!

THINK AGAINMENT 35



4. 美 관세부와 현황 정보 제공 및 기업 자원 설명회 개최

최근 국제비상경제안전법, 무역법 제301조, 무역확장법 제232조 등을 근거로 한 미국의 관세정책은 변화 속도가 빠르고 예측이 어려운 국내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통산시장보장은 미국 업체와 경쟁할 수 있는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저해하고, 미국 관세 부과 동향 정보를 제공하고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 지원에 나서고 있다.

그 일환으로, 2025년 4월 30일 한국통산시장보장은 관세청 및 한국무역협회의 공동으로 『美 관세정책 변화 관련 대미 수출기업 설명회』를 서울 프래미드 호텔에서 개최했다. 본 설명회는 미국과 행정부 고위 출신 이후 설명회는 미국의 관세 무역 정책과 원산지 국제 변화에 대한 수출기업의 이해를 높이고, 대응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설명회에서는 미국의 최근 관세 부과 동향, 관세청 대응 방안, 미국 수출 시 분관 유통사원, 이후의 비확대원산지 기준 등이 주요 주제로 다뤄졌다. 한국통산시장보장은 향후에도 관세청, 차관 세관, 유관기관 등과 협업을 통해 설명회 개최, 실무자 교육, 사례자료 발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출기업에 필요한 정보를 차시에 제공할 계획이다.

美 관세정책 변화 관련 대미 수출기업 설명회



KIOI (02-3783-8200) 2025.03.20 09:47

美 국제비상경제안전법(EPA: Trans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 Act)



5. 향후 계획

2025년 상반기 한국원산지정보원은 급변하는 미국 통상환경 속에서 우리 수출기업의 실무 대응력을 높이고, 대응 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인 연구 사업을 추진하였다. 특히 'Origin Case'와 '실감서품' 등 주요 산업별 비특혜원산지 현상 대응 사례집, 방안, 'CIP' 사전심사 가이드북 및 동영상, 책적, '기업 설명회 공동 개최' 등을 통해 미국의 비특혜원산지현상 기준에 대한 기업에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향후에도 한국원산지정보원은 산업별·지역별로 특화된 비특혜원산지 대응자료를 지속적으로 발간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통상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ORIGIN CASE'를 지속 발간, 신종상 규에 관련 수출기업 실태조사 자료 제공, 미 관세 부과 동향 및 원산지 관련 미수 자료 제작 등의 연구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으로 정보원이 제공하는 전문 정보들이 우리 중소기업의 원산지 리스크 대응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2분기) 신통상 환경속 수입규제 현황과 기업 대응전략 실태(기업 애로, 대응 중심)



1. 조사 배경

최근 글로벌 통상 환경은 보호무역주의의 확산과 함께 WTO 체제하의 전통적 수입규제 뿐만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관세 및 비관세 조치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미국-중국 등 주요 교역국의 통상정책의 급변함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들은 다양한 수입규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 파악과 대응 전략 수립에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한국형신지정보원은 변화된 통상 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실제로 겪는 애로 사항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기획하였다.



14 | KIOI REPORT 2022 Q2



2. 조사 설계 및 방법

조사는 분기별로 주요 품목 원안을 선출하여 설계되었으며, 1분기에는 “신동상환결 속 수입규제의 기업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선정하였다. 조사 대상은 국내 수출기업 중반으로, 총 1,009개 기업이 응답하였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906개)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중견기업(80개), 대기업(13개), 기타(9개) 순이었다. 설문 플랫폼은 UNCTAD 비관세조치 분류를 참고하여 관세 및 비관세 조치로 구분하여 구분하였다.

UNCTAD 비관세조치 분류

구분	조치	비고
관세 조치	관세 부과 (무역구제조치 관련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법에 따른 일반적인 관세 부과 조치 • 6년 미루 2012년 이후 부과
비관세 조치	무역구제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덤핑관세조치 • 선계관세조치 • 세이프가드조치
	선적인 검사 및 기타 통관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적 전 검사 • 통관상 제한적 통관 요구 • 기타 절차상 요구
	환산지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한 환산지구장 • 특정비특정 환산지구장 제외 • 환산지구장, 표시, 검증 • 불명확한 환산지구장 등
	통시물류상업적(SP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PS에 따른 수입 금지/제한 • 라벨링, 표시 및 포장 요구 • 적정성 평가 • 기타 위험 요구 등
	무역기밀상(TB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BT 관련 수입 허가/허가연스 • 라벨링, 표시 및 포장 요구 • 적정성 평가 • 기타 제품 안전성, 품질 요구 등
	수입제한조치 (SPS, TBT 관련 조치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제한, 금지, 허가 • TPO 등
	가격통제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수입 가격 조치 • 수입업체 부과하는 내국세 등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 및 경영 관련 조치 • 무역 관련 통지 조치 • 통관제한 • 판매 후 서비스 제한 • 보조금 • 정부보조제한 • 지식재산권 등 	



3. 조사결과

① 기업이 체감하는 주요 수입규제 애로사항 : 1위 관세부과조치, 2위 원산지규정, 3위 선적전 검사 등 통관절차

국내 기업들이 수출 과정에서 직면하는 수입규제 관련 애로사항을 분석한 결과, 관세부과(33.2%)가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원산지규정이 10%, 선적 전 검사 및 기타 통관절차가 11.8% 순으로 집계되었다. 1~3순위를 종합한 결과에서도 관세부과가 20.3%로 최상위를 유지했고, 원산지규정 10.0%, 선적 전 검사 및 기타 통관절차 14.7%, 무역기술장벽(TBT) 8.5% 등이 주요 애로사항으로 확인되어, 전반적으로 관세와 원산지 관련 규제가 기업들에게 가장 큰 부담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출처: KIOI 2023 수출수입기업 애로사항조사(2023년 4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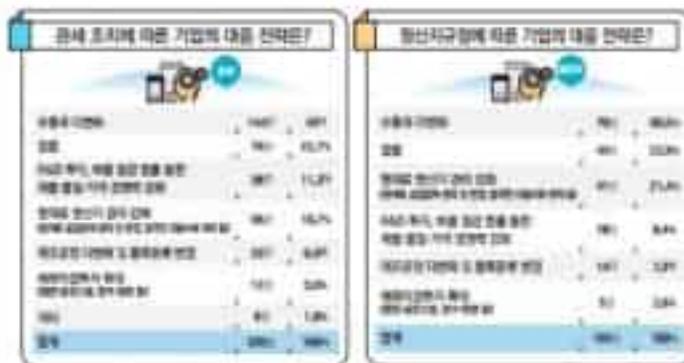
② 수입규제에 대한 기업의 대응 전략 : 1위 수출국 다변화, 2위 없음, 3위 비용절감

기업들은 수입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으나, 여전히 상당수가 뚜렷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관세부과에 대해서 애로를 호소한 기업들이 어떤 대응전략을 수립하는지에 대한 설문에서 '수출국 다변화'가 42%로 가장 선호되는 전략으로 나타났으며, 22.7%의 기업은 '특별한 대응 전략이 없다'고 응답했다. 반면 2기 관세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들도 속차히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진다. 그 외에도 R&D 투자 및 비용 절감(11.3%), 원재료 원산지 관리 강화(10.7%) 등의 방안이 활용되고 있다.

원산지규정에 대한 애로를 호소한 기업들도 대응전략으로 '수출국 다변화'가 36.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대응 전략이 없다'는 응답이 23.0%, '원재료 원산지 관리 강화'가 21.4%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우량프 2기적 국가별 경제강화 추세에 대한 대응으로 공급망 재편을 통한 '수출시장 다변화'가 가장 일반적인 대응 방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대응전략이 없다'는 응답도 2위를 차지하고 있어 중소기업들이 통상환경 급변 4에서 수출전략 수립 차이에 큰 애로를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출처: KIOI 2023년 중소기업 애로조사 결과 (2023년 10월 10일 기준)

③ 기업 애로사항의 구체적 실태와 중소기업의 부담

기업들은 세수형 애로를 통해서도 다양한 애로사항들을 경험하였는데, 공통적으로 수입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으로 기업들은 단순히 비용 증가에 그치지 않고 '공급상의 복잡성'과 '행정적 부담'을 크게 호소하였다. 특히 미국의 관세 조치가 급변함에 따라 관련 정보를 조사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상당한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기업들의 운영 효율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여론리, 원산지규정에 경우 모호성과 불확실성, 그리고 과도한 증명서류 요구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큰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일부 기업들은 수출국별 원산지 증명서 발급 기준이 차이에 따라 인해 행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상은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 규제 대응 능력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출처: '글로벌 시장 주요 이슈' 관련 기업 애로사항 설문조사 결과

4. 시사점

2025년 1분기 수출기업 애로 실태조사 결과 표본의 2기 행정부의 관세부과 정책으로 인해 [관세부과] 조치 관련 기업의 애로사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원산지규정] 관련 애로사항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원산지규정에 따른 애로사항] 중에서는 미국 비특혜원산지 기준의 모호성¹⁾, 특혜원산지의 비특혜원산지 기준의 차이, 미국의 e-Ruling 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 등이 주요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 현 시장에서 기업들은 관세 및 원산지규정을 가장 큰 애로로 느끼고 있으며, 대부분의 응답자가 중소기업이란 점을 바탕으로 불 책 이해에 대한 정보 제공과 중소기업 중심 지원 정책의 강화가 시급함을 확인할 수 있다.

1) 이는 현재 미국의 무역법 제201호, 무역협정법 제201호, 1930A 등에 따른 관세부과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원산지를 판단하는 경우, 비특혜원산지 기준인 실업자 생활 기준을 충족하는 것에 기반한 정보로 한정된다.



KIOI

Korea Institute of International Economic Research

신통상 환경 속 수입 규제와 기업의 대응 전략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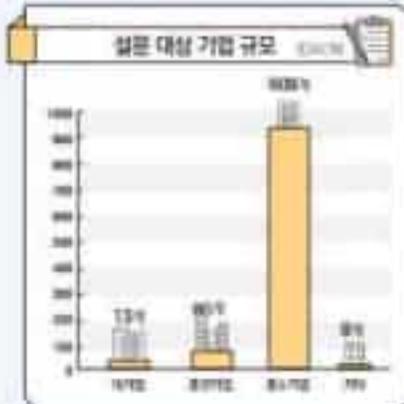


연구 목적

목적 : 기업들이 새로운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수입 조제를 규제 느끼는지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를 통해 1,000여 기업 응답 기간 : 2023년 3월 16일 ~ 2023년 3월 24일까지
 방법 : 수입 조제의 영향은 UNCTAD 세관세 조사 분류에 근거 조제를 반영하여 구성

연구 방법

- 관세 부과 (관세구제외지 포함 제외)
- 무역구제조치 (관세외, 관세외지, 관세외지외)
- 신적 관 검사 및 기타 통관절차
- 원산지규정
- 통관서류제출에 소요되는 비용
- 무역거래상대방 선정
- 수입제한조치 (관세, 기타 관세 조제 제외)
- 기타통제조치
- 기타



기업이 규제로 느끼는 수입 조치는?

(1~5회 응답)

관세 부과(관세구제외지 포함 제외)	4487	35.2%
원산지규정	4022	31.8%
신적 관 검사 및 기타 통관절차	3241	25.7%
무역거래상대방 선정	1677	13.2%
기타통제조치	1162	9.2%
무역구제조치	796	6.3%
통관서류제출에 소요되는 비용	611	4.8%
수입제한조치(관세, 기타 관세 조제 제외)	577	4.5%
기타	492	3.9%
합계	12,747	100%

기업이 규제로 느끼는 수입 조치는?

(1~6회 응답)

관세 부과(관세구제외지 포함 제외)	3381	33.2%
원산지규정	2867	28.1%
신적 관 검사 및 기타 통관절차	1787	17.5%
무역거래상대방 선정	987	9.7%
기타통제조치	677	6.6%
무역구제조치	511	5.0%
수입제한조치(관세, 기타 관세 조제 제외)	467	4.6%
통관서류제출에 소요되는 비용	377	3.7%
기타	287	2.8%
합계	10,287	100%

기업의 대응 전략은?

수출국 다변화	3812	36.8%
없음	2967	28.9%
관세 조제, 비관세 조제 대응 방안 적용(관세, 기타 관세 조제 제외)	1567	15.2%
원래 원산지 관세 관세외지 포함 관세 관세외지 포함(관세외지 포함 제외)	1237	12.0%
제조공정 다변화 및 통관절차 변경	677	6.5%
통관서류상대방 선정 관세 관세외지 포함, 관세외지 포함	467	4.5%
기타	187	1.8%
합계	10,387	100%

Company Analysis

THIRD ASSESSMENT 59



관세

최근 세계 주요국 관세 관련 조치



최근 미국 주요 관세 조치 (하임라인)

2025. 02. 04.	● 중대	UEFA에 따라 엔딩 관세 10% 부과
2025. 03. 04.	● 중대	엔딩 관세 10% - 20%로 인상
2025. 03. 04.	⊕ 중대, 특대	USFCA에 따라 20% 엔딩 관세 부과 * 특대 관세 10%
2025. 03. 07.	⊕ 중대, 특대	USFCA에 따른 적용 품목 및 적용되는 관세액인 관세 관세 할인 관세
2025. 03. 12.	● 중대, 중대, 중대	우익관세 20%로 부과
2025. 04. 02.	● 중대	USFCA에 따라 10% 엔딩 관세 부과 * 특대 관세 10%로 인상
2025. 04. 03.	● 중대	USFCA에 따라 20% 관세 부과
2025. 04. 06.	● 중대	중대 관세 30% - 40%로 인상
2025. 04. 10.	● 중대	우익관세 20%로 부과
2025. 04. 10.	● 중대	중대 관세 10%로 인상
2025. 05. 02.	● 중대	우익관세 20%로 부과
2025. 05. 03.	● 중대, 특대	USFCA에 따라 20% 관세 부과
2025. 05. 12.	● 중대	우익관세 20%로 부과
2025. 05. 04.	● 중대, 특대, 중대	우익관세 10%로 인상

중국의 관세

2025. 04. 04.	● 중대	우익관세 30% 관세 부과
2025. 04. 06.	● 중대	30% - 40%로 인상
2025. 04. 11.	● 중대	40% - 120%로 인상
2025. 05. 12.	● 중대	우익관세 20%로 부과



캐나다의 관세

2025. 03. 04.	● 중대	우익관세 20%로 부과
2025. 03. 10.	● 중대	우익관세 20%로 부과
2025. 03. 13.	● 중대	우익관세 20%로 부과
2025. 03. 23.	● 중대	우익관세 20%로 부과
2025. 04. 06.	● 중대	우익관세 20%로 부과

멕시코의 관세

우익관세 20%로 부과



019 - 6955-8880 221 214, 9222-8447



KIOI

Korea Institute of International Trade Promotion

CONTENTS

관세 조치에 따른 기업의 대응 전략은?

무庸무대 반발	144건	43%
인원	79건	22.7%
RISQ 평가, 세관 상담 등을 통한 제품-공급-가격 경쟁력 강화	38건	11.2%
관세로 인한 가격 인상을 관세 회피(관세 우회) 및 관세 면제(관세 면제)	36건	10.7%
제조공정 다변화 및 물자원료 변경	23건	6.9%
해외기업에서 생산 (생산-수출, 생산-수출)	12건	3.6%
기타	67건	1.9%
합계	336건	100%

관세 조치 관련 기업의 주요 애로사항은?

관세율 결정이 복잡하고 관세 부담이
비율을 낮추기 어려워서 세관과 상담이
필수인데 세관 상담이 관세 상담과
비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해서
관세 부담이 늘었다

기업 A

기업 B 관세 부담이 늘었다. 관세 부담이 늘었다. 관세 부담이 늘었다.

기업 C 관세 부담이 늘었다. 관세 부담이 늘었다. 관세 부담이 늘었다.

기업 D 관세 부담이 늘었다. 관세 부담이 늘었다. 관세 부담이 늘었다.

기업 E 관세 부담이 늘었다. 관세 부담이 늘었다. 관세 부담이 늘었다.

원산지



수입 규제로 적용할 수 있는
원산지규정이란?

- 1. 원산지조사 증명서제 원산지규정
- 2. 관세, 무역제한선인 규정 제외
- 3. 관세로 무역제한선인 규정의 적용, 무역협
- 4. 자유무역협정 체결 관련 세율 조부
- 5. 원산지규정, 표시, 교육 관련 문제 등

원산지규정 관련 기업의 주요 애로사항은?

관세 부담이 늘었다. 관세 부담이 늘었다. 관세 부담이 늘었다.

기업 A

기업 B 관세 부담이 늘었다. 관세 부담이 늘었다. 관세 부담이 늘었다.

기업 C 관세 부담이 늘었다. 관세 부담이 늘었다. 관세 부담이 늘었다.

기업 D 관세 부담이 늘었다. 관세 부담이 늘었다. 관세 부담이 늘었다.

기업 E 관세 부담이 늘었다. 관세 부담이 늘었다. 관세 부담이 늘었다.

원산지규정에 따른 기업의 대응 전략은?

수출대 다변화	72건	36.0%
인원	64건	32.0%
관세로 인한 가격 인상을 관세 회피(관세 우회) 및 관세 면제(관세 면제)	41건	20.5%
RISQ 평가, 세관 상담 등을 통한 제품-공급-가격 경쟁력 강화	19건	9.5%
제조공정 다변화 및 물자원료 변경	14건	7.0%
해외기업에서 생산 (생산-수출, 생산-수출)	67건	33.5%
합계	200건	100%

SOURCE: KIOI SURVEY '21



(2분기) 트럼프 2기 관세부와 종합현황 및 타임라인

트럼프 2기 관세부와 종합현황 및 타임라인

2025년 미국의 최신 관세부과 현황표 ^{*)}									
구분	대상	2025년 1분기				2025년 2분기	2025년 3분기		
		관세율	관세율	관세율	관세율		관세율	관세율	관세율
2025년 1분기	한국	21%				21%			
	중국	21%			21%				
	미국산 원산지	USMCA 품목	21%	21%/21%		21%/21%			
		USMCA 외 품목	21%			21%			
2025년 2분기	한국								
	중국				21%				
	미국산 원산지	USMCA 품목		21%/21%		21%			
		USMCA 외 품목				21%			
2025년 3분기	한국								
	중국				21%	21%			
	미국산 원산지	USMCA 품목		21%/21%		21%			
		USMCA 외 품목				21%			
2025년 4분기	한국								
	중국				21%	21%			
	미국산 원산지	USMCA 품목		21%/21%		21%			
		USMCA 외 품목				21%			

*) 본 현황표(2025년 1분기 기준)는 미국 GDP News 2025-05-06 05:24:45 및 USIS AMERICA를 기본해, 본업자 공개용이 추가되고 있는 관세율률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작성하였으며, 2025년 2분기 추가 관세는 기존에 적용하던 관세율로 대체하는 구조임

2) 칠간서원(KOITA), 일부국(일부국), 칠간 차관(칠간차관), 일부국(일부국) 기타 기타 대상물 구별
 - 칠간 및 일부국(일부국) 대상(일부국) 2025년 1분기 관세율, 칠간 및 일부국(일부국) 대상(일부국) 2025년 1분기 관세율 기타 기타 대상(일부국) 구별

3) 대중국 수출관세 21%, 칠간(칠간), 칠간(칠간) 21%, 칠간(칠간) 21%, 칠간(칠간) 21%, 칠간(칠간) 21%, 칠간(칠간) 21% 등 칠간(칠간) 21%로 하고 나머지 11%는 칠간(칠간) 21%



KIOI

한국국제무역협회



1. 트럼프 2기 추가 관세의 종류 (필요일 기준)

관세 품목	관세율 및 범위
IEEPA [태국, 멕시코 자유무역 관세]	행정명령 141038(9) 및 141042(4) 0025년 2월 1일
IEEPA [중국 여객 비행 관세]	행정명령 141050 0025년 2월 1일
무역협정 제232조 [철강 및 철강 파생제품 관세]	고고율 100% (0025년 2월 1일), 고고율 11012% (0025년 6월 2일)
무역협정 제232조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파생제품 관세]	고고율 100% (0025년 2월 1일), 고고율 11012% (0025년 6월 2일)
무역협정 제232조 [자동차, 자동차 부품 관세]	고고율 100% (0025년 3월 21일), 행정명령 142810 (0025년 4월 21일)
IEEPA [산유관세]	행정명령 142570 (0025년 4월 21일) * 0025년 2월 1일부터 0025년 4월 21일

2. 추가관세 대상품목의 종류

-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 대통령 고고율 100%에 따른 품목*
- 철강, 알루미늄 및 파생제품 : 대통령 고고율 10%, 170%, 99%, 100%, 100%에 따른 품목*
- 에너지 자원 : COMSICIP 고고율 400%에 따른 품목
- 포화(Agriculture) : 행정명령 141978에 따른 관세를 조정 품목
- 영국 : 미-영 무역협정(EU, 25.5.83)으로 영국산 자동차 관세 완화,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0%로, 부속 20%, 항공기 부품 관세 0%
- 러시아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200% 추가 관세 부과



3. IEEPA에 따른 상호관세 10% 제외 품목

- 캐나다, 멕시코산 품목(USMCA 포함)
- 60 USC 170261 - IEEPA 의 대통령에 권한에 대한 제외조항 - 에 포함되는 모든 품목
- Executive order 14257 Annex 3에 러시아산 상호관세 적용 제외 품목
 - 무역협정 제232조에 따른 철강 및 철강 파생제품 관세,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파생제품 관세 적용 품목



DL (0025.02.01) 141-0002 0411

* 관세당에서 미국 관세율 대상 :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자동차HS84125010-한국산HS84125010) 관세 관세율유율 적용되고 있음

† 관세당에서 미국 관세율 대상 : 철강, 알루미늄 및 파생제품 (자동차HS72101110-한국산HS72101110) 관세 관세율유율 적용되고 있음



KIOI

Center for International Trade & Investment

CONDUCT ANALYSIS

-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 적용 품목
- 미국 관세율표(HTSUS) 2장에 명시된 세율이 적용되는 무역 상대국의 모든 제품 (i.e., 벨라루스, 우크, 북한, 러시아)
- 기타 명시된 품목구리, 약제물, 인도제, 육지 제품, 특정 해상 관물, 배너지 및 배너지 제품)
-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향후 관세 조치 대상이 될 수 있는 모든 품목 (인도제 및 약제물-약제물 원재료 대한 조사 신청 800054.1-9)
- 50 U.S.C. § 1702b에 명시된 품목(개인 통신, 인도제 기구, 정보 및 정보 자료의 수출입, 여행과 관련된 거래 등)

4. 관세 누락



행정명령 14285, 11012 및 CBP Notice 2025-00066 (50 FR 21487) / COMS #85238574

- 제232조(자동차-자동차 부품)에 따라 관세 부과 대상이 되는 품목은 NAFTA에 따른 관세 부과 대상이 아닌. 다만, 캐나다 또는 멕시코산의 경우 USMCA 특별관세를 적용받아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면제(DNA) 시, 다음 우선순위에만 제232조(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할 수. 중국산 품목인 경우 IEEPA(아약 이민국)에 따른 관세 누락 부과
- 제232조(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부과 대상일 경우, 캐나다-멕시코산은 IEEPA(아약 이민국) 관세 누락 부과 대상이 아닌
- IEEPA(아약 이민국)에 따라 관세부과 대상이 되는 캐나다-멕시코산 제품은 IEEPA(상호관계), 중국산 적용 IEEPA(아약 이민국)에 따른 관세 부과 대상이 아닌
- 제232조(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따라 관세 부과 대상이 되는 품목의 경우, 중국산은 IEEPA(아약 이민국)에 따른 관세 누락 부과됨. 그러나 캐나다-멕시코산의 경우 IEEPA 누락 적용 대상 아님
- 제232조(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는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동시에 부과될 수 있음 (i.e., 자동차와 부품 모두 함유하는 차량인 경우 각각 서로 함유량에 대해 각 50% 관세 부과)
- USMCA 특별 조건을 충족하는 제품은 제232조(자동차), 캐나다-멕시코산 및 중국산 (IEEPA(아약 이민국), IEEPA(상호관계)에 따른 관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제232조(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
- 무역법 제301조, 상계관세, 반덤핑관세는 위해 나열된 종류의 관세와 별개의 것임

THANK YOU FOR YOUR TIME!



KIOI

Center for International Trade & Investment



트럼프 2기 미국 관세부과 현황 일지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 27일, 2월 1일부터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 예고,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방안 검토 언급
2월 1일	트럼프 대통령, 월남 피안지와 캄보디아 등 지역 수입증 위주로 캐나다-멕시코에 25%, 중국에 추가 10% 관세부과 결정사항 발표
2월 2일	미국,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관세 30일간 공백
2월 4일	미국, 중국에 추가 10% 관세(과세미안 포함) 발표
2월 10일	트럼프 대통령, 칠레-칠레산 수입품에 25% 관세 부과 예고
2월 12일	트럼프 대통령, 4월 2일부터 인도관세 부과 예고
2월 28일	트럼프 대통령, 유럽연합(EU)에 대한 25% 관세 발표 예고
3월 4일	미국, 캐나다의 멕시코에 25% 관세 발표, 대 중국 관세 10% 추가에 총 20% 관세(과세미안 포함) 적용
3월 9일	트럼프 대통령, 멕시코의 캐나다산 자동차에 관세 1개월 연기 발표
3월 7일	트럼프 대통령, 멕시코의 캐나다 수입품 중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에 적용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4월 2일까지 관세 면제(인-캐-카)를 위한 4월 1일 이후 10%
3월 9일	중국, 미국산 농-축산물 대상 2기 보복관세 부과
3월 12일	미국, 전 세계 철강 수입품에 25% 관세(과세미안 포함) 발표
3월 14일	캐나다, 2018년 캐나다산 수입품에 대한 미국산 철강-알루미늄 등에 보복관세 부과, 세계무역기구(WTO)에 분쟁 협의 요청
3월 24일	트럼프 대통령, 4월 2일부터 캐나다산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 발표
3월 28일	트럼프 대통령, 영국산 자동차에 4월 2일부터 25% 관세(과세미안 포함) 부과 발표
4월 1일	미국, 제2차 관세(과세미안 포함)에 대해 10% 관세 부과, 270일 내 조사보고서 제출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오는 수입품에 10%의 기본관세를 4월 5일부터 부과하고, 대미 관세율과 비관세 장벽을 감안해 특정한 국가별 관세를 4월 5일부터 추가로 부과하는 '상호관세' 계획 발표(대당적 50 명명, 주요국 관세율은 한국 25%, 중국 34%, 유럽연합(EU) 30%, 캐나다 6%, 대만 10%, 일본 14% 등)
4월 2일	제2차 관세(과세미안 포함)에 대해 영국산 자동차에 25% 관세 부과

▲ 2017년 4월 21일 기준



KIOI

Global Institute of Foreign Information

CALENDAR



4월 4일	중국, 4월 10일부터 미국산 수입품에 24%의 맞벌 추가 관세에 부과 예고
4월 5일	호, 전세계 최대 10% '기본관세' 발표
4월 8일	미국, 중국의 보복 관세 대응으로 중국에 대해 농약 104% 관세 부과 예고
4월 9일	중국,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맞벌 관세 84%로 인상, 푸젠의 대용량, 중국 최대 국가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90일만 후에 시작 발표, 중국에 대한 관세는 농약 148%로 인상
4월 12일	미국, 스티븐슨-워렌-베르데인-안드레 케르징에 중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
4월 22일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가공 핵심광물 및 광석에 대해, 부속 수입의 연도 관련 영향 조사 착수
5월 2일	중국-중용 수백 만에 기존 폐기
5월 4일	트럼프 대통령, 해외에서 영항에 100% 관세 부과 방침 발표
5월 9일	미국-중국 무역협약 발표, 미국은 중국산 자동차 관세 연간 10만대에 한해 기존 25%에서 10%로 인하하고 중국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폐지, 중국에 대한 10% 상호관세는 유지, 중국은 농산물 등 시장 개방기로
5월 10-11일	미국-중국, 스위스 제네바에서 고위급 무역 회담
5월 12일	미국-중국, 상대방에 대한 관세 각각 11%포인트 인하 발표(미국 관세 140%~30%, 대미 관세 125%~10%, 5월 12일까지 90일만 유효)
5월 14일	미국, 중국산 800달러에 114만 원 미만 소매 스포츠 관세 120%에서 54%로 인하
5월 23일	트럼프 대통령, 5월 1일부터 인차 50% 관세 부과 경고, 대중에 최소 25% 관세 경고하며 의미론 미국 내 생산 촉구
5월 25일	트럼프 대통령, 인차 부과 경고한 50% 관세 7월 1일까지 유예 발표
5월 28일	미 연방 차관부상법안, 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EPAC) 시행 금지
5월 29일	미 연방 연수법안, 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 일시 폐지 명령
5월 30일	트럼프 대통령, 펜실베이니아주 US소일 공장 건설까지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 25%에서 50%로 인상 발표
6월 7일	트럼프 대통령, 철강-알루미늄 제품 관세 25%에서 50%로 인상하는 모교문 시행
6월 4일	철강-알루미늄 제품 50% 관세 발표
7월 2일	미국, 제노바에 무역협약 발표, 제노바산 수입품 20% 인상(예(기본40%), 원자료를 40% 고율에서 부과
7월 7일	트럼프 대통령, 상호관세 유예 종료 시장 연가 및 한국, 일본에 관세 시한 공개, 5월 1일부터 모든 한국산 제품에 관세 상호관세 부과 통지,

THINK & CHECK/REPORT 79



KIOI

Center Research Institute of Trade & Investment

(3분기) 2025년 미국의 최신 관세부과 현황



2025년 미국의 최신 관세부과 현황표									
구분	품목	관세부과 대상				관세율	관세부과 시기		
		관세부과 대상	관세부과 대상	관세부과 대상	관세부과 대상		관세부과 시기	관세부과 시기	관세부과 시기
제조업	자동차	미국산	미국산	미국산	미국산	0%	2025.01.01	2025.01.01	2025.01.01
	자동차 부품	미국산	미국산	미국산	미국산	0%	2025.01.01	2025.01.01	2025.01.01
	자동차 부품	미국산	미국산	미국산	미국산	0%	2025.01.01	2025.01.01	2025.01.01
	자동차 부품	미국산	미국산	미국산	미국산	0%	2025.01.01	2025.01.01	2025.01.01
서비스업	서비스업	미국산	미국산	미국산	미국산	0%	2025.01.01	2025.01.01	2025.01.01
	서비스업	미국산	미국산	미국산	미국산	0%	2025.01.01	2025.01.01	2025.01.01
	서비스업	미국산	미국산	미국산	미국산	0%	2025.01.01	2025.01.01	2025.01.01
	서비스업	미국산	미국산	미국산	미국산	0%	2025.01.01	2025.01.01	2025.01.01
농수산물	농수산물	미국산	미국산	미국산	미국산	0%	2025.01.01	2025.01.01	2025.01.01
	농수산물	미국산	미국산	미국산	미국산	0%	2025.01.01	2025.01.01	2025.01.01
	농수산물	미국산	미국산	미국산	미국산	0%	2025.01.01	2025.01.01	2025.01.01
	농수산물	미국산	미국산	미국산	미국산	0%	2025.01.01	2025.01.01	2025.01.01

KIOI TRADE & INVESTMENT CENTER

1. 이 자료는 미국의 관세부과 현황을 정리한 것으로, 관세부과 대상 품목, 관세율, 관세부과 시기 등에 대한 내용은 관세청의 관세부과 현황을 참조하십시오.
 2. 이 자료는 미국의 관세부과 현황을 정리한 것으로, 관세부과 대상 품목, 관세율, 관세부과 시기 등에 대한 내용은 관세청의 관세부과 현황을 참조하십시오.
 3. 이 자료는 미국의 관세부과 현황을 정리한 것으로, 관세부과 대상 품목, 관세율, 관세부과 시기 등에 대한 내용은 관세청의 관세부과 현황을 참조하십시오.
 4. 이 자료는 미국의 관세부과 현황을 정리한 것으로, 관세부과 대상 품목, 관세율, 관세부과 시기 등에 대한 내용은 관세청의 관세부과 현황을 참조하십시오.



사례를 통한 관세부과 구조 이해하기

〔철강 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

- 해당 관세는 1차적확장성, 제232조 목적별 관세에 (EFTA 국가별 관세가 더해지면서, 관세 구조가 최종차에 가장 복잡한 형태로 적용됨
- (구조상) 기존 관세 체계에 (제232조 목적별 관세와 (EFTA 상호관세) 더해지는 구조
- (예시) 냉압고는 철강 파생상품 대상에 이어 알루미늄 파생상품 대상으로 확대된 품목(1,13) 이 제232조 철강 알루미늄 구리 파생상품 - 철강 가차에 대한 관세 50%
- ① 제232조 철강 알루미늄 구리 파생상품 - 철강 가차에 대한 관세 50%
- ② EFTA 국가별 관세 - (한국산) 비철광 가차에 대한 상호관세 15%
- △ 총 관세 = ①+② + 기존 관세(MFN or FTA 등)

◆ 원산지국기별 파생상품 관세의 차등 부과

이들 구조를 지닌 철강 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는 원산지국기별로 차등 적용 중이며, 한국산은 USMCA를 충족한 품목 외에 가장 낮은 관세를 적용받고 있음

국기	관세 부과율
1 USMCA 기준 조국	철강 가차에 대한 관세 50%만 부과
2 한국산	철강 가차에 대한 관세 50% + 비철광 가차에 대한 상호관세 15%
3 USMCA 기준 미충족	철강 가차에 대한 관세 50% + [제1 비철광 가차에 대한 상호관세 30%] [제2 비철광 가차에 대한 상호관세 25%]
4 중국산	철강 관세 50% + 비철광 관세 10% + 가차 관세 20%

◆ 철강 파생상품에 이어 알루미늄 파생상품 대상으로 확대된 품목의 관세부과 예시

〔한국산 냉압고의 원산지 수출 품목(1,13)(예시)〕

국기	관세	부과 내용(예시)									
1	관세부과 품명	철강 파생상품에 이어 알루미늄 파생상품에 적용 확대된, 1차 - 대상 품목에 부과 항목 확인(원산지, 비철광 관세)									
		<table border="1"> <thead> <tr> <th>제232조 철강 파생상품</th> <th>제232조 알루미늄 파생상품</th> <th>상호관세</th> </tr> </thead> <tbody> <tr> <td>대상</td> <td>대상</td> <td>대상</td> </tr> <tr> <td>철강 가차에 50%</td> <td>알루미늄 가차에 50%</td> <td>비철광 가차에 15%</td> </tr> </tbody> </table>	제232조 철강 파생상품	제232조 알루미늄 파생상품	상호관세	대상	대상	대상	철강 가차에 50%	알루미늄 가차에 50%	비철광 가차에 15%
		제232조 철강 파생상품	제232조 알루미늄 파생상품	상호관세							
대상	대상	대상									
철강 가차에 50%	알루미늄 가차에 50%	비철광 가차에 15%									
2	품목번호	일차적 냉압고의 품목번호는 HTSUS 8418.10.00									
3	원산지 증명서류 제출시 확인	자사 품목에 철강 알루미늄은 40%, 알루미늄 알루미늄은 20%, 가차 40%									



KIOI

한국국제무역협회



구분	항목	계산 (단위: 백만)	
4	원산지 확인	호 GDP 원산지조사사업 제5호를 통한 원산지관리 확인	
0	관세율 확인과 순관세 계산	상품 총가치 : 1,000	
		구분	관세부과가격 기준
		일반 일반	4000 × 50% = 2000
		일부특별 일반	2000 × 50% = 1000
		비관세	4000 × 10% = 400
		기준 관세	MFN or FTA 등
순 관세	3000 × 기준 관세액		

예: 관세율(일반)은 10%이다. 관세율 적용에 따라

(다국적 상품에 대해 별도 적용)¹⁾

(단위: 백만)

번호	국가	관세율	
		일반	특별
1	미국(자유무역협정)	10	15
2	일본	30	30
3	영국	50	15
4	영국(자유무역협정)	35	20
5	중국	10	15
6	호주(자유무역협정)	30	30
7	브라질	37	15
8	인도	50	10
9	인도네시아	25	25
10	싱가포르	30	15
11	가나	11	15
12	필리핀	13	15
13	코스타리카	10	15
14	멕시코(자유무역협정)	21	15
15	중고신우공화국	11	15
16	태국	10	15
17	티베트	13	15

- 본 관세율은 무역과 고기 및 기타 농산물에 대해 적용되며 기타 4200호에 기재된 관세율에 따라 부과 관세액이 적용된다.
- 자유무역협정 국가에 대한 관세율은 10% 이하이다.
- 자유무역협정 국가에 대한 관세율은 10% 이하이며, 관세율에 따라 4200호에 기재된 관세율에 따라 10% 이하로 부과된다.

*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관세율



KIOI

Center Institute of Higher Education

Chemical Analysis

순서	이름	시험결과		
		중량%	비율	
18	ED	30	10% 이상 불합 10% 미만 불합	10% 이상 불합 10% 미만 불합
19	포클랜드 제도	41		10
20	파키	32		15
21	파나	10		15
22	가르파나	38		15
23	페리올랜드	10		15
24	인도*	36		25
25	인도네시아	18		19
26	인양도	30		35
27	인스라빌	17		15
28	일본	25		15
29	요르단	20		15
30	카사블랑카	25		25
31	카보스	40		40
32	케르노	50		15
33	케르나	30		30
34	카탈루냐	37		15
35	카타르	47		10
36	캄보디아	17		15
37	캄보디아	24		19
38	캄보디아	40		15
39	캄보디아	25		25
40	캄보디아	15		15
41	캄보디아	40		40
42	캄보디아	21		15
43	캄보디아	30		15
44	캄보디아	10		15
45	캄보디아	18		15
46	캄보디아	14		10
47	캄보디아	33		15

* 인도는 남부에서 20% 미만 불합, 북부에서 40% 이상 불합, 기타 지역은 20% 이상 30% 미만 불합, 기타 지역은 20% 이상 불합

TABLE 3. CHEMICAL REPORT 45



KIOI

Center Institute of Higher Education



순위	국가	GDP/GDP	
		2017	2018
48	노르웨이	19	19
49	튀르키예	29	19
50	리투아니아	10	19
51	폴란드	20	19
52	세인트비	38	26
53	남아프리카공화국	30	30
54	대한민국	25	19
55	스리랑카	30	20
56	스웨스	31	39
57	사우디	41	41
58	대한	30	30
59	미국	38	19
60	튀르키예	10	19
61	튀르키예	25	25
62	튀르키예	10	19
63	튀르키예	10	19
64	미국	10	10
65	튀르키예	22	19
66	튀르키예	10	19
67	튀르키예	40	30
68	튀르키예	17	19
69	튀르키예	19	19



99 | 1833.0161 (3) 99.0202 (4) 99.0202



1. '트럼프 관세' 개요

① 배경

- 지속적인 무역적자로 인한 국가 경제 안보의 위협 해소

② 목적

- 무역적자 시정, 중국산 우회 수출 차단, 해외 투자 유치 촉진, 미국 제조 산업 보호를 통한 미국 중심 보호주의 통상질서 확립

③ 추가 관세 종류

- 「부채환입법」 제232조에 따른 품목별 관세, 「국제비상경제장법」(IEEPA)에 따른 국가별 관세

관세종류	대상	발효 일자	관세율	비고	
IEEPA	미국 중국	베트남	발효일자 제14193호	02.01	아미 수입 차단, 환율차지 20%, 배타기 10%
			발효일자 제14231호	03.08	입출 10%
			발효일자 제14325호	07.31	USMCA 미준수 20%
		멕시코	발효일자 제14194호	02.01	아미 수입 차단, 환율차지 20%
			발효일자 제14232호	03.08	입출 10%
			발효일자 제14195호	02.01	아미 수입 차단, 환율차지 10%
	국가별 관세 (상호관세)	중국	발효일자 제14228호	03.01	아미환타입 관세 20%
			발효일자 제14257호	04.02	환율차지 10%, 환율차지 34%, 국가별 관세 발표 (중국 25%, EU 20% 등)
			발효일자 제14258호(중국) 발효일자 제14260호(중국) 발효일자 제14262호(중국) 발효일자 제14326호 발효일자 제14334호(중국)	04.09	환율차지 20%~40%
			발효일자 제14334호(중국)	04.09	환율차지 10%~120%



KIOI

Center for Korea's International Trade



발행 연월	내용	발행 일자	페이지	비고
		05.12	한국 125~130 (+24% 추가)	
		07.31	상호간세율 축소 수정 (한국 25%~15%)	
		08.11	한국-국제 무역 기준 10%~24% 추가	
무역협정 제정요약	자유화 자유화 무역	포고령 제10909호	03.25	환세율 20%, EUSAKA 중국, 미국산 25%
	상업성업 포고령 제10947호	포고령 제10906호	03.10	환세율 20%
		06.02	환세율 20%~50%	
	일부기능 포고령 제10947호	포고령 제10909호	03.10	환세율 20%
		06.02	환세율 20%~50%	
번역물 제10902호	포고령 제10902호	07.30	환세율 50%	

④ 최신 조세 주요내용(행정명령 14325호, CBP 지침 CSMS #65825726_038.07)

▶ 국가별 상호관세 확인

- 총 63개 경제주체 대상 국가별 관세부과부속서 1, 한국, 일본, EU 등 포함
- 부속서 1에 명시되지 않은 국가는 행정명령 14257호에 따른 10% 관세부과
- MFN 최우대 관세율 명시(15%, MFN 포함)

▶ 관세(Transshipment) 차단 조항 신설

- 원칙을 통한 관세 회피 행위 적발 시, 기본관세에 40% 추가 관세부과
- 그외 법에 따른 징벌적 벌금, 세금 및 기타 부과금 모두 적용(징벌 또는 연세 불가)
- 6개월마다 무역 수출 역외 국가 및 제품 리스트 발표(정부 조달, 안보 및 상업 심사 등 반영)

Copyright © 2020 KIOI. All rights reserved.



- 현재 관세(Therashipment)와 인허가 적용기준에 대한 공식 발표 전(미국측 자원의 제약 가능)

① 관세(Therashipment, CBP 홈페이지)

- 원산지 정보는 NAFTA 역외에서 RVC, 규칙제, 모조품 위한 최소한의 조치 또는 캐나다 멕시코 미국으로 운송하는데 필요한 작업 외의 공업 수행 시 원산지 자제를 상당한다. 역시 적용을 세의 불충
- 미국산 소재를 사용하여 만든 수출 도구의 멕시코산 전 거둔과 원(장) 도마니가 공화국으로 운송하여 있고 및 포장 공정을 수행
- CBP는 해당 불충분 원산지를 '결국 및 포장' 공정이 수행한 도마니가 공화국으로 연산

② 변동 가능성

- 국가별 개별 협상에 따른 관세 조정 가능

2. 품목별 추가 관세 근거 규정 및 지침

① 자동차 자동차 부품 : 대통령 포고령 제10029에 따른 품목

- (자동차) CBP 지침 CSMS #64834801_04.02)
- (자동차 부품) CBP 지침 CSMS #64016652_05.01)
- (USMCA) CBP 지침 CSMS #65640652_07.10)

② 철강 알루미늄 및 파생상품 : 대통령 포고령 제109478에 따른 품목

- (철강 및 철강 파생상품) CBP 지침 CSMS #65236374_06.03)
- (철강 파생상품) 품목 확대 적용 CBP 지침 CSMS #65036570_06.10)
-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파생상품) CBP 지침 CSMS #65236645_06.03)
- (알루미늄 파생상품) 품목 확대 적용 CBP 지침 CSMS #65036615_06.10)

③ 반제품 구리 및 파생상품 : 대통령 포고령 제100628에 따른 품목

- (구리 및 구리 파생상품) CBP 지침 CSMS #65794272_07.31)

④ 그 외 제품

- (캐나다) 에너지 자원, CBP 지침 CSMS #64297449_03.03)
- (캐나다) 상품(Potash), CBP 지침 CSMS #64336037_03.06)
- (캐나다) 상품(Potash), CBP 지침 CSMS #64336789_03.06)



3. IEEPA에 따른 상호관세 추가 여부

- ① 무역확장법 제222조에 따른 자동차 자동차 부품 관세부과 시
 - 동 법제222조에 따른 할당 가치에 대한 할당 관세와 상호관세는 모두 제외
 - 동 법제222조에 따른 일우미늄 가치에 대한 할당 관세의 상호관세는 모두 제외
 - 동 법제222조에 따른 구리 가치에 대한 할당 관세와 상호관세는 모두 제외
- ② 무역확장법 제222조에 따른 할당 일우미늄 관세부과 시
 - 할당과 일우미늄은 할당 가치에 따른 관세부과 가능하며, 상호관세는 제외
 - 단, 파생상품의 경우 비할당 가치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 ③ 무역확장법 제222조에 따른 반제품 구리 및 파생상품 관세부과 시
 - 할당 가치에 따른 관세관세 부과 및 비할당 가치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 ④ 그 외 제품
 - (ITP) 보세 임시 수입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신고된 상품은 제외
 - (USMCA) USMCA 기준 충족 시 제외, 미충족 시 부과
 - (캐나다) USMCA 기준 미충족 에너지 자원(10%), 철물(10%) 부과
 - (멕시코) USMCA 기준 미충족 철물(10%) 부과
- ⑤ 외환국 상호관세 현황
 - 행정명령 제14334호(06.11.)에 따라 11월 10일까지 한해 유자율 54% 중, 24% 유제
 - 행정명령 제14298호(05.12.)에 따른 국가별 10%+24% 유제 중(+)과가 아닌 관세 20% 유지

4. '트럼프 관세' 시사점

- ① IEEPA에 따른 추가 관세 변동 가능성
 - 미국 환율상의 대통령 권한 논란으로 위한 소송 진행 중
 - 8월 29일, 후 연방순회법정판판 IEEPA에 근거한 관세장벽은 위법하다고 판결함
 - 10월 12일까지 기존 조치의 효력 유지, 트럼프 행정부 대법원 상고 시사



KIOI

Center for Korea's International Investment

Country Analysis

① 행정명령 제14326호(07.31.3)의 개요

- NAFTA에 따른 관세부과 관련 소송 재소 시제 대비책으로 보이심
- (신설 조항) Sec 6. Severability(분리가능성)

2원문 If any provision of this order, or the application of any provision of this order to any individual or circumstance, is held to be invalid, the remainder of this order and the application of its provisions to any other individuals or circumstances shall not be affected.

- (국문) 본 명령의 특정 조항이나 그 적용이 어떤 개인이나 상황에 대해 무효로 판단 되어도, 본 명령의 다른 조항이나 그 적용은 여전히 효력을 유지합니다.
- 해당 조항(Severability)은 이전 상호관세 관련 발표(7월 7일)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으로 특종의 행정부가 관세정책에 대한 헌정상 제고를 위해 삽입한 것으로 해석 가능

② 원문 2차 행정부 및 관세부과 영향 입지

1차	
2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충된 대통령 취임 • 2월 7일부터 멕시코-캐나다 대상 25% 관세 예고 • 중국에 대한 관세부과 방안 검토 진행
2차	
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만 이민자-영사님 등 막막 위임을 이유로 캐나다-멕시코 대상 25% 관세부과 행정명령 시행 • 중국 대상 10% 추가 관세부과 명령



THOR LORENZON - 31



KIOI

Global Institute of Trade & Investment



2일	• 멕시코-캐나다 대상 관세 30일간 유예 발표
4일	• 중국에 대한 EPA 무역허인 관세 10% 추가 철폐
10일	• 2월 12일부터 칠안-일부지역 수입품에 25% 관세 폐기
17일	• 상호관세 부과 폐기
20일	• EU에 대한 25% 관세 발표 폐기
10월	
4일	•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철폐(캐나다 18-년지 관세 품목 10%) • 중국 대상 20% 관세 적용(기존 10% + 무역허인 (EPA) 10%)
5일	• 멕시코-캐나다산 자동차 관세 1개월 연기 발표
8일	• USMCA 기준 중국 공화국에 대해 멕시코-캐나다산 수입품 관세 연기 • USMCA 기준 미국과 캐나다산 자동차 10%, 철물 10% 관세부과 • USMCA 기준 미국과 멕시코산 철물 10% 관세
9일	• 중국, 미국산 농·축산물 대상 2차 무역관세 부과
12일	• 전 세계 칠안-일부지역 수입품에 25% 관세(KO2323) 발표
14일	• 캐나다, 미국산 칠안-일부지역 품목 20%의 캐나다산의 경우 무역관세 부과 • WTO 분쟁 협의 요청
24일	• 4월 2일부터 캐나다-유럽산 석유 수입품에 25% 관세부과 발표
26일	• 4월 2일부터 캐나다산 자동차 관세 25% 부과 폐기
11월	
1일	• 제23호 근거로 인도적 제도 철폐 및 허가용 품목 수입허인도 영향 조사 개시
2일	• 전 세계 수입품에 10% 기본관세(4월 1일부터) 발표 • 국가별 추가관세(4월 1일부터) '상호관세' 개시 발표, '백일치 날' 결정 • 국가별 관세 발표: 한국 20%, 중국 34%, EU 20%, 멕시코 40%, 대만 32%, 일본 24% • 미국산 부품 포함하여 20% 미산인 경우 캐나다산 부품(Canitem)만 20% 적용, 미국산 부품 포함하여 20% 미산인 경우 전체 가치에 대해 관세부과
3일	• 제23호 근거로 자동차 자동차에 25% 관세부과
4일	• 제23호 근거로 일부지역 자동차에 25% 관세부과 • 캐나다산 일부지역 자동차에 20% 교통관세 적용 • 중국, 4월 10일부터 미국산 수입품에 34% 무역관세 부과 폐기
5일	• 전 세계 대상 10% 관세 발표
9일	• 중국 무역관세 대상 지역에서 대중국 관세 54%로 수정, 무역 관세 포함 누적 관세 104%
9일	• 중국, 대만 관세 54%로 인상 • 트럼프 대통령, 중국 제1차 국가 대상 상호관세 10일 유예 발표(17일 17일까지) • 대중국 관세 125%로 수정, 무역 관세 포함 누적 관세 145%
12일	• 스페인과 일부지역 인도적 제도 철폐 및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
15일	• 제23호 근거로 중요 상품 및 허가용 품목 수입허인도 영향 조사 착수
29일	• 제23호 근거로 자동차 및 부품 수입 조정 제도 도입 • 관세상세금 등 공백부과 조정

September 2023 WK 02(월요일) 72



KIOI

Korea Institute of International Economic Research

KIOI ANALYSIS

2015	
2일	• 중국 통관 수역 면세 기준 개시
4일	• 제2차 석유 협정에 100% 관세부과 합의 발표
9일	• 미 연방 무역협약 발표 • 미국: 영국산 자동차 12만 대까지 관세 25%→10%로 인하, 칠간-일부자동차 25% 관세 폐지 • 영국: 미국산 농산물 등 시장 개방 수용
10-11일	• 미중 자유무역 협정 체결 개시
12일	• 미 중, 인도관세 대해 합의 합의(200억달러 무역) • 대중국 관세 140% → 30% • 대미국 관세 120% → 10%
14일	• 중국발 800달러 미만 상품 관세 120% → 50%로 인하
27일	• 프랑스 대통령, 8월 1일부터 EU 대상 50% 관세부과 예고 • 대중국 관세 25% 관세부과 예고, 아이폰 미국 내 생산 촉구
28일	• EU 대상 50% 관세 7월 1일까지 무효 발표
29일	• 미 연방 국제통상법원, 프랑스 정부에 상호관세(EEFTA) 시행 금지 판결
29일	• 미 연방 통상법원, 상호관세 일시 복원 명령
30일	• 프랑스 대통령, 칠간-일부자동차 관세 25% → 50% 인상 발표
2016	
3일	• 프랑스 대통령, 칠간-일부자동차 관세 인상 포기문 서명
4일	• 칠간-일부자동차 관세 50% 관세 철폐 • 중국 대일 무역 관련 TPPA 적용
2017	
2일	• 미-베트남 무역협약 발표 • 베트남산 수입품 관세 40% → 20% 인하관세 • 관세 철폐에 40% 고율 관세부과
7일	• 프랑스 대통령 공식서한 발표, 인도관세 무효 종료 시장 연거 • 한국 일본에 관세 서한 공개, 8월 1일부터 한국산 자동차 전면 20% 관세 철폐
30일	• 싱가포르 구리채를 구리 파생상품에 8월 1일부터 50% 관세부과 발표 • 브라질 자동차 8월 8일부터 40% 관세부과 발표 • 8월 29일부터 모든 국가 대상 수역 면세 제도 중단
31일	• 캐나다 자동차 8월 1일부터 35% 관세부과 발표 • 상호관세를 수정한 발표(8월 7일 발표) • 중국은 TPPA에 따른 미국-중국 간 관세 20% + 국가별 관세 10% 적용 유지
2018	
6일	• 프랑스 대통령 인도관세 관세부과 가능성 시사 • 인도산 자동차 관세 25% 인상 발표(미국산)에 자유 개시
7일	• 한국산 자동차 상호관세 10% 발표
11일	• 중국 상호관세 무효 발표(11월 10일까지)

THE KIOI CHAIN REPORT 73



(3분기) 미국 관세정책 대전환 시대, 수출기업의 원산지 인식과 관리 역량 진단



미국 관세정책 대전환 시대, 수출기업의 원산지 인식과 관리 역량 진단

1. 들어가며

2017년 미국의 관세정책은 전혀 다른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과 함께 중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국에 대한 관세 부과가 잇달리적으로 확대되면서, 미국에 관세수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관세 부과가 원산지를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원산지 기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체계적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경영 이슈로 부상했다.

본고는 최근 미국의 관세수입 변화 동향과 시장 진입효과를 분석하고, FTA 활용 수출기업 80%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현황과 향후 대응 과제를 진단해보고자 한다.

www.kioi.or.kr



2. 2025년 미국 관세정책의 근본적 변화

■ 전방위적 관세 부과 체계 도입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수입 물품에 대해 크게 국가별 관세의 품목별 관세로 구분하여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미연과 관세를 구사하고 있다. 국가별 차등적 관세는 2025년 2월부터 파라 및 미연 문제를 사유로 국제간경제협력협약(EFTA)에 근거해 멕시코, 캐나다,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며 시작되었다. 이후 4월 5일부터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상호관세(10%)를 부과하기 시작했고, 8월 7일부터는 국가별로 차등적인 상호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현재 한국 15%, 일본 15%, 베트남 20%, 중국 30% 수준으로 부과되고 있다.

물류업 관세는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근거하여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철강 및 알루미늄과 그 파생상품, 석유류 구제제품과 그 파생상품에 대해 최대 50%의 고율 관세를 추가 부과하고 있는 상황이다.

■ 관세수입의 폭발적 증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발표에 따르면, 관세 부과 유행병 2025년 관세수입 현황은 놀라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기존 관세주최인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제301조 적용 관세수입은 2024년 3분기 7,000억 달러에서 2025년 7월 13일 기준 289억 7,000만 달러에 달한다. 7월까지의 통계임을 감안하면 전년 대비 증가는 확실시된다.





무역확장법 제22조제2항 근거인 농산물외 관세수입은 2024년 12억 2,000만 달러에서 2025년 9월 기준 44억 8,000만 달러로 이미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일부미용약 관세수입 증가폭은 더욱 거미본데, 2024년 4억 3,800만 달러에서 2025년 20억 2,000만 달러로 4배 이상 급증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2025년 새롭게 도입된 자동차 관련 관세와 IEEPA 기반의 광범위한 관세 조치들이다. 이들 조치만으로도 약 1,000억 달러가 넘는 관세수입이 발생하고 있어, 미국 관세정책의 공격적 변화 양상을 여실히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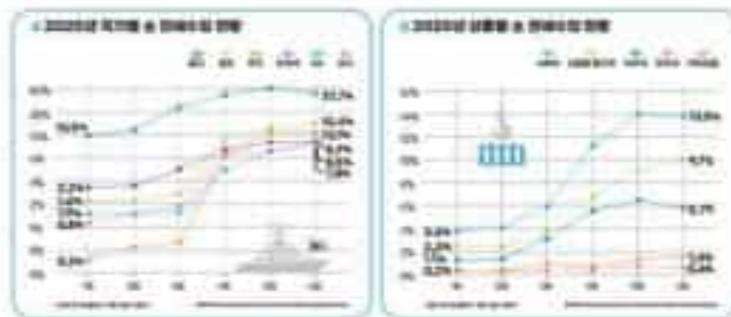


■ 관세 부담의 구조적 변화

피셔스 국제경제연구소(FIEC)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국가별 관세수입 현황에서 중국산 총수입 대비 관세수입 비중이 6월 기준 37.7%를 차지하여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다. 이는 중국이 IEEPA에 근거한 20% 관세율과 상호관세 10%를 합친 3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더욱 극적인 변화를 보인다. 한국산 총수입 대비 관세수입 비중이 6월 기준 12.1%로, 1월 0.2%에서 폭증했다. 한-미 FTA 체결로 대부분 품목에 무관세가 적용되어 왔던 한국이 트럼프 2기 관세 시행 이후 급격한 관세 부담 증가를 겪고 있는 것이다.

상당명료는 소비재의 경우 2025년 1월 수입액 약 860억 달러 중 관세수입이 32억 달러(3.6%)였으나, 7월 기준 총 수입액 약 777억 달러 중 관세수입이 약 110억 달러(15%)로 관세 부담 비중이 급격히 증가했다.



3. 미국 관세정책의 시장 파급효과

■ 미국 내 소매가격 상승압력

해버드 프리미엄 랭크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관세 부과는 실제 미국 내 소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2025년 상반기 주요 4개 소매업체의 수입제품 가격지수는 지속적으로 상승했으며, 4월 상호관세 부과 이후 국내제품 가격지수를 역전하여 상승추세를 보였다. 이는 관세 부담이 결국 미국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관세의 전개효과가 예상대로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 수입업체들이 관세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면서, 미국 내 물가 상승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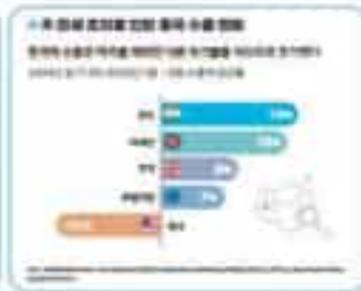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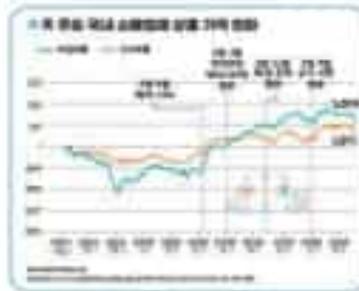
■ 글로벌 공급망 재편 가속화

한편 중국 해관총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관세 조치는 중국의 수출 재편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4년 동기 대비 2025년 1-4월 중국의 수출 증감률을 보면, 대미 수출은 1.1% 감소한 반면, 인도(14%), 미시안(13%), 영국(8%), 유럽연합(7%) 및 다른 지역으로의 수출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는 중국이 대미 수출 감소에 대응해 적극적인 수출 다변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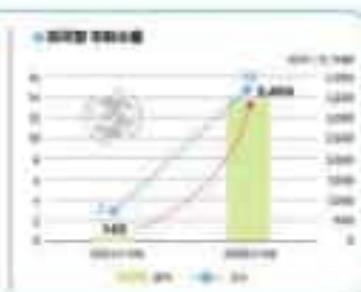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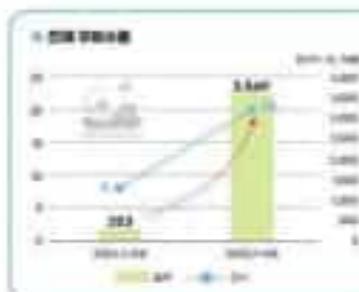
여러한 상황에서 주목할 점은 중국 기업들이 대미 수출 시 고관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제3국을 경유한 우회수출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원산지 규정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 한국 관세청, 미국향 우회수출 적발 급증

한국 관세청은 중국산 제품들이 미국과 고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지난 4월 '미국 관세청에 특별대응본부 산하에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을 설치하여 우회수출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그 결과 관세청이 2020년 8월까지 적발한 우회수출은 총 20건, 3,530억 원으로 전년 동기 6건, 253억 원에 비해 급증하였다. 특히 미국향 우회수출은 전년 동기 3건, 143억 원에 그쳤으나 올해는 15건, 3,494억 원으로 크게 늘어 전체우회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4. 한국 기업의 원산지 관리 실태 진단

■ 설문조사 개요

이러한 급변하는 통상환경에서 우리 기업의 원산지제도 인식 수준과 준비 실태를 진단하기 위해 한국원산지정보원은 지난 8월 제 3주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FTA 활용 경험에 있는 수출기업들을 대상으로 미국 관세청의 급변 환경에서 기업들이 체감하는 원산지제도 인식과 원산지조사 경험 및 제과사항을 중심으로 조사했다. 그 결과 총 605개 수출기업이 응답하였고, 응답 기업의 98%가 중소기업으로 주요 수출 품목은 HS Code 2단위 기준으로 제4류(기계류, 11%), 제3류(화학제품, 10%), 제5류(전기기기, 6%) 순으로 나타났다.

■ 응답기업 68% 특혜-비특혜 원산지 기준 차이 몰라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 기업의 60%가 미국의 비특혜 원산지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나, 여전히 22%의 기업이 이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고 답해 인식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특히 특혜 및 비특혜 원산지 기준 차이에 대해 '정신외 이해한다'고 답한 기업은 전체의 3%에 불과했다. 52%의 기업이 '몰어본' 적은 있으나 '정확히 모른다'고 응답했으며, 10%는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미국의 관세 부과가 비특혜 원산지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대다수 기업이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은 제가치 못한 관세 부과나 원산지 조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우리 기업들의 원산지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 응답 기업의 68%가 특혜-비특혜 원산지 기준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교육과 지원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비특혜 원산지 관련 의무 교육이나 컨설팅 경험에 대해서는 80%의 기업이 해당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점이다. 이는 기업들이 관련 정보에 접근할 기회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정부나 관련 기관의 더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KIOI

Korea Institute of External Trade Research



5. 원산지조사의 현황과 기업의 대응 실태

설문 응답 기업 중 19개사(3.1%)만이 CBP Form 28 또는 29를 통한 원산지조사 요청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이지만, 최근 들어 조사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 2023년까지는 연평균 15건 내외의 조사요청을 받았으나 24년 24건, 25년(추정) 42건으로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미국의 관세수입 증가 동향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은 FTA 원산지 검증과 더불어 비특혜 원산지조사도 더욱 강화할 것임을 예견할 수 있다.

또한 원산지조사 요청의 주요 사유로 원산지증명서의 신뢰 확보와 실제 제조공정적 수행여부에 대한 비용 높은 것으로 보여 기업들은 서류적 정확성과 실질적 제조활동 입증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KIOI 2024 원산지조사 보고서



KIOI

Center for Korea's International Openness



원산지 조사 대응에서 기업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증빙서류 및 소명자료 구비-관리'에 해당했다. 이어서 '정보 부족 및 낮은 접근성'(24%), '신용도의 부족'(23%)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소 체계적인 원산지 관련 문서의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6. 미국의 관세조치가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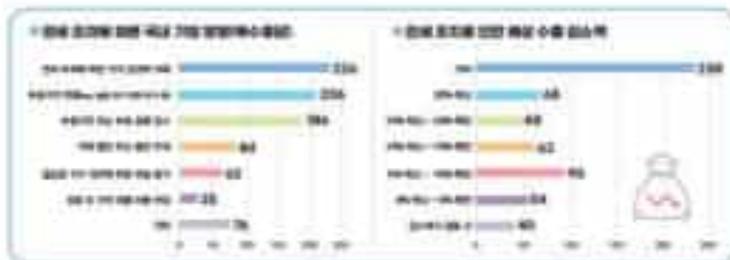
미국의 관세 조치가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필수성업으로 조사한 결과, 관세 조치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는 다방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가장 큰 영향은 '관세 부과에 따른 가격 경쟁력 약화'(29%)였다. 이어서 '수출가격 변동, 특히 낮은 단가 인화 요구'(24%), '수출 지연 또는 수출 불발 감소'(22%) 순으로 나타났다.

수출 감소 전망도 심각하다. 30%의 기업이 구체적인 수치 제시를 어려워했지만, 일반적인 기업 중에서는 '5% 이상 10% 미만' 감소를 예상하는 기업이 16%로 가장 많았다. '20% 이상' 대폭 감소를 우려하는 기업도 11%에 달했다. 결국 해당 기업의 54%가 상당한 수출 감소를 예상하고 있어, 관세 조치의 부정적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KIOI

Center for International Logistics



7. 맺음말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는 단순한 무역정책의 변화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 전체에 차이를 가져오고 있다. 특히 원산지 규정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의 준비 수준은 아직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실문조사 결과 기업들의 비특혜 원산지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관련 교육 경험도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비특혜 원산지 기준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다양한 형태의 비특혜원산지 관장가이드라인 및 원산지 조사 대응 프로그램들을 마련하여 기업들이 원산지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원산지 조사 대응을 위한 법률 지원 서비스 강화, 특히 영문 소명자료 작성이나 CBP와의 소통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전문 지원도 필요하다.

기업 차원에서는 보다 전략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전자 수출 전략 측면에서 원산지 기준을 사전에 고려한 제품 설계와 개발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중국산 부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은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로의 원료 공급처 다변화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제3국 생산까지 활용이나 합작투자를 통한 공급망 재편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고려해볼 만하다.

실무 운영 측면에서는 더욱 체계적인 원산지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다. 원산지 결정 프로세스를 표준화하여 매뉴얼로 문서화하고, 모든 전도 및 부품의 원산지를 실시간으로 추적 관리할 수 있는 디지털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또한 협회업체와의 원산지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인 자체 원산지 검증 절차를 통해 관련 서류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 2016 KIOI CO. All rights reserved.



KIOI

Center for International Trade & Investment

COUNTRY ANALYSIS

것도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원산지 전문 인력 양성과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조직 내 원산지관리 역량을 내재화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효율적 관세정책의 계속 불가능성으로 인해 기업들이 대응전략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위기는 곧 기회라는 것처럼, 이번 변화를 계기로 원산지 관리 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공급망을 전체적으로 재편하는 기업들은 오히려 새로운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글로벌 무역협상이 심화되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비즈니스 전략 수립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핵심수출 품목 전체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변화의 흐름을 따라잡기 어렵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것은 결국 철저한 대비한 기업에 달려 있다.

* 본 리포트의 2021년 수출 실적은 7월 14일에 발표된 KITA, KITAASIA 및 KITA KOREA 실적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습니다.



PHOTO COURTESY OF KIOI



KIOI

Green Growth in Energy Solutions

2022년 1월 10일

특히 실질적 영향 거대한 기후 목표달성이나 세련된 분석적 성격과 번역 여부 등 중요한 판단 요소에 기반하기 때문에, 국내 COP26 지역적 특성에 따라 세부화기 위한 연구가 도출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실현은 저비용으로 수행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높은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다 선명한 사업 검토와 해석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우리 원전 비핵재편안이 전담과 관련된 법적 기준과 실무 사례를 정리한 'ORIGIN CASE, Vol.1'을 2022년 1월 발간하였다. 본 간행물은 우리 COP가 발효된 주요 서안상사 관련 사례들을 정리한 것으로, 우리 기업들이 자사 세련된 분석이 전담 리스크를 사전에 인지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Vol.1은 세 가지로, 내용 이해, 전문 용어 및 도표 등 실무 사례를 수록하였으며, 이 사례는 국제 기준, 제도권, 핵심 정보, 법적 근거, 현장 업무 등을 기반으로 정제된 체계적으로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수행가능한 비핵재편안지 전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유사 사례를 통해 자사 세련된 분석의 리스크를 사전 점검하거나 서안상사 진행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우리 원전 'ORIGIN CASE, Vol.1' 시리즈로 향후 내차 주요 정책들에 대한 사전관련 사례를 분석하여 해당 정책사항에 지원할 예정이다.

ORIGIN CASE, Vol.1



ORIGIN CASE, 사례 분석





KIO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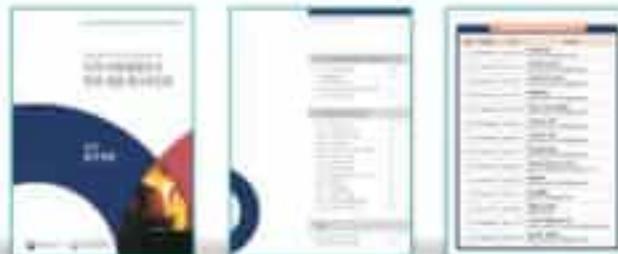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교육원

2-3. 국제성과 협업을 통한 산업형 석사학위논문 작성 사례집 발간

YONHUI CASE,과 더불어 우리 원은 국제성과 협업을 통해 외국 석사학위논문 작성 내용 체크리스트 (학위-실용자료, 및 2차판-자율적 부분을 공동 발간하였다.

본 사례집은 무역직장별 체크리스트에 따라 25%의 관세에 부과되는 상품 및 자용차 부품을 중심으로, 관련 외국 관세청에서 석사학위논문 작성 기준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특히, CBP가 석사학위논문 작성 시 고려하는 기준과 절차를 간명 사례 및 견해를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 수출기업이 석사학위논문 기준에 따라 논문을 작성하는데 실질적으로 유익하다 할 사임을 제시하였다.

2-4. 외국 석사학위논문 작성 내용 체크리스트 (제1판 실용자료)



2-5. 외국 석사학위논문 작성 내용 체크리스트 (제2판 자용차 부품)





KIOI

한국국제외환은행 KIOI Bank of Korea

2023년 1월 11일

3. 미국 CBP 사전심사 제도 활용 가이드북 및 동영상 제작 배포



과외으로 비용을 지불하는 기업이 자사 제품을 원산지 선언 품목의 수출을 계속할 수 있는 제도인 CBP 사전심사제도(CBP Advance Ruling) 제도이다. 그러나 이용에는 조건, 적용 범위, 사용 및 신청 방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실무자들이 제도 활용이 쉽지 않은 실정이었다.

이에 우리 행은 CBP 사전심사 신청 절차, 사용 가능 품목, 유효기간을 상세히 설명한 가이드북을 발간하고 신청 절차를 직관적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사전 동영상도 제작하였다. CBP 사전심사 신청 가이드북 및 사전 동영상은 우리 은행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CBP e-Ruling 신청 가이드북



CBP e-Ruling 신청 동영상





KIOI

Global Institute of Foreign Investment

4. 실 경제부각 인형 정부 제도 및 기업 지원 실행지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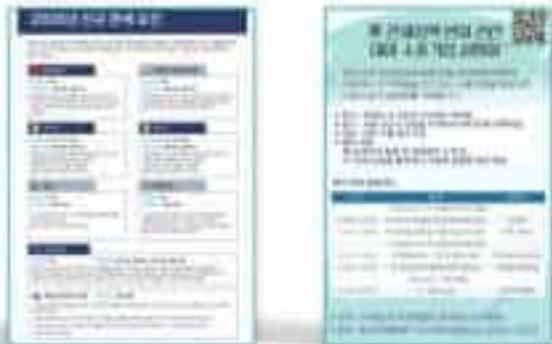


최근 국제비상경제재난대책, 무역협 제30이코, 무역회담협 제20이코 등을 근거로 한 미국의 경제정책은 변화 속도가 빠르고 제국이 여러의 국내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원천 제로 관세 발생할 수 있는 기업에게도 불이익이 되고, 미국 관세 부과 불확실성을 재확인하고 상생우를 제치려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 지원에 나서고 있다.

그 일환으로, 2019년 4월 30일 우리 원은 관세청 및 한국무역협회에 공동으로 '실 경제부각 인형 관안 내의 수출기업 실행지,론 서울 프레이드 14에서 개최하였다. 본 실행지는 최초로 행정부 기기 운영 이후 공언하는 미국의 관세부과 정책과 원산지 규제 변화에 대한 수출기업의 의견을 높이고, 대응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실행지에서는 미국의 최근 관세 부과 동향, 관세청 대응 방안, 미국 수출 시 통관 유의 사항, 미국의 비관세관세인기 기준 등의 주요 주제로 다뤄졌다. 우리 원은 정부에도 관세청, 지역 세관, 유관기관 등과 협업을 통해 실행지 계획, 실무자 교육, 사례자료 발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출기업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계획이다.

● 실 경제부각 인형 관안 내의 수출기업 실행지



한국국제무역투자지원센터(KIOI)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licy Unit



KIOI

Korea Institute of International Economic Research

조입도 행정부가 경제정책 추진의 근거로 신역할 법령들을 보완하면 정책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직접적으로 경제적 권한 행사가 가능한 무역확장법 제202조와 국제 비상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IEEPA) 등은 모두 조지 기진과 관련되어 제한이 없는 공통점이 있어 평가하는 정책 추진의 가능성이다.

● 조입도 국제 관련 법적 근거

연도	법명	주요 내용	대응가능 권한	주요 적용 사례
1930	관세법 (Tariff Act of 1930, 19 U.S.C. § 1301)	수입 물품 분류 및 관세 부과(TLS)	관세 부과	- AD/CVD(당첨/반당첨) - CBP 관련 규정
1960	조수출-중지 관세법 (Green-Haber Tariff Act)	관세 보충을 위한 고율 부과에 실효	제한된 수입 (관세 부과 금지)	- 수출입기 보충을 위한 적용 가능
1962	무역확장법 (Trade Expansion Act of 1962)	국가 간에 상품 수입 제한 가능 (제202조)	제한 수입 (국가간에 무역 시 수입 제한 가능)	[2021년 통관규제] - 의류시 및 의류의 부품, - 철강산품(관세 부과 금지) - 핵무기 등
1974	통상법 (Trade Act of 1974)	불공정무역 피해 및 긴급조치 (제201조, 제202조 등)	제한 수입 (제201조 긴급조치 (제202조) 무역 관세)	- 제한된 수입(제201조) - 원유 제재(제211)
1987	국제비상경제권한법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 Act, IEEPA)	국제비상시 적용(무역·금융 통제)	제한 수입 (IEEPA 긴급 수입입 금지 및 자산 자산)	[2021년 긴급조치] - 통상 7일 이후 25% 적용 - 미얀마의 제재 - TikTok-Huawei 제재

출처: KIOI 연구자료

무역확장법 제202조는 국가간(국)을 향하여로 단기간에 특정 품목에 대한 수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통상법 제201조는 원유 제재 등 불공정 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수입을 제공한다. 또한 제202조는 비상사태 선포를 통해 대통령이 결정하면 경제 조치 권한을 행사하도록 허용한다.

● 조입도 국제 협정 세부 내용

구분	협정명					비자유화 품목(FTA)
	협정명	협정명	협정명	협정명	협정명	
자유	19 U.S.C. § 1607	19 U.S.C. §§ 2051-66	19 U.S.C. §§ 3411-25	19 U.S.C. § 2132	19 U.S.C. § 1328	50 U.S.C. §§ 1704-18
관세	4개년차 무역	4개년차 무역	무역확장법 제202 조의 관세	4개년차 무역	4개년차 무역	4개년차 무역
관세	관세	ITC (내국산/외국산)	ITC (내국산/외국산)	관세	관세	관세
기간	관세	4년 (내국산/외국산)	4년 (내국산/외국산)	150일	관세	관세
관세	관세	30%	30%	10%	10%	관세
주요	2016- - 상품 수입허용 2021- - 수출기 수출	2018-2024 - 제한된 수입	2018- - 특정 품목 수출	4개년차	4개년차	2021- - 수출허용 특정 품목 - 수출기 관세

출처: KIOI 연구자료



2019년 1월 25일

한편, '보잉도 관세'에 대한 미국 내 반대 여론도 존재한다. 특히 NAFTA에 근거한 상품관세 적용과 관련해 일부 주 정부 연합과 민간 기업-산업 단체는 해당 관세의 소비재 수입에 어려움을 초래하여 경제적 손실을 볼지않는 이유로 대량항의 관련 내용을 주장하며 지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해당 소송과 관련한 관세부과 관련한 제재에 외교 대응정책에 있지 않다는 점으로, 소송 결과에 따라 NAFTA에 따른 상호관세에 같은 조지들은 변동이 없다고 있다.

3. 한편 CBP 이행 지침에 따른 관세 부과 순위



미국 관세(Tariff Stacking)는 하나의 수입 품목에 대해 서로 다른 무역 조치를 근거로 둘 이상의 관세가 중첩되어 부과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관세관세 적용되는 경우 무역협정(FTA) 관세 또는 기존관세에 대해 제212조에 따른 관세가 부과되고, 관세관 적용되는 기존 관세 외에도 제212조와 무역협정(FTA)에 따른 관세가 모두 부과된다.

CBP는 다양한 양방향 제212조항에 따라 무역협정 제212조 대상 품목에 대한 특정 관세 조치를 집행하고 있으며, 국제 부과 대상 품목에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우선순위는 자유지, 지방지 부과, 원고, 양무역 등지의 품목을 우선순위로 결정하며 있으며,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품 추가 관세(Tariff Stacking)부과 기준

부과	일정	조건	부과 품목 범위	관세 코드
501	지출지 지출지 부과	501 부과	501-501 제212	[다 관세부과 기준] -기존관세, FTA 관세(세율, 관세율, 관세율, 관세율 등) [부과 대상] - 미국 및 원산지 구분 - 관세부과 관세율 적용
502	외국산/미국산	502 부과	502-502 제212	
503	남부 부과 관세 품목	부과	503-503 제212	
504	양무역	504 부과	504 부과 부과	
505	원고	505 부과	505 부과 부과	
USMCA 관세 품목	중적	506 제212	506-506 부과 부과	[부과 대상] - 미국 및 원산지 구분 - 관세부과 관세율 적용
	자유지	-	-	

출처: 한국국제협력단 (KIOI) | 2019년 1월 25일 | KIOI-2019-01-001

* 501-501: 원산지 14200 제212 관세부과 대상 품목 범위

본 보고서의 내용은 KIOI의 공식 입장이 아니며, KIOI의 정책이나 관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 KIOI의 정책이나 관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 KIOI의 정책이나 관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 KIOI의 정책이나 관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



1) 자동차 관세(A)는 다른 모든 관세보다 우선 적용된다.

● 자동차 관세의 부종 관세부과 기준

관세	조건(Condition) 부과 여부
제232조 자동차 관세의 부종 관세부과 O	- 제232조 칠안-일우미율 관세 제외 - 유럽(미국) or 멕시코 (EFTA) 관세 적용

출처: 관세 조약의 적용에 관한 국제법상의 이해(김재환, 2008, 12, 12)

제232조에 근거한 자동차 관세의 부종 관세가 부과 시, 본 법(제232조)에 근거한 칠안-일우미율 관세(EFTA/멕시코) 또는 멕시코 관세는 추가로 부과되지 않는다.

2) 칠안-일우미율 관세(B), (C)는 유럽 연합(EFTA) 관세보다 우선 적용된다.

● 칠안-일우미율 관세부과 기준

관세	조건(Condition) 부과 여부
제232조 자동차 관세의 부종 관세부과 X + 제232조 칠안-일우미율 관세부과 O	- 유럽(미국) or 멕시코 (EFTA) 관세 제외 - 제232조 칠안 + 제232조 칠안-일우미율 동시 적용

출처: 관세 조약의 적용에 관한 국제법상의 이해(김재환, 2008, 12, 12)

제232조에 근거한 관세 중 칠안-일우미율 관세인 부과 시, 칠안-일우미율 관세는 모두 부과되며, EFTA(미국) 또는 멕시코 관세는 추가로 부과되지 않는다.





KIOI

Global Institute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

2024년 1월 10일

4. 자동차-자동차 부품의 관세상의 현황



자동차-자동차 부품이 한국산으로 한정될 경우, 기존 자유무역협정(FTA) 관세 또는 기본관세에 대해 무역자유화 제222조(Section 222)에 따른 관세(15% 제한, 한도 25%)가 부과된다. 또한 중국산으로 한정될 경우, 기존 관세에 대해 제222조(Section 222)에 따른 25%의 국제비상경제협력협정(RCEP)에 따른 20%가 추가 부과되며, 특히 중국산 전기자동차 경우 통상업 제303조에 따른 관세 100%가 별도로 부과되며 145%의 관세가 적용된다.

●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부과 현황*

구분	종류	무역자유화 제222조		비자유화		관세 한도	비고
		한국산 유한 ¹⁾	중국 산유한	한국산 비유한	중국 산비유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전차	25%(기본)	-	-	-	25%	15%제한
		15%(제한)	-	-	-		
	중차	25%	-	25%	-	기본관세 FTA 제222조 + RCEP + AG/CVD	45% or 145% (전기차)
		USMCA 종류	① 한도 초한 30%이상 한도 초과인 부분 25%	-	-	-	① 한도 비 초과인 25% ② 부과(7%)
USMCA 기종류	25%	-	-	-	25%		

※ 기본관세: 전차: 15%, 중차: 25%, 전기자동차: 100% (전기자동차 포함) 또는 145%, 전기자동차 부품

* 해당 내용은 관세 제정(FTA) 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개별 차량 CDP는 USMCA 기준을 충족한 자동차-자동차 부품과 관련해 새로운 지침을 필요했다. 지침에 따르면 상당부 승인을 받은 완성차의 경우 한국산이 아닌 부품 (Components)의 가치에 대하여는 25% 관세가 부과되고, 자동차 부품은 관세가 면제된다. 즉, CDP가 미흡한 부품이 비준여 과대 산정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전체 완성차 가치에 25%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 USMCA 종족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국제 기준

구분	내용
기준	USMCA 기준 충족 충족여 및 결여액
절차	관세 당국 승인이후(전기차) 미국산 비율 관련 문서 제출
기준치	25%(제222조) + 비 미국산 부품(Components) 가치
시정	AG(CVD) 또는 CDP(CDS) 기준 면제

※ 기본관세: 전차: 15%, 중차: 25%, 전기자동차: 100% (전기자동차 포함)

* 해당 내용은 관세 제정(FTA) 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이 문서 관세 제정(FTA) 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KIOI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교육원

9. 해외유학 실적 실적 (전세유학)



도입된 전세유학 실적은 통계로도 확인되고 있다. 지난 7월 13일 기준, 집계된 국내 전세유학생 1,087명 5,000만 달러*로 나타났으며, 이 중 국제화인문역량개발사업(이하 KIPED)을 근거로 한 전세유학생 677명 7,000만 달러를 차지했다.

● 전세유학 현황 요약

단위: 달러

구분	2023년(전년비)	2022년(전년비)	2021년(전년비)
	21,750명-12,990.00	19,762명-12,439.00	24,762명-5,000
유학생 총 인원	21,750명	19,762명	24,762명
유학생 총 금액	12,990	12,439	5,000

출처: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교육원 (2023년 7월 13일 기준)

위에서 살펴본 실적은 국내 전세유학생은 2023년 전반기까지 전년 대비유학생 3,000명 증가를 나타냈으며 전반기에, 도입된 전세유학생 실적의 증가와 체류비 증가를 강조했다.

● 전세유학 현황

단위: 달러

구분	종류	2023년(전년비)	2022년(전년비)	2021년(전년비)
		21,750명-12,990.00	19,762명-12,439.00	24,762명-5,000
학부	재정설 계층	2명 0.7000	2명 0.8000	3명 0.3000
학부	일반	19명 7.0000	12명 2.0000	23명 0.0000
학부 (인문계)	일반계층	4명 0.0000	3명 0.3000	17명 0.0000
	유대 계층	303명 0.0000	301명 7.0000	303명 7.0000
학부 (자연계 및 공과)	유대 계층	-	-	183명 0.0000
	일반계층	-	-	41명 0.0000
	유대 계층	-	-	15명 4.0000
학부 (11교단(사범 제외))	유대 계층	-	-	221명 0.0000
	일반계층	-	-	134명 2.0000
학부 (자연계-공학계)	유대 계층	-	-	4명
	일반계층	-	-	31명 2.0000

출처: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교육원 (2023년 7월 13일 기준)

10 KIPED 홈페이지: www.kioi.gyu/ko/education/kyou/kyou/kyou, 문의: 2025.07.26.
11 KIPED 전세유학 실적 실적: www.kioi.gyu, 2023.07.26.



KIOI

Global Institute of Higher Education

2025년 미국의 최신 관세부과 현황

2025년 미국의 최신 관세부과 현황표*

구분	품목명	표준관세율					특별관세율		
		일반관세부과		특별관세부과		관세율	관세율	관세율	관세율
		일반관세부과	특별관세부과	관세율	관세율				
농산물	과일	0%				0%			
	곡물	0%				0%			
	축산물	0%				0%			
	농기계	0%				0%			
	농산물 가공품	0%				0%			
제조업	자동차					2.5%			
	항공기					0%			
	항공기 부품					0%			
	항공기 엔진					0%			
	항공기 부품					0%			
서비스업	서비스업					0%			
	서비스업					0%			
	서비스업					0%			
	서비스업					0%			
	서비스업					0%			

* 각 항목 내용은 관세부과 현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관세부과 현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표준관세율: 관세부과 현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관세부과 현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특별관세율: 관세부과 현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관세부과 현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세율: 관세부과 현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관세부과 현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세율: 관세부과 현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관세부과 현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세율: 관세부과 현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관세부과 현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세율: 관세부과 현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관세부과 현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KIOI

Global Investment & Finance Solutions

2019년 7월 16일

5월, 6월 세 차례 전체 실적을 통해 견고하고 있으며, 저평가 부분과 전체를 구별 할
차별성(종종)이 나타나고, 특히, 하반기, 성장주, 중소형, 중대형의 비중으로 비중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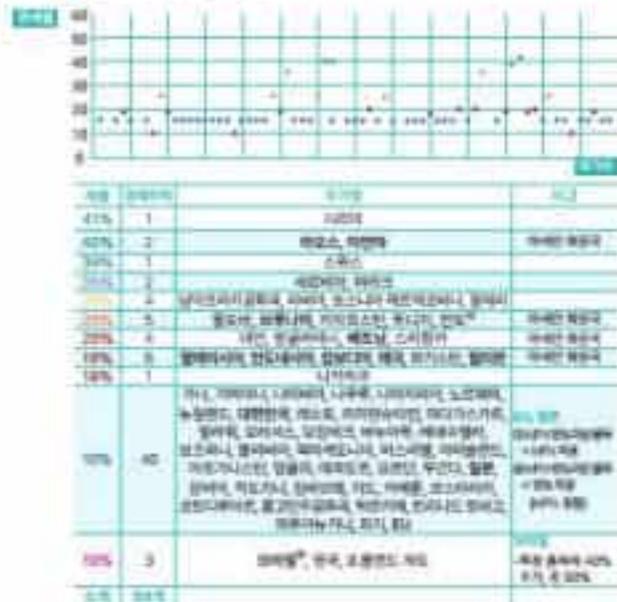
현재 본 고객은 이번 세 달 일회성 펀딩명 제1422호를 중심으로 펀딩의 전체
부담 비중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지않으므로, 부채 부담의 수동적인 부담에 부담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신규 펀딩명 (제1422호), 한미 펀딩시점(2019년 7월)



본 펀딩명(Executive Order) 제1422호 부채비율 (총)에 필요한 신규 펀딩 부채
비율을 보면 전 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한국과 EU 및 일본을 포함한 15% 비중을
차별하는 편이(특히) 4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부채비율(총)에 대한
비율은 펀딩명 제1422호에 따라 집중적으로 40%의 신규 펀딩 비중이 적용된다.

● '신규 펀딩' 신규 펀딩 비중



본 고객은 이번 세 달 일회성 펀딩명 제1422호를 중심으로 펀딩의 전체 부담 비중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지않으므로, 부채 부담의 수동적인 부담에 부담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KIOI

Korea Institute of International Economic Research

부속사례 별서전 자유무역지역의 관세율은 평균 세율 24.4%로 확인된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캄보디아, 필리핀은 각각, 베트남은 30%, 라오스는 25%, 미얀마는 40%를 적용받는다. 이는 우리나라 통틀어 자유무역 지역 평균 무역 수출 세율을 위한 수치로 확인된다.

또한 행정명령 제4328호는 기존에 있던 제2호 관세율의 목적에 관건(assessable) 조항을 추가하여 무역 시에 강제 적용 관세를 부과해 주고 있다. 다만 시 42%의 추가 관세가 부과되며, 이미 별도로 부과 받은 관세가 부과세금부과금까지 적용되어 금액 및 연세가 불기능하다. 아울러 CIP는 유계없이도 무역 수출 하역 국가의 시장 유혹을 공제해 정부 보조, 인센, 세금 감면 등에 관여한다고 보인다.

3. 주요국 협상 성과와 FTA 협상 필요성



한국은 피자유국 협상을 통해 일반 선무 통행의 수급과 해외 시장진출 환경을 확보 하였다. 특히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자동차 부품에 대해 15% 관세율을 적용해 협회 하였다(시장일 미정). 그러나 경제 규모에 자유국의 FTA 체결상과구이한 지위를 감안 하면 반드시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렵다.

주요국 협상 성과 내용과 비교

구분	미국 (●)	중국 (■)	일본 (●)	비고
관세 세율	2014년 15.7% (2015년 15.7%)	14.7% (2015년 14.7%)	15.7% (2015년 15.7%)	2014년 15.7% (2015년 15.7%)
자동차 협상	2500cc이하 4륜 2인승용	2500cc이하 4륜 2인승용	2500cc이하 4륜 2인승용	2500cc이하 4륜 2인승용
	4000cc이하 4륜 2인승용	4000cc이하 4륜 2인승용	4000cc이하 4륜 2인승용	4000cc이하 4륜 2인승용
	2500cc이하 4륜 2인승용	2500cc이하 4륜 2인승용	2500cc이하 4륜 2인승용	2500cc이하 4륜 2인승용
관세 면제	무조건 면제	무조건 면제	무조건 면제	무조건 면제
자동차 가격 제한	무조건 면제	무조건 면제	무조건 면제	무조건 면제
자동차 부품 관세	15%	15%	15%	15%
자동차 부품 관세	15%	15%	15%	15%
	15%	15%	15%	15%
자동차 부품 관세	15%	15%	15%	15%
	15%	15%	15%	15%

주요국 협상 - 미국: 미국, 중국: 중국, 일본: 일본, 비고: 비고

주요국 협상 - 미국: 미국, 중국: 중국, 일본: 일본, 비고: 비고



KIOI

한국국제외환연구원

2023년 1월 10일

‘도점포 경제’ 이전 한국은 한-미 FTA를 포함한 관세지 수출 시 평균세율의 0%였지만, 이번 협상으로 10%인상(25%)의 지점포 경제가 추가되면서 기존 50%에 25%인상된 75% 일련의 세율 불리성 조건에 놓였다. 여기에 한국은 GDP 대비 34% 규모의 해외 투자를 유치하면서 2023년에 일본(25%)에 비해 높은 투자 부담까지 안게 되었다.

지점포 경제에서의 협상 성과를 두고 살펴보는 한-미 FTA 부속본의 제71조 2항이다. 현재 산업 측면에서 보면 FTA에 심화성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남태평양 지역 무역 협정을 맺고 있는 키루드 ‘남태평양’은 HS 제1904 0000으로 분류되며, 미국 기준 기본세율(세율)에 10%이지만 한-미 FTA 협상 시 0%로 특별세율이 적용되며 10%의 협상 일련이 발생한다. 반대로 FTA를 협상하지 않는다면 기본세율 14%에 국가별(세율)에 세율 인도가 더해져 총 20%의 관세가 부과된다. 이는 FTA가 여전히 중요한 통상 수단임을 보여준다.

● ‘도점포 경제’ 사례, 한-미 FTA의 심화성 제시

구분	기준	도점포 경제		관세 부담	FTA 협상 세율	세율 인상 비율(%)
		관세 부담	FTA 세율			
남태평양 키루드(190400)	20%	14%	0%	14%	협상	0%
					비협상	20%

본 자료는 KIOI 연구원 연구, KIOI 연구원 연구 자료에 준하여 작성되었으며, KIOI 연구원 연구 자료에 준하여 작성되었습니다. KIOI 연구원 연구 자료에 준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중국 ‘도점포 경제’가 한국 제조업에 구조적 위협을 가한다는 우려는 ‘도점포 경제’를 흔들고 있는 한편, 수출기업에는 반대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해 수출 다변화가 시급한 방안으로 떠올랐다. 각 국에서 FTA는 관세 부담을 줄이고 시장 접근성을 넓힐 수 있는 수단인 만큼, FTA를 수출과 수입 양 측면에서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4. 협상 실무가능 작성성을 확대 전망



‘도점포 경제’가 한-미 협상을 정조준하고 있다. 무역협정인 제212조에 근거한 작성성을 관세는 50%, 비양행 가시에는 국가별 관세(세율)에 대한 세율 구조를 지니고 있어, 수출기업에 대해 시장 경쟁력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다.

본 연구는 KIOI 연구원 연구 자료에 준하여 작성되었으며, KIOI 연구원 연구 자료에 준하여 작성되었습니다. KIOI 연구원 연구 자료에 준하여 작성되었습니다. KIOI 연구원 연구 자료에 준하여 작성되었습니다.



KIOI

한국국제무역개발연구원

주요 품목의 수출 비중을 보면, 한국의 경우 수출 비중은 170%, 미국의 경우 수출 비중은 10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리는 전기차와 반도체를 비롯해 건설, 전자 등 산업 전반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핵심 소재이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의 원료로 사용되는 구리 액시드(산화물)은 관세 부담이 커지면서 국내 시장에서는 가격 경쟁에 직면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5. 기업의 실무 체크 리스트를 시사함



도입품 관세가 국가별·품목별 차등 구조로 본격 시행되면서 한국 제조업 전반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 한국은 일본 EUA 등 동등한 수준의 국가별 관세율을 적용받았지만, 한-미 FTA 협정이 위약되고 과도한 관세 부담이 가해지면서 피해를 입은 기업은 갈수록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첨단-중부품의 특성상을 최대한 보강해 전기차 관련 부품 구리 액시드 등에 대한 관세부과 조건의 여파로 중소기업 등 산업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클 전망이다. 정부 관세특례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에 기업은 정부-기업-기업 간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해외 수출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과 협조 지원, 시장 조사 등 사전에 준비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특성상 관세 부담이 커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기업 가치 하락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세 부담을 줄여주는 구조를 고려할 때, 한국산임을 입증할 자료 확보는 필수적이다. 또한, 이번 관세 대상에서 제외된 품목이라도 정부-기업 간 협력 가능성에 대비하여 미국에 관세부과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 관세 부담을 위한 수출기업 체크리스트(핵심)

순서	항목	내용	참고 사항
1	관세부과 대상	미국 관세청에 수출 품목 확인 - 차시 등록이 아닌 수입품 확인	- 수출이 적용되는 품목 - 품목 명칭(예: 구리 액시드) - 전기차, 반도체 등 관련 부품 - 미국산 인증 - 품목명(예: 구리 액시드)
2	출발서류	관세 면제 증명서 등 관련 서류 확인 - 차시 등록이 증명서 확인 - 차시 등록이 아닌 수입품 확인	- 미국산 증명서 - 미국산 증명서 - 미국산 증명서 확인 - 미국산 증명서 확인
3	관세 면제 대상	미국산 증명서 등 관련 서류 확인 - 미국산 증명서 확인 - 미국산 증명서 확인	- 미국산 증명서 확인 - 미국산 증명서 확인 - 미국산 증명서 확인
4	관세 부담	수출이 적용되는 품목 확인 - 미국산 증명서 확인 - 미국산 증명서 확인	- 미국산 증명서 확인 - 미국산 증명서 확인 - 미국산 증명서 확인



KIOI

Korea Institute of International Economic Research

11월 2017 (주 1회)

구분	장점	내용	주의사항
1	관세 부담세 후 관세 면	관세 면제 규정 마련 - FTA 관세 + 원산지 증명 관세 + - 관세 면제 - 관세 면제에 관한 제정 등 관세 면제	- 관세 면제 규정 마련 - 관세 면제에 관한 제정 등 - 관세 면제 규정 마련
2	관세 부담 조항 면제 (관세 면제)	관세 면제 규정 마련 시 관세 면제 - 관세 면제 규정 마련 시 관세 면제 - 관세 면제 규정 마련 시 관세 면제 - 관세 면제 규정 마련 시 관세 면제	- 관세 면제 규정 마련 시 관세 면제 - 관세 면제 규정 마련 시 관세 면제 - 관세 면제 규정 마련 시 관세 면제

수출기업의 관세 부담

다음과 같은 행정명령 제5423호에서 미국산 관세 면제를 위한 한도(Threshold)가
연말 시 40%의 추가 관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세 면제에 관한 규정이 마련된
경우 미국 수출을 지원하려는 취지를 감안하여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한국이 중국산 물품의
미국 수출 기업으로 요건까지 충족될 수출기업의 지원은 후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미국도 '냉동 닭' 사태와 같이 FTA는 여전히 중요한 통상 수단이다. 한국은 FTA 강국
으로서 다양한 국가와 협정 체결과 원산지 관리 노력 등을 바탕으로 관세 면제에
수입을 다변화하고, 원산지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미국과 관세' 사태에
한국 수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기업에 대한 대응책 마련 역시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기업들이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한 관세 면제 규정
CIP + Ruleing 사전심사 제도와, 미국 원산지관리 사태 발생 시 정부 대응 체계
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미국의 관세장벽을 넘어
한국 기업 및 사내정보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다.

수출기업들은 미국에 관세장벽을 넘어 자사 물품 판매 개시 시도를 성공적으로
보고, 관세 면제 원산지 제도를 사전에 점검하고, CIP 사전심사제도(Advance
Ruling) 등을 적극 활용하여 원산지 증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



TIP

한국원산지정보원은 기업이 미국 관세장벽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지원 프로그램
중에는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한 원산지 관리 및 원산지 관리 제도를 통해
정부 지원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은 수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KIOI

Center Institute of Higher Education



2025년 미국의 최신 관세부과 현황표*

구분	품목명	적용되는 관세율					기타 정보		
		일반관세		특별관세		관세율	관세코드	관세부과	관세부과
		일반관세	특별관세	특별관세	특별관세				
농수산물	과일	0%				0%			
	채소	0%				0%			
	축산물	0%				0%			
	수산물	0%				0%			
제조품	자동차					2.5%			
	항공기					0%			
	선박					0%			
	기계					0%			
화학제품	석유					0%			
	천연가스					0%			
	전기					0%			
	가스					0%			
금속	철강					0%			
	알루미늄					0%			
	구리					0%			
	스테인리스강					0%			
섬유	면					0%			
	모직					0%			
	실크					0%			
	인공섬유					0%			
에너지	석탄					0%			
	원유					0%			
	천연가스					0%			
	전기					0%			

* 자료출처: 미국 관세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2025년 기준
 * 관세율은 품목에 따라 다르며, 일부 품목은 관세 면제 대상일 수 있음
 * 관세율은 관세청의 최신 관세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관세율은 관세청의 최신 관세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관세율은 관세청의 최신 관세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